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

# 헌법



해외한인장로회총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THE CONSTITUTION  
AND ORDINANCES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KPCA)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AMENDED 2016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저작권자 :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Copyright © 2016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재출판되거나 복구장치에 저장될 수 없고, 전자식, 기계식, 사진, 녹음 등을 통해 옮길 수 없다. (잡지 혹은 신문 등에 간단히 인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해외한인장로회 산하 노회 및 당회는 저작권자 사전서면동의 없이도 본 출판물을 사용할 수 있다.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ally, mechanically,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brief quotations used in magazine or newspaper reviews excepted),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 The Sessions and the Presbyteries under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may use sections of this publication without receiving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 서 문

1902년 미주로 첫 이민이 시작된 이래 1965년 새로운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조국을 떠난 많은 한인들은 힘겨운 이민생활 중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오늘의 미주한인사회를 이루었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의 흐름은 미주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로 계속되었고 이미 일제 강점기에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로 떠난 거주자를 합하면 약 750만 명의 한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1976년 LA, 뉴욕, 시카고에 소재한 소수의 교회들이 모여 미주한인장로회 교단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캐나다, 중미, 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그 지경을 넓혀 2009년에는 해외한인장로회로 명칭을 바꾸고 180여 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750만 한인들을 섬기는 교단이 되었다.

해외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 교단은 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근간으로 세워진 복음적 교회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분부를 지상 명령으로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교회들과 협력하는 폭넓은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세계 교회들과 교류하고, ‘비전선언’에 명시한 지침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류의 평화와 봉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헌법은 개 교회가 속한 각국의 실정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의 재산이나 기관들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헌법에 따라 당회, 노회, 총회의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과 도덕을 중심으로 치리하며, 상급치리회의 정당한 결정에 순응하며, 각기 다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서로 존중하여 각 치리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하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헌법은 1976년 미주한인장로회 총회를 창립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1954년)을 임시로 원용하였고, 1985년 제10회 총회에서 미주한인장로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을 제정하여 발간하였다. 그 후 2004년 제29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와 권징 부분의 전면 개정을 결의하고, 2009년 제33회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각 노회의 수의를 거쳐 공포하였다. 그러나 2009년 개정판을 6년간 사용하면서 재차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2015년 제40회 총회의 결의로 헌법에 총회의 역사, 정신을 담은 헌법 서문을 포함한 개정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본 교단은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미국장로회와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가능한 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권징 부분은 같은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앞선 한국 측의 권징제도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와 사회구조 속에서 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 해외한인교회들에게 맞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한국어가 불편한 세대들을 위해 영문번역을 함께 실었으며, 해석에 대하여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한국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석할 것을 주문한다.

헌법은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한 규범이며 특히 권징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규범인바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본 개정작업을 성실히 감당해 온 헌법개정 위원들(위원장 : 김인식 목사, 서기 : 한광호 장로, 위원 : 서옥수 목사, 김재동 목사, 박충기 목사, 박형주 장로, 김현수 장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개정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 PREAMBLE

With the first immigration to the USA in 1902, and since the enactment of Immigration Act of 1965, many Koreans who left their own country have been living hard lives as immigrants. With churches as their focal point of gathering, they have formed Korean American communities. The flow of Korean immigration continued not only to North America, but also to Central and South America, Europe, Africa, Oceania and South East Asia. By adding the number of Koreans who already left Korea for China, Japan and Central As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bout 7.5 million Koreans are living abroad.

In 1976, handful of churches in LA, New York and Chicago got together and forme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t then expanded its membership to Canada,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New Zealand, Australia, Japan and Europe. As a result, the name has been changed to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in 2009, and became a denomination that serves 7.5 million Koreans living in over 180 countries.

Our denomination, mainly formed by Korean Diasporas all over the world, is an evangelical church whose core foundation is based 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a Shorter Catechism. In order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from Christ to “preach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we maintain a wide theological stance which enables cooperation with churches that confess Christ as the Lord regardless of the sect and denomination within the body of faith. Furthermore, we will fulfill the action points stated on “Vision’s Declaration” and as children of God ; we will responsibly promote the humanity’s peace and service as our miss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 allows the following pursuant to the positive law (ius positum) of each countries where the local church resides :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property and the organizations within local church ; government of the Session,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shall be done primarily based on faith and ethics to maintain order and peace within the church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 compliance

with the higher governing body's rightful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special regulations within the governing body pursuant to its uniqu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its history and culture.

Whe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n (KPCA) was founded in 1976, the Constitution (1954)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ng Hap) was adopted temporarily. Then at the 10th General Assembly meeting in 1985, the KPCA's Constitution (Creed, Catechism, Form of Government and Discipline) was first published and enacted. At the 29th General Assembly meeting in 2004, a resolution was passed to amend the entire contents of Government and Discipline volumes. The Amendment was publically proclaimed at the 33rd General Assembly meeting in 2009 with the approvals from each Presbytery. However, after using the 2009 Amendment for 6 years, it has become necessary again to modify and update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with a resolution passed during the 40th General Assembly meeting in 2015, this Amendment has been published with the Preamble containing the General Assembly's history and spirit.

As our denomination maintain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ng Hap) and the Presbyterian Church USA, we used the same terminology as much as

possible. For Discipline section, we have adopted most of the discipline system from Tong Hap as Korea is more advanced than here. However, we have modified some of the provisions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Korean churches abroad that are in diverse cultures and social structures. In addition, an English version is included for the generations who are not fluent in Korean and in the event of conflict in interpretat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titution shall govern.

The Constitution is the norm to serve the church properly. In particular, the Discipline is the norm on which the authority of the church stands. Therefore, it shall be used appropriately in order to reveal the will and glory of God. Lastly, we would like to recognize and deeply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Constitution Amendment Committee (Chair : Rev. In Sik Kim ; Secretary : Elder Gwang Ho Han ; Members : Rev. Wook Soo Suh, Rev. Jae Dong Kim, Rev. Choong Ki Park, Elder Hyong Joo Park and Elder Hyon Soo Kim) for earnestly taking on the task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Amended in 2016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 차례



제1부 사도신경 / 43



제2부 신조 / 47

제3부 요리문답 / 53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81

제1장 성경에 관하여 .....	82
제2장 하나님과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	86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관하여 .....	88
제4장 창조에 관하여 .....	90
제5장 섭리에 관하여 .....	91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	94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	95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	97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	100
제10장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	101
제11장 의인(義忍)에 관하여 .....	103
제12장 양자(養子)에 관하여 .....	105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	106
제14장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	107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	108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	109
제17장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	112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	113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15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18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20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23
제23장	관공직에 관하여	126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28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29
제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131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	132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134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35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38
제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139
제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140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141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143
제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144
선언문		145


제 2 편    정    치


**제1장 원리(PRIMARY PRINCIPLES) / 149**

제 1 조	양심의 자유	149
	Freedom of the Conscience	
제 2 조	교회의 자유	150
	Freedom of the Church	

제3조	진리와 행위 .....	150
	Truth and Practice	
제4조	교회의 직분자 .....	150
	Church Officers	
제5조	치리권 .....	151
	Authority of Governance	
제6조	권고와 징계 .....	151
	Church Discipline	
<b>제2장 교회(THE CHURCH) / 151</b>		
제7조	교회의 정의 .....	151
	Definition of the Church	
제8조	교회의 구별 .....	152
	Distinction of the Church	
제9조	지교회 .....	152
	Local Church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	153
	Organization of a Local Church	
<b>제3장 교인(THE CHURCH AND ITS MEMBERS) / 153</b>		
제11조	교인의 정의 .....	153
	Definition of Members	
제12조	교인의 구분 .....	153
	Categories of Membership	
제13조	교인의 의무 .....	154
	Duties of Members	
제14조	교인의 권리 .....	154
	Privileges of Members	
제15조	교인의 이명업무 .....	154
	Transfer of Membership	

제16조	교인의 출타 신고 의무 .....	155
	Report of a Member's Absence	
제17조	교인의 자격정지 .....	156
	Disqualification of Membership	
제18조	교인의 복권 .....	156
	Restoration of Membership	
<b>제4장</b>	<b>교회의 직분자(THE CHURCH AND ITS OFFICERS) / 156</b>	
제19조	교회의 직분자의 구분 .....	156
	Classification of the Officers of the Church	
제20조	항존직 .....	156
	Permanent Officers	
제21조	임시직 .....	157
	Temporary Officers	
<b>제5장</b>	<b>목사(PASTORS) / 157</b>	
제22조	목사의 의의 .....	157
	Definition of a Pastor	
제23조	목사의 자격 .....	158
	Qualifications of a Pastor	
제24조	목사의 직무 .....	160
	Duties of Pastors	
제25조	목사의 칭호 .....	160
	Titles of Pastors	
제26조	목사의 청빙 .....	163
	Calling of a Pastor	
제27조	목사의 청빙 승인 .....	164
	Approval of the Call of Pastors	
제28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	164
	Calling of a Pastor of other Presbyteries	



제29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165
	Calling of a Pastor from Different Denominations	
제30조	목사의 임직 .....	166
	Installation of Pastors	
제31조	목사의 임직식 .....	166
	Installation Ceremony of Pastors	
제32조	목사의 임지 이전 .....	166
	Transferring of Pastors	
제33조	목사의 사임과 사직 .....	166
	Resignation of the Pastor	
제34조	목사의 휴무 .....	167
	Temporary Release from the Exercise of Ordained Office	

## 제6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 (ELDERS, DEACONS, and GWONSAS) / 168

제35조	장로의 직무 .....	168
	Duties of Elders	
제36조	장로의 자격 .....	169
	Qualification of the Elders	
제37조	장로의 시무 연한 .....	169
	Service Term for Elders	
제38조	안수집사의 직무 .....	169
	Duties of Deacons	
제39조	안수집사의 자격 .....	170
	Qualifications of Deacons	
제40조	권사의 직무 .....	170
	Duties of GwonSas	

제41조	권사의 자격 .....	170
	Qualifications of GwonSas	
제42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	171
	Elec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제43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	171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제44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과 사직 .....	172
	Resign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제45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서 처리 .....	173
	Procedure of Resign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제46조	원로장로 .....	173
	Elder Emeritus	
제47조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 .....	173
	Retired Elders, Deacons, and GwonSas	
제48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	173
	Temporary Release and Restoration	
제49조	협동 향존직분자 .....	175
	Permanent Officers from other Church	

**제7장 전도사, 서리집사**

**(JUNDOSA AND TEMPORARY DEACON) / 175**

제50조	전도사의 직무 .....	175
	Duties of the JunDoSa	
제51조	전도사의 자격 .....	176
	Qualifications of JunDoSa	
제52조	서리집사의 임명 .....	176
	Installation of Temporary Deacon	

<b>제8장</b>	<b>치리회(GOVERNING BODIES) / 176</b>	
제53조	치리회의 구분 .....	176
	Governing Bodies	
제54조	치리회의 구성 .....	176
	Formation of Governing Bodies	
제55조	치리회의 관할 .....	177
	Jurisdiction of Governing Bodies	
제56조	치리회의 권한 .....	177
	Authorities of the Governing Bodies	
<b>제9장</b>	<b>당회(THE SESSION) / 179</b>	
제57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	179
	Organization and Dismissal of the Session	
제58조	당회의 개회 성수 .....	179
	Quorum of the Session	
제59조	당회장 .....	179
	Moderator of the Session	
제60조	당회의 직무 .....	181
	Duties of the Session	
제61조	당회의 회집 .....	183
	Meetings of the Session	
제62조	당회록 .....	183
	Minutes of the Sessions	
제63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	183
	Rolls of the Session	
<b>제10장</b>	<b>노회(THE PRESBYTERY) / 184</b>	
제64조	노회의 조직 .....	184
	Organization of the Presbytery	



제65조	노회원 자격 .....	185
	Qualifications for members of the Presbytery	
제66조	노회의 성수 .....	186
	Quorum of the Presbytery	
제67조	노회의 직무 .....	186
	Duties of the Presbytery	
제68조	노회의 회집 .....	188
	Meetings of the Presbytery	
제69조	노회록 .....	189
	Minutes of the Presbytery Meetings	
제7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	189
	Rolls of the Presbytery	
제71조	시찰위원회 .....	190
	Inspection Committee	
제7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	190
	Division, Merger, and Dismissal of a Presbytery	
<b>제11장 총회(GENERAL ASSEMBLY) / 191</b>		
제73조	총회의 의의 .....	191
	Defini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제74조	총회의 조직 .....	192
	Organiz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제75조	총회의 성수 .....	192
	Quorum of the General Assembly	
제76조	총회의 범위 .....	192
	Sphere of the General Assembly	
제77조	총회의 직무 .....	192
	Duties of the General Assembly	

제78조	총회의 회집 .....	194
	Meeting of General Assembly	
제79조	개회 및 폐회 .....	194
	Opening and Closing of the General Assembly	
<b>제12장 회의 및 기관 단체(MEETINGS) / 195</b>		
제80조	공동의회 .....	195
	Congregational Meetings	
제81조	제직회 .....	196
	Officers Meeting	
제8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	198
	Affiliated Agencies or Auxiliaries, United Sessions and United Officers Meetings	
<b>제13장 재산(ASSETS) / 200</b>		
제83조	총회의 재산 .....	200
	General Assembly's Assets	
제84조	노회의 재산 .....	200
	Presbytery's Assets	
제85조	재산의 보존 .....	200
	Preserving the Properties	
제86조	재산관리 및 용도 .....	201
	Management of Assets and the Use	
제8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	202
	Properties Not Incorporated Into the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b>제14장 선교 동역자(MISSIONARIES) / 202</b>		
제8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	202
	Qualifications of Missionaries	

제8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	203
	Missionaries Accredited by the General Assembly	
제9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	203
	Duties of Missionaries	
제91조	기타 선교 관계 .....	204
	Relationship with Other Missionaries	

**제5장 헌법 개정(AMENDMENT) / 204**

제92조	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모범의 개정 .....	204
	Amendment of the Government,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of Worship	
제93조	교리의 개정 .....	205
	Amendment of the Doctrine	
제94조	헌법 개정위원 .....	206
	Amendment Committee	


제 3 편 권 고 와 징 계


**제장 총칙(GENERAL) / 211**

제 1 조	권고와 징계의 뜻 .....	211
	Definition of Discipline	
제 2 조	권고와 징계의 목적 .....	211
	Purpose of Discipline	
제 3 조	권고와 징계의 사유가 되는 죄과 .....	211
	Offenses That May Be Subjected to Discipline	
제 4 조	책벌의 원칙 .....	213
	Principles of Disciplinary Action	

제 5 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	214
	Types and Degree of Disciplinary Action	
제 6 조	재판의 원칙 .....	216
	Principles of Trial	
<b>제2장</b>	<b>재판국(JUDICATORY OFFICE) / 216</b>	
<b>제1절</b>	<b>통칙(General) / 216</b>	
제 7 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	216
	Establishment of Judicatory Office and Jurisdiction	
제 8 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	217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the Member of Judicatory Office	
제 9 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219
	Binding Authority of the Higher Level Trial	
<b>제2절</b>	<b>총회 재판국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 219</b>	
제10조	구성 .....	219
	Composition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	220
	Terms and By-Election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220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제13조	의결방법 .....	221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14조	심판사항 .....	221
	Cases to be Handled	
제15조	전문위원 .....	221
	Expert Advisors	
<b>제3절</b>	<b>노회 재판국(Judicatory Office of Presbytery) / 222</b>	

제16조	구성	222
	Composition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223
	Terms and By-Election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223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제19조	의결방법	223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20조	심판사항	223
	Cases to be Handled	
제21조	전문위원	224
	Expert Advisors	
제22조	겸임금지	224
	Prohibition Against Dual Offices	
<b>제4절</b>	<b>당회 재판국(Judicatory Office of Session) / 225</b>	
제23조	구성	225
	Composition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225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제25조	의결방법	225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26조	심판사항	225
	Cases to be Handled	
<b>제3장</b>	<b>일반소송절차(GENERAL TRIAL PROCEDURE) / 226</b>	
제27조	당사자 능력	226
	Capability of Parties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227
	Advance Payment of Trial Cost	



제29조	변론	227
	Defense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및 보호	227
	Qualification and Protection of Attorney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228
	Absence of a Party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228
	Period of Decision Making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228
	Content of the Court Record	
제34조	판결의 확정	229
	Finalization of Judgment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229
	Method of Judgment and Notification	
제36조	재판 송달의 기일	230
	Sending the Judgment	
제37조	판결의 정정	230
	Correction of Judgment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230
	Requesting a Copy or Abstract of the Court Record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231
	Trial Record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232
	Stenography or Audio Recording in Courtroom	
제41조	송달의 원칙	233
	Principle of Delivery	
제42조	기간의 계산	233
	Calculating Period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233
	Summoning Defendant	
제44조	증인의 의무	234
	Duties of Witness	
제45조	증인의 선서	234
	Witness Oath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235
	Process of Witness Examination	
제47조	화해의 증용	236
	Encouragement of Reconciliation	
<b>제4장</b>	<b>제1심 소송절차(TRIAL PROCEDURE-1<sup>ST</sup> LEVEL TRIAL)</b>	<b>/ 236</b>
<b>제1절</b>	<b>고소 및 고발(Accusation and Charge)</b>	<b>/ 236</b>
제48조	고소권자	236
	Accuser	
제49조	고소기간	236
	Period for Accusation	
제50조	고소의 취하	237
	Withdrawal of Accusation	
제51조	고발	237
	Charges	
제52조	고발기간	237
	Period of Bringing Charges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237
	The Method of Accusation and Charge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238
	Response to Accusation/Charge	
제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238
	Organizing Prosecution Committee in a Presbytery	

제56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	239
	Organizing Prosecution Committee in a Session	
제57조	의결방법 .....	240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58조	피의자 신문 .....	240
	Examining Defendant	
<b>제2절 기소(Prosecution) / 241</b>		
제59조	기소의 제기 .....	241
	Indictment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	241
	Method of Indictment and Bill of Indictment	
제61조	기소의 취하 .....	242
	Withdrawing Indictment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	242
	Processing a Case from Accusations or Charges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	242
	Notification of Decision to the Accuser or Charger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	243
	Notifying Accuser or Charger Reasons for Not Proceeding with Indictment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	243
	Appeal and Re-appeal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	245
	Decision of the Judiciary Office	
<b>제3절 재판(Trial) / 246</b>		
제67조	기소장부분의 송달 .....	246
	Delivery of a Copy of Bill of Indictment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	246
Scheduling or Re-scheduling Trial Date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	246
Submitting Reasons for Absence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	247
Absence of Defendant or Prosecution Committee Member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	247
Submitting Evidence Before the Trial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	247
Presumption of Innocence	
제73조 인정신문 .....	247
Identity Questions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	248
Opening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	248
Defendant's Right to Testify	
제76조 피고인 신문 방식 .....	248
Method of Examining Defendant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	248
Victim's Right to Testify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	249
Changes in the Bill of Indictment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	249
Restricting Unnecessary Arguments	
제80조 증거 재판주의 .....	250
Trial by Evidence	

제81조	자유 심증주의	250
	Free Evaluation of Evidence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50
	Documents Admissible as Evidence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250
	Methods of Examining Evidences	
제84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251
	Testimony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dant After Examination of the Evidences	
제85조	책벌의 선고	252
	Annou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252
	Reasons to be Stated in the Judgment for Disciplinary Action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252
	Informing an Appeal	
제88조	무죄의 판결	252
	Finding Not Guilty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253
	Judgment to Dismiss Indictment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253
	Decision to Dismiss Indictment	
<b>제5장</b>	<b>상소(APPEAL) / 254</b>	
<b>제1절</b>	<b>통칙(General) / 254</b>	
제91조	상소권자	254
	Right to Appeal	
제92조	일부상소	254
	Partial Appeal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254
	Waiver or Withdrawal of Appeal	
<b>제2절 항소(Appeal to the Higher Judiciary Office) / 255</b>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255
	Judgments that can be Appealed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255
	Method of Appeal and Time Limitation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256
	Delivery of Trial Record and Evidence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256
	Receiving Trial Record and Notifying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256
	Appellate Brief and Response	
제99조	항소가각의 결정	257
	Decision to Dismiss Appeal	
제100조	항소이유	257
	Causes for Appeal	
제101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258
	Trial at the Appellate Judiciary Office	
제102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259
	Returning the Case to the Original Judiciary Office	
제103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260
	Transferring the Case to Proper Jurisdiction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260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260
	Method of Recording the Judgment	

제106조	준용규정 .....	260
	Applicable Rules	
<b>제3절</b>	<b>상고(Appeal to the Highest Judicatory Office) / 261</b>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	261
	Judgment that can be Appealed to the Highest Judicatory Office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	261
	Method of Appeal and Time Limitation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261
	Delivery of Trial Record and Evidence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	261
	Receiving Trial Record and Notifying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262
	Appellate Brief and Response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	262
	Decision to Dismiss Appeal	
제113조	상고각하의 판결 .....	262
	Decision for Automatic Dismissal Without Review	
제114조	상고이유 .....	262
	Causes for Appeal	
제115조	심판범위 .....	262
	Scope of Judgment	
제116조	원심판결의 파기 .....	263
	Vacating the Original Judgment	
제117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263
	Dismissal of Indictment and Reversal Judgment	
제118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	263
	Recognition of Jurisdiction and Judgment to Transfer	

제119조	파기자판	264
	Reversal and Rendering a New Judgment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264
	Enforcing and Entering Judgment	
<b>제6장</b>	<b>특별소송절차 등(SPECIAL TRIAL PROCEDURE, ETC.)</b>	<b>265</b>
<b>제1절</b>	<b>위탁재판(Entrusted Trial)</b>	<b>265</b>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265
	Requesting an Entrusted Trial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266
	Handling a Request for an Entrusted Trial	
제123조	준용규정	266
	Applicable Regulations	
<b>제2절</b>	<b>재심(Retrial)</b>	<b>266</b>
제124조	재심사유	266
	Grounds for Retrial	
제125조	재심의 관할	268
	Jurisdiction of Retrial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268
	Procedure for Retrial Request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268
	Period for Retrial Request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268
	Persons Qualified to Request a Retrial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269
	Determining Retrial and Opinions of Parties Involved	
제130조	재심의 심판	270
	Judgment from Retrial	



제131조	준용규정 .....	270
	Applicable Regulations	
<b>제3절</b>	<b>총회특별재심</b>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 270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	270
	Persons Qualified to Request a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	271
	Requesting a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	271
	Processing Request for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	272
	Composition of the General Assembly Special Retrial Committee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	272
	Term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embers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273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제138조	의결방법 .....	273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	273
	Determining Special Retrial	
제140조	준용규정 .....	274
	Applicable Provisions	
<b>제7장</b>	<b>시벌 및 해벌(ENFORCING DISCIPLINARY ACTION AND RESTORATION) / 274</b>	

제141조	시벌 처리회	274
	Governing Body that Enforces the Disciplinary Action	
제142조	시벌방법	275
	Method of Enforcement	
제143조	가중시벌	275
	Additional Disciplinary Action	
제144조	해벌과 청빙	275
	Restoration and Offer to Serve as Pastor	
제145조	출교의 해벌	276
	Restoring the Excommunicated	
제146조	면직의 해벌	276
	Restoring the Dismissed	
제147조	해벌 처리회	277
	Governing Body for Restoration	
<b>제8장 행정쟁송(ADMINISTRATIVE TRIAL) / 277</b>		
<b>제1절 통칙(General) / 277</b>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277
	Types of Administrative Trial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278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the Member of Judicatory Office	
제150조	준용규정	278
	Applicable Provisions	
<b>제2절 행정소송(Administrative Proceeding) / 279</b>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279
	Scope of Administrative Proceeding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279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	



제153조	재판관할	279
	Jurisdiction	
제154조	원고적격	283
	Standing of Plaintiff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284
	Standing of Defendant and Renaming of Defendant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284
	3rd Party Involvement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285
	Filing for the Proceeding and Period for Filing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285
	Contents of the Request for Proceeding	
제159조	청구의 변경	286
	Modifying the Request for Proceeding	
제160조	소의 취하	287
	Withdrawal of Request for Proceeding	
제161조	직권심리	287
	Examination by Direct Authority	
제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287
	Binding Power of Judgment for Revocation	
<b>제3절</b>	<b>결의 취소 등의 소송(Trial to Revoke a Resolution) /</b>	<b>288</b>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288
	Request to Revoke a Resolution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인 소	289
	Request to Affirm Invalidity of Resolution	
<b>제4절</b>	<b>치리회 간의 소송(Trial Between Governing Bodies) /</b>	<b>289</b>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	289
	Trial Between Governing Bodies	

제166조	소송위원 선정	290
	Selection of Trial Committee Members	
<b>제5절</b>	<b>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Trial for Nullifying Election or Nullifying the Result of Election) / 290</b>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290
	Trial for Nullifying Election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291
	Trial for Nullifying the Result of Election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291
	Ruling on Nullifying Election or Result of Election	
제170조	소송의 처리	291
	Handling Trial	
제171조	증거조사	292
	Examining Evidence	
<b>제9장</b>	<b>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b>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TRIAL) / 292	
제172조	목사의 규례	292
	Regulations Concerning Pastors	
제173조	교인의 규례	295
	Regulations Concerning Church Members	
제174조	판결에 대한 책임과 재판난무 방지	297
	Duties to Judgment and Avoiding Unnecessary Trials	
제175조	수습, 화해(전권)위원회	297
	Resolution/Reconciliation(Full Authority) Committee	
제176조	정치와 법의 위치	298
	Governance and Laws	

제177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	298
Inquiry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Request for Re-interpretation	




❖ ❖ ❖
**제 4 편 부 칙**
❖ ❖ ❖


제1조 개정헌법 발효 .....	303
Apply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 ❖ ❖
**제 5 편 예배 모범**
❖ ❖ ❖


<b>제1장 교회와 예배 / 307</b>	
1.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	307
2. 예배 .....	308
3. 예배의 시간 .....	308
4. 예배의 장소 .....	311
5. 예배의 교육 .....	312
<b>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 / 313</b>	
1. 말씀의 예전 .....	313
2. 성례전 .....	317
<b>제3장 예배의 배열 / 322</b>	
<b>제4장 예배의 분류 / 323</b>	
<b>제5장 교회 예식 / 325</b>	
1. 임직예식 .....	326
2. 봉헌예식 .....	326
3. 결혼예식 .....	327

4. 장례예식 .....	327
<b>제6장 예배와 목회 / 328</b>	
1. 예배와 선교 .....	328
2. 예배와 화해 .....	329
3. 예배와 목회적 돌봄 .....	329
4. 예배와 경건 .....	330
<b>제7장 시벌과 해벌 / 330</b>	
1. 시벌 .....	330
2. 해벌 .....	331


제 6 편 서 식


<b>권고와 징계 서식목록 / 334</b>	
(제1호 서식)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	336
(제2호 서식) 변호인 선임서 .....	337
(제3-1호 서식) 소환장(피고인용) .....	338
(제3-2호 서식) 출석요구서(피의자용) .....	339
(제4-1호 서식) 고소(고발)장(권징책벌용) .....	340
(제4-2호 서식) 고소(고발) 취하서(권징책벌용) .....	341
(제5-1호 서식) 소장(행정소송용) .....	342
(제5-2호 서식) 소장(결의취소 등 소송용) .....	343
(제5-3호 서식) 소장(치리회 간의 소송용) .....	344
(제5-4호 서식) 소장(선거소송용) .....	345
(제5-5호 서식) 청구변경 신청서(행정쟁송용) .....	346
(제5-6호 서식) 소취하서(행정쟁송용) .....	347
(제6-1호 서식) 불기소처분 결정 및 통지서 .....	348
(제6-2호 서식)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	349

(제6-3호 서식) 항고장(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불복용) ...	350
(제6-4호 서식) 재항고장(항고 기각결정 불복용) .....	351
(제6-5호 서식) 재항고장(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불복용) ...	352
(제7-1호 서식) 기소장 .....	353
(제7-2호 서식) 기소통지서 .....	354
(제7-3호 서식) 답변서(권징책벌 피고인용) .....	355
(제7-4호 서식) 답변서(행정쟁송용) .....	356
(제7-5호 서식) 준비서면(권징책벌 기소위원회용) .....	357
(제7-6호 서식) 준비서면(행정쟁송용) .....	358
(제7-7호 서식) 기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	359
(제7-8호 서식) 기소취소서 .....	360
(제7-9호 서식) 기소취소통지서 .....	361
(제8-1호 서식) 판결문(권징책벌용) .....	362
(제8-2호 서식) 판결문(행정쟁송용) .....	363
(제8-3호 서식) 결정문(권징책벌용·재심용·특별재심용) ...	364
(제8-4호 서식) 결정문(총회특별심판위원회 행정소송용) ...	365
(제8-5호 서식) 판결집행문 .....	366
(제9-1호 서식) 항소(상고)장 .....	367
(제9-2호 서식) 항소(상고) 취하(포기)서 .....	368
(제9-3호 서식) 항소(상고) 이유서 .....	369
(제9-4호 서식) 답변서(항소·상고용) .....	370
(제10-1호 서식) 위탁재판 청원서 .....	371
(제10-2호 서식) 재심 청구서 .....	372
(제10-3호 서식) 총회특별재심청원서 .....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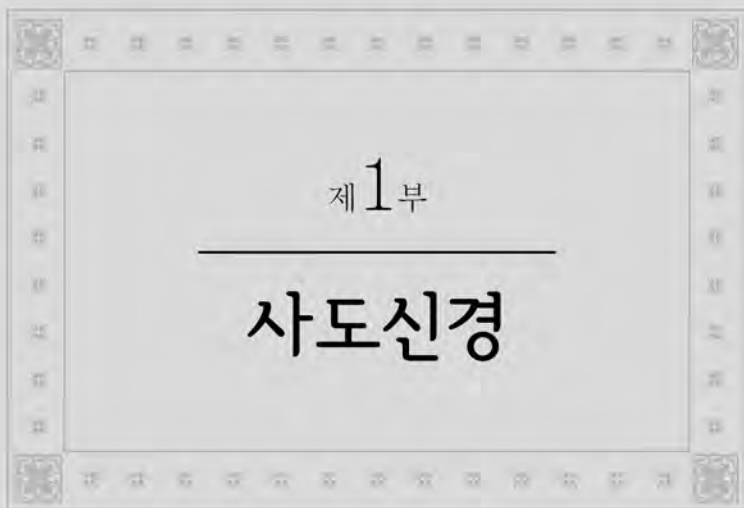
제 1 편

# 교 리

THE DOCTR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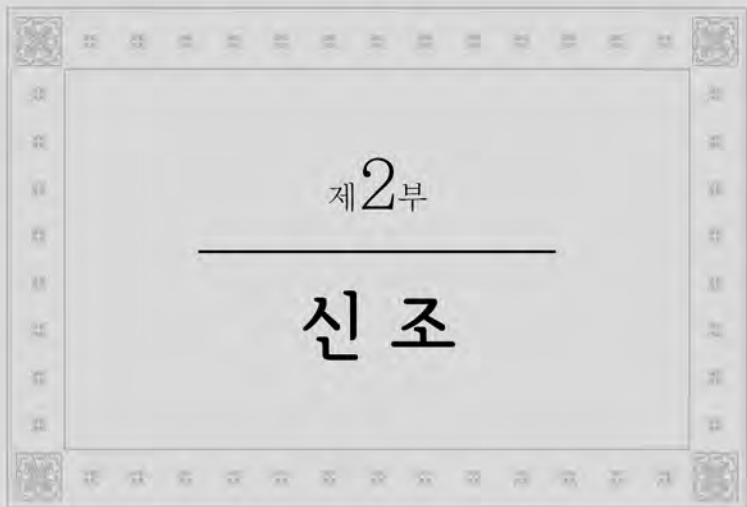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번역)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2부

---

# 신 조



## 신 조

해외한인장로회 신조는 다음과 같다.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4.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전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5.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6. 우리의 시조가 선악 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7.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주검에서 삼 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9.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시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얻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이다.

10.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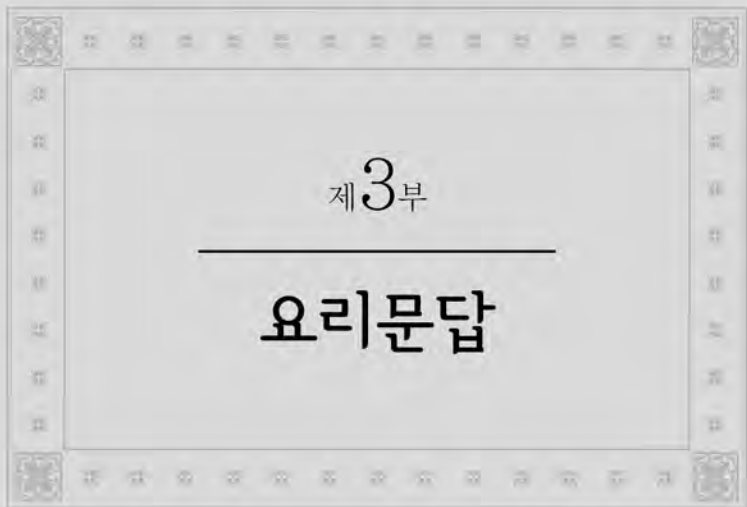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12.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 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제 3부

---

요리문답



## 요리문답

**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 고전 10 : 31, 롬 11 : 36, 시 73 : 24 - 26, 요 17 : 22

**문 2.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신구약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 답후 3 : 15 - 17

**문 3.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 요 20 : 31, 시 119 : 105, 미 6 : 8

**문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 요 4 : 24, 시 139 : 7 - 13, 렘 23 : 4, 히 4 : 13, 시 139 : 1 - 4, 히 13 : 8, 시 102 : 27, 말 3 : 6, 왕상 8 : 27, 답후 2 : 13, 출 34 : 6 - 7

문 5.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답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 계신 참하나님이십니다.

-고전 8 : 4, 신 4 : 35, 39, 6 : 4, 렘 10 : 10

문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마 3 : 16-17, 28 : 19, 빌 2 : 6

문 7.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엡 1 : 4-5, 9, 롬 9 : 22-23

문 8.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계 4 : 11, 사 40 : 26, 롬 11 : 36, 히 11 : 3

문 9.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옛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히 1 : 3, 시 33 : 9, 창 1 : 21

문 10.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 창 1 : 27-28, 9 : 2

**문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 시 145 : 9, 17, 103 : 19, 104 : 24, 계 11 : 17-18, 히 1 : 3

**문 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시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창 2 : 16-17, 롬 5 : 12-14, 10 : 5, 눅 10 : 25-28

**문 13.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 창 3 : 6-8, 3 : 22-23, 고후 11 : 3

**문 14.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 요 16 : 9, 롬 14 : 23, 약 4 : 17, 요일 3 : 4, 5 : 17

**문 15.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 창 3 : 6

**문 16.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답**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 시 51 : 5, 행 17 : 25-26, 롬 5 : 12-20, 고전 15 : 21-22

**문 17.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 롬 5 : 5, 갈 3 : 10, 엡 2 : 3

**문 18.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 엡 2 : 1, 고전 15 : 22, 마 15 : 19, 약 1 : 14-15

**문 19.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 3 : 8, 엡 2 : 2, 롬 5 : 14, 창 2 : 17, 마 25 : 41

**문 20.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 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들이려는 것입니다.

-엡 1 : 4-7, 딤편 1 : 14-15, 딤편 3 : 4-7, 롬 3 : 20-22

**문 21.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답**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지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요 1 : 1, 14, 딤편 2 : 5, 롬 9 : 5, 골 2 : 9

**문 22.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마 26 : 38, 눅 1 : 27-31, 히 2 : 14, 4 : 15, 7 : 26, 요 1 : 14

**문 23.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 행 3 : 22, 눅 4 : 18, 21, 히 4 : 14-15, 5 : 5, 요 18 : 36-37, 빌 2 : 6-8, 10, 계 19 : 16

**문 24.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 사 54 : 13, 요 6 : 63, 15 : 15, 눅 4 : 18-21

**문 25.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 히 9 : 26-28, 7 : 25, 27, 10 : 10, 7 : 26-27, 10 : 14, 9 : 14, 엡 2 : 16, 롬 3 : 26, 8 : 34, 10 : 4, 요일 2 : 1, 히 9 : 25, 2 : 17

**문 26.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 마 28 : 20, 18 : 17-18, 사 63 : 9, 고전 15 : 55-57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 눅 1 : 31, 고후 8 : 9, 빌 2 : 6-9, 마 27 : 46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 고전 15 : 4, 요 20 : 19-23, 막 16 : 19, 눅 24 : 51, 행 1 : 9, 엡 1 : 19-20, 롬 8 : 34, 행 1 : 11, 17 : 31, 딤후 4 : 1

**문 29.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 요 1 : 12-13, 16 : 7-8, 딤후 3 : 5-6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 엡 2 : 8, 2 : 18-20, 요 6 : 37-39

**문 31.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 요 16 : 8, 엠 1 : 18, 계 3 : 17-18, 행 26 : 18, 겔 11 : 19, 빌 2 : 13

**문 32.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 롬 3 : 24, 8 : 30, 엠 1 : 5, 롬 8 : 14-15, 살전 5 : 23, 고전 1 : 30

**문 33.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롬 3 : 22-24, 행 10 : 43, 고후 5 : 19, 롬 3 : 26, 5 : 19-21, 5 : 1

**문 34.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효 속에 받아 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 요일 3 : 1, 요 1 : 12, 사 44 : 2, 롬 8 : 17

**문 35.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 엡 1 : 4, 6, 4 : 23-24, 고전 15 : 31, 롬 6 : 11

**문 36.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답**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 롬 8 : 36, 39, 마 11 : 29, 갈 5 : 22, 벧후 3 : 18, 약 1 : 12

**문 37.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답**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 요일 3 : 2, 엡 5 : 27, 눅 23 : 43, 살전 4 : 14

**문 38. 신자들이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답**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

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흠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살전 4 : 16, 요 5 : 28, 고전 15 : 42-44, 마 10 : 32, 25 : 33-34, 시 16 : 11, 살전 4 : 17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 신 29 : 26, 마 28 : 20, 미 6 : 8

**문 40.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 롬 2 : 14-15, 10 : 5, 창 2 : 17

**문 41.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답**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 출 20 : 3, 17, 마 19 : 17-19

**문 42.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마 22 : 37-40, 신 6 : 5

**문 43. 십계명의 머리말은 어떤 것입니까?**

**답** 십계명의 머리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 곧 노예의 집에서 너를 데려 내온 너의 주 하나님이다.”

-출 20 : 2

**문 44.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엡 1 : 2, 롬 3 : 29, 사 43 : 11, 레 18 : 30, 신 11 : 1

**문 45.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 : 3

**문 46.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 43 : 10, 렘 32 : 37, 마 4 : 10

**문 47.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참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 14 : 1, 렘 2 : 27-28, 단 5 : 23, 신 8 : 8-18



**문 48.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 시 44 : 20-21, 대상 28 : 9

**문 49.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 출 20 : 4-6

**문 50.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 신 32 : 46, 요 4 : 24, 고전 15 : 34, 딤후 6 : 13-14

**문 51.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일입니다.

- 신 13 : 6-8, 4 : 15-16, 삼하 6 : 7, 레 10 : 1

**문 52.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점유권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열의(熱意)입니다.  
- 계 15 : 3-4, 롬 1 : 6, 출 34 : 14

**문 53.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 출 20 : 7

**문 54.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 히 12 : 28-29, 계 15 : 3-4, 말 1 : 6-10

**문 55.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 출 5 : 2, 막 7 : 11, 말 2 : 2

**문 56.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

서든지 사람들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삼상 2 : 12, 히 4 : 13

**문 57.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 : 8-11

**문 58.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이레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창 2 : 3, 출 16 : 25-29, 신 5 : 12, 사 56 : 2

**문 59. 이레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 주간에 안식일을 삼으셨습니까?**

**답**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정하여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으며 그 후부터 세

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창 2 : 3, 눅 23 : 56, 고전 16 : 1-2, 마 12 : 8, 행 20 : 7, 요 20 : 19-26

**문 60.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끊고, 그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렘 17 : 21-22, 사 58 : 13-14, 마 12 : 1-14, 출 31 : 12-17, 20 : 8-10

**문 61.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겔 22 : 26, 23 : 38, 말 1 : 13, 사 58 : 13

**문 62. 넷째 계명에 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 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일과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출 30 : 9-17, 20 : 11, 레 23 : 3

문 63. 다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 출 20 : 12

문 64.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  
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엡 6 : 5

문 65.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  
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 마 15 : 4-6

문 66. 다섯째 계명에 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다섯째 계명에 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  
게 장수(長壽)와 번영이 있으리라는(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  
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 약속입니다.

- 신 5 : 16, 엡 6 : 3

문 67. 여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 출 20 : 13

문 68.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엡 5 : 29, 마 5 : 21

문 69.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행 1 : 8, 왕상 21 : 9-10

문 70.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출 20 : 14

문 71.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마 5 : 27-32

문 72.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엡 4 : 29, 5 : 3-4

문 73. 여덟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여덟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 출 20 : 15

**문 74.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들의 재산과 신분을 정당하게 얻고 또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 잠 10 : 4, 12 : 27, 23 : 21, 레 6 : 4-6, 살후 3 : 10-12

**문 75.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산이나, 신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이나, 또는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 엡 4 : 28, 겔 22 : 29, 렘 52 : 17, 말 3 : 9, 살후 3 : 7-10

**문 76. 아홉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아홉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 출 20 : 16

**문 77.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 엡 4 : 25, 롬 1 : 8, 고전 13 : 4-5, 잠 22 : 1, 빌 4 : 8, 스후 8 : 16, 벰전 3 : 16, 행 25 : 10

**문 78.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 우리 자

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 레 19 : 15, 벘후 2 : 2, 빌 3 : 18-19, 잠 19 : 5

**문 79. 열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 출 20 : 17

**문 80.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입니다.

- 히 13 : 5, 딤후 6 : 6, 빌 2 : 4, 딤후 1 : 5

**문 81.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모든 것입니다.

- 고전 10 : 10, 갈 5 : 26, 약 3 : 14-16, 롬 7 : 7, 골 3 : 5

**문 82.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 전 7 : 20, 요일 1 : 8, 창 8 : 21, 약 1 : 14, 3 : 2-8, 시 19 : 1-12,



왕상 8 : 46

**문 83.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답**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 히 2 : 2-3, 요 19 : 11, 시 19 : 13

**문 84.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 롬 6 : 23, 마 25 : 41, 롬 1 : 18, 신 28 : 15

**문 85.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 요 3 : 16-18, 막 1 : 15, 눅 13 : 34, 마 28 : 20

**문 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 요 1 : 11-12, 6 : 40, 잠 3 : 5, 히 10 : 39

**문 87.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 딤후 2 : 15, 행 2 : 37, 11 : 18, 26 : 18, 눅 18 : 13, 램 14 : 7, 삼상 7 : 2, 고후 7 : 11

**문 88.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통상적 방편은 그의 법령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 딤후 3 : 16-17, 요 6 : 53-57, 마 28 : 19-20

**문 89.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안으로써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 요 5 : 39, 17 : 3, 행 2 : 37, 약 2 : 23, 요 4 : 22, 시 19 : 7, 119 : 130, 살전 1 : 6

**문 90.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

**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 말씀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써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 (잠 8 : 34, 눅 8 : 18, 벰전 2 : 1-2, 히 4 : 2)

- 딤편 4 : 13, 시 119 : 18, 91, 사 66 : 2, 약 1 : 21-22

**문 91.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 고전 3 : 7, 6 : 11, 12 : 13, 벰전 3 : 21, 행 8 : 13, 23

**문 92.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있어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 마 28 : 19, 26 : 26-28, 눅 22 : 20, 롬 4 : 11

**문 93.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어느 것들입니까?**

**답**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 마 28 : 19-20, 막 14 : 25, 고전 11 : 23

**문 94.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 마 28 : 19, 롬 6 : 3, 계 1 : 5, 갈 3 : 26-27

**문 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답**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 2 : 41, 2 : 38-39, 고전 7 : 14, 갈 3 : 27-28

**문 96.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육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눅 22 : 15, 고전 11 : 26-28, 10 : 16, 요 6 : 55-56, 마 26 : 26-27, 엡 3 : 17

**문 97.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답**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

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 고전 11 : 27-29, 요 6 : 55-56, 롬 6 : 4

**문 98.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 요 6 : 38, 14 : 13-14, 16 : 23-24, 마 26 : 39-42, 요일 5 : 14, 눅 18 : 13, 빌 4 : 6, 마 21 : 22

**문 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 마 6 : 9-12, 요일 5 : 14, 딤후 3 : 16-17

**문 100.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57 : 15, 눅 11 : 13, 15 : 20, 10 : 12, 사 43 : 1, 64 : 9, 말 1 : 6,  
속 8 : 21, 엡 6 : 18, 롬 8 : 15

**문 101.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또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롬 11 : 36, 마 5 : 16, 빌 2 : 11-20, 롬 11 : 33, 고후 3 : 5, 사 64 : 1-2, 시 67 : 1-3, 145장

**문 102.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과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어 우리들과 또 남들이 그리로 인도되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 하루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시 68 : 1-2, 마 6 : 33, 속 14 : 20, 계 22 : 20

**문 103.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써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히 12 : 28, 시 119 : 35, 103 : 20-23, 단 7 : 10

문 104.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 잠 30 : 8-9, 10 : 22, 창 28 : 20-21, 딤후 4 : 4-5

문 105.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눅 11 : 4, 마 18 : 35, 행 7 : 60, 롬 3 : 24-25

문 106.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 마 26 : 41, 시 51 : 10-12, 살전 5 : 23, 고전 10 : 13

문 107. 주님의 기도의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기도의 맺는 말,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 신 32 : 43, 시 104 : 24, 대상 29 : 10-13, 롬 11 : 36, 고전 14 : 16, 계 22 : 20-21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sup>1)</sup>

##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잘 나타냄으로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롬 1 : 19-20, 2 : 14-15, 1 : 32, 2 : 1, 시 19 : 1-3<sup>2)</sup>).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 충분치 못하였으므로(고전 1 : 21, 2 : 13-14)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히 1 : 1).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시고 또한 위안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기록해 두시기를 기뻐하셨다(잠 22 : 19-21, 눅 1 : 3-4, 롬 15 : 4, 마 4 : 4, 10, 사 8 : 19-20).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딤후 3 : 15, 벧후 1 : 19).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은 현재 중지되어 버렸다(히 1 : 1-2).

-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은 1643년 영국의 “장기의회”에 의해서 소집된 신학자 총회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총회의 고백서는 1648년의 의회에서 공인한 것이다. 이에 앞서 1647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준비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원본은 1958년도 판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수정(修正)의 역사를 더듬어 보지도 않았다. 주에 나타나는 구독법(句讀法), 철자법, 그리고 대문자 쓰기는 1647년 판에 따른다.
  2. 1967년도의 미국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성구가 인용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번역은 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1647년 판에서 성구를 인용했음을 밝힌다.

2. 성경 또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이라는 명칭하에 현재 신구약성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책은 :

### 구 약

창 세 기	열왕기상	전 도 서	오 바 다
출애굽기	열왕기하	아 가	요 나
레 위 기	역 대 상	이 사 야	미 가
민 수 기	역 대 하	예레미야	나 흠
신 명 기	에 스 라	예레미야 애가	하 박 국
여호수아	느헤미야	에 스 겔	스 바 나
사 사 기	에 스 터	다 니 엘	학 개
룻 기	욥 기	호 세 아	스 가 라
사무엘상	시 편	요 엘	말 라 기
사무엘하	잠 언	아 모 스	

### 신 약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요한 1서
누가복음	에베소서	디도서	요한 2서
요한복음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한 3서
사도행전	골로새서	히브리서	유다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야고보서	[요한] <sup>3)</sup> 계시록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베드로전서	

3. [ ] 안에 있는 것은 1967년 판에는 없으나 1647년 판에는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믿음과 생활의 기준이 된다(눅 16 : 29, 31, 엡 2 : 20, 계 22 : 18-19, 딤후 3 : 16).

3.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며 경전의 일부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다. 또한 다른 인간적 저서보다 더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눅 24 : 27, 44, 롬 3 : 2, 벧후 1 : 21).

4.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여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벧후 1 : 19, 21, 딤후 3 : 16, 요일 5 : 9, 살전 2 : 13).

5.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따라 성경을 고귀한 것으로 평가한다(딤후 3 : 15).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적절함, 문제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성경 전체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다.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 주는 모든 발견, 그 밖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도 없는 훌륭한 내용과 거기에 나타나는 전체적 완전성, 이와 같은 모든 줄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준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요일 2 : 20, 27, 요 16 : 13-14, 고전 2 : 10-12, 사 59 : 21).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좋고 필요한 귀결로서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 성경에 대하여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서나, 인간의 전통으로서도 더 첨가할 수 없다(딤후 3 : 15-17, 갈 1 : 8-9, 살후 2 : 2).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의 내적 비침이 말씀 안에 계시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며 교회 정치나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예배와 교회 정치는 언제든지 지켜야 할 그 말씀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서 자연의 도리와 신자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조직되어야 한다(고전 11 : 13-14, 14 : 26, 40).

7.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자명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벧후 3 : 16).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그 안에 분명히 지시되고 계시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적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시 119 : 105, 130).

8.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국어였던 히브리말로 기록된 구약성경이나 그 당시 여러 민족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헬라말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보호와 섭리로서 세세토록 순결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마 5 : 18). 그러므로 그것은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의거할 수 있을 것이다(사 8 : 20, 행 15 : 15, 요 5 : 39, 46). 그러나 성경을 읽을 권리를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탐구하도록(요 5 : 39)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원어를 다 알지 못했다. 그러므

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고전 14 : 6, 9, 11-12, 24, 27-28) [각 민족의]<sup>4)</sup> 쉬운 방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며(골 3 : 16), 그들이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롬 15 : 4).

9. 성경을 해석하는 틀림없는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느 성경 한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참되고 충족한 의미에 관하여(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무슨 의문이 있을 때는 더 분명하게 말한 다른 성구를 통해서 고찰하고 이해해야 한다(벧후 1 : 20-21, 행 15 : 15, 요 5 : 46, 미국판에는 must가 아니라 may로 되어 있음).

10. 최고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마 22 : 29, 31, 엡 2 : 20, 행 28 : 25). 이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적 논쟁은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회의의 모든 명령과 고대 학자들의 의견과 인간론과 개인의 정신 문제도 이 심판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의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

## 제2장 하나님과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1.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신 6 : 4, 고전 8 : 4, 6). 그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욥 11 : 7-9, 26 : 14), 가장 순결하신 영이시다(요 4 : 24). 볼 수 없고(딤후 1 : 17), 육체를 가지시지 않고 어떤 것의 부분이 되시거나(신 4 : 15-16, 요 4 : 22, 눅

---

4. 1647년 판에는 '각 나라의' 쉬운 방언으로 되었음.

22 : 39), 성정을 가지지도 않으신다(행 14 : 11, 15). 그는 또한 변치 않으시고(약 1 : 17, 말 3 : 6), 광대하시고(왕상 8 : 27, 렘 23 : 23-24), 영원하시고(시 90 : 2, 딤펢전 1 : 17) 측량할 수도 없다(시 145 : 3). 전능하시고(창 17 : 1, 계 4 : 8), 가장 지혜로우시고(롬 16 : 27), 가장 거룩하시고(사 6 : 3, 계 4 : 8), 가장 자유하시고(시 115 : 3), 절대하시며(출 3 : 14),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엡 1 : 11).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요일 4 : 8, 16),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부정과 위법의 죄를 용서하신다(출 31 : 6-7).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히 11 : 6).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심판은 가장 바르고 무서운 것이다(느 9 : 32-33).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시 5 : 5-6), 죄를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나 1 : 2-3, 출 34 : 7).

2. 하나님은 모든 생명(요 5 : 26)과 영광(행 7 : 2)과 선(시 119 : 68)과 축복(딤펢전 6 : 15, 롬 9 : 5)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타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족하시다. 피조물에서(행 17 : 24-25) 보충을 받아야 하거나, 무슨 영광이 피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욥 22 : 2, 23), 모든 피조물 안에서나 피조물을 통해서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또는 그 위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것은(롬 11 : 36)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그를 향해서 존재한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계 4 : 11, 딤펢전 6 : 15, 단 4 : 25, 35)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명령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노출된다(히 4 : 13).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틀림이 없고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는다(롬 11 : 33-34, 시 147 : 5).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행 15 : 18, 겔 11 : 5). 모든 계획이나 역사나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시 145 : 17, 롬 7 : 12). 천사나 사람이나 또는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나 봉사나 복종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며, 또한 그는 그것을 기뻐 요구하신다(계 5 : 12-14).

3.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이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요일 5 : 7, 마 3 : 16-17, 28 : 19, 고후 13 : 14).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요 1 : 14, 18),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요 15 : 26, 갈 4 : 6).

###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관하여<sup>5)</sup>

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엡 1 : 1, 롬 11 : 33, 히 6 : 17, 롬 9 : 15, 18).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거나(약 1 : 13, 17, 요일 1 : 5), 인간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시거나, 또는 제2의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행 2 : 23, 마 17 : 12, 행 4 : 27-28, 요 19 : 11, 잠 16 : 33).

2.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행 15 : 18, 삼상 23 : 11-12, 마 11 : 21, 23).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미래로 예견하셨거나 또는 일정한 상태로 일어

---

5. 이 신앙고백서 끝에 있는 선언문을 참조할 것. 이 선언문은 제3장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다.



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하신 것은 아니다(롬 9 : 11, 13 : 16, 18).

3.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과 천사들 중에(딤후 5 : 21, 마 25 : 41)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에 미리 경륜되었다(롬 9 : 22-23, 엡 1 : 5-6, 잠 15 : 4).

4.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이나 인간은 특별하고 변함이 없게 결정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없다(딤후 2 : 19, 요 13 : 18).

5.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써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목적과 자기의 뜻에 의한 비밀의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자기의 [온전히]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에 그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예정하셨다(엡 1 : 4, 9, 11, 롬 8 : 30, 딤후 1 : 9, 살전 5 : 9). 이렇게 예정하실 때 하나님은 자의 결정의 원인이 될 만한(롬 9 : 11, 13, 16, 엡 1 : 4, 9) 그들의 신앙이나, 선한 행실이나, 또는 그들 안에나 다른 피조물 안에 최종적 구원을 미리 보시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엡 1 : 6, 12).

6. 하나님이 선택을 입은 자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뜻의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목적을 통하여 그것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벧전 1 : 2, 엡 1 : 4-5, 2 : 10, 살후 2 : 13).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으며(살전 5 : 9-10, 딤후 2 : 14),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실제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

은 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롬 8 : 30, 엡 1 : 5, 살후 2 : 13),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벧전 1 : 5)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힘의 보호를 받는다.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요 17 : 9, 롬 8 : 28, 요 6 : 64-65, 8 : 47, 10 : 26, 요일 2 : 19) 아무도 구속을 받거나, 실제로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성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7. 하나님은 자기의 뜻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셨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노하기도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의를 칭찬하기를 기뻐하시기도 하셨다(마 11 : 25-26, 롬 9 : 17-18, 21-22, 딤후 2 : 19-20, 유 1 : 4, 벧전 2 : 8).

8. 깊은 신비에 싸인 이 예정 교리는 특별한 명철과 조심을 가지고(롬 9 : 20, 11 : 33, 신 29 : 29) 취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기 영원한 선택을 믿을 수 있게 된다(벧후 1 : 10).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공경과 동경이 일어나게 한다(엡 1 : 6, 롬 11 : 33). 그뿐만 아니라 겸손과 부지런함과 복음에 진심으로 복종하는(롬 11 : 5-6, 20, 벧후 1 : 10, 롬 8 : 33, 눅 10 : 20)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위로를 베풀어 줄 것이다.

## 제4장 창조에 관하여

1. 성부, 성자, 성령(히 1 : 2, 요 1 : 2-3, 창 1 : 2, 욥 26 : 13, 33 : 4)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신(롬 1 : 20, 렘

10 : 12, 시 104 : 24, 33 : 5 - 6)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무에서 모든 것, 즉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였다(창 1장, 히 11 : 3, 골 1 : 16, 행 17 : 24).

2.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창 1 : 27). 이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주시고(창 2 : 7, 전 12 : 7, 눅 23 : 43, 마 10 : 28), 하나님의 형상에(창 1 : 26, 골 3 : 10, 엡 4 : 21) 따라 지식과 의의 참된 거룩한 성품을 부여하셨고, 마음에(롬 2 : 14 - 15)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또한 그것을 성취할 힘을 주셨다(전 7 : 29). 그와 동시에 사람을 벌할 수밖에 없는(창 3 : 6, 전 7 : 29)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 두셨고, 범죄할 가능성 아래 버려두셨다. 그들은 마음속에 쓰여진 법 이외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창 2 : 27, 3 : 8 - 11, 23) 또한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창 1 : 26, 28, 미국판에는 시 8 : 6 - 8 이 첨가되었음).

## 제5장 섭리에 관하여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과 자비의(사 63 : 14, 엡 3 : 10, 롬 9 : 17, 창 45 : 7, 시 145 : 7)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틀림없는 예지와(행 15 : 18, 시 94 : 8 - 11) 자유롭고 변함이 없는 자신의 뜻의(엡 1 : 11, 시 33 : 10 - 11)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잠 15 : 3, 시 104 : 24, 145 : 17, 미국판에는 대하 16 : 9 첨가)로써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마 10 : 29 - 31, 미국판에는 마 6 : 26, 30) 이르기까지 모든 피

조물과 행동과 물질을(단 4 : 34 - 35, 시 135 : 6, 행 17 : 25 - 26, 28, 욥 38 - 41장)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2.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 만물은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행 2 : 23) 생성, 소멸한다. 그러나 같은 섭리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이 원인의 본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창 8 : 22, 렘 31 : 35, 출 21 : 13, 신 19 : 5, 왕상 22 : 28, 34, 사 10 : 6 - 7) 타락되도록 정하셨다.

3.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행 27 : 31, 44, 사 55 : 10 - 11, 호 2 : 21 - 22)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이(호 1 : 7, 마 4 : 4, 욥 34 : 10) 또는 그 이상의 것과(롬 4 : 19 - 21)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라도 자기의 기뻐하시는(왕하 6 : 6, 단 3 : 27)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첫 타락에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외 천사들과 사람들이(롬 11 : 32 - 34, 삼하 21 : 1, 대상 21 : 1, 왕상 22 : 22, 33, 대상 10 : 4, 13 - 14, 삼하 16 : 10, 행 2 : 23, 4 : 27 - 28) 모든 죄에도 적용되며 또한 단지 허용(행 14 : 16)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명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연결로(시 76 : 10, 왕하 19 : 28) 그것과 결합이 된다.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지배 방법 안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창 1 : 20, 사 10 : 6 - 7, 12) 그들을 정하시고 지배하신다. 그러나 거기서 초래되는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서만 산출된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므로 죄를 만드시거나(약 1 : 13 - 14, 17, 요일 2 : 16, 시 50 : 21)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다.

5.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버려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전에 범한 자기들의 죄를 징벌하고, 부패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해서 겸손해지고 (대하 32 : 25-26, 31, 삼하 24 : 1) 따라서 하나님께 전보다도 더 간절하고 굳게 의지하게 하며, 또한 그들이 그후부터는 범죄의 기회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고후 12 : 7-9, 시 73 : 1-10, 12, 막 14 : 66 이하, 요 21 : 15-17)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신다.

6.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범한 전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박케 하신다(롬 1 : 24, 26, 28, 11 : 7-8).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에(신 29 : 4)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마 13 : 12, 25 : 29)조차 빼앗으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신 2 : 30, 왕하 8 : 12-13)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 세상에 대한 시험과 사단의 권세에(시 81 : 11-12, 살후 2 : 10-12) 빠지게 하신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완악케 한다(출 7 : 3, 8 : 15, 32, 고후 2 : 15-16, 사 8 : 14, 벰전 2 : 7-8, 사 6 : 9-10, 행 28 : 26-27).

7.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하신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처리하신다(딤후 4 : 10, 암 9 : 8-9, 롬 8 : 28, 사 43 : 3-5, 13).

##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1.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창 3 : 13, 고후 11 : 3)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이 죄를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롬 11 : 32) 부합되도록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창 3 : 6-8, 전 7 : 29, 롬 3 : 23) 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에서 죽게 되었을(창 2 : 17, 엡 2 : 1, 미국판에는 롬 5 : 12 첨가)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딤후 1 : 15, 창 6 : 5, 렘 7 : 9, 롬 3 : 10-19)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

3. 우리의 처음 부모는 모든 인류의(창 1 : 27-28, 2 : 16-17, 행 17 : 26, 롬 5 : 12, 15-19, 고전 15 : 21-22, 45, 49) 시조이었으므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 있던 같은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4. 이 원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롬 5 : 7, 7 : 18, 8 : 7, 골 1 : 21, 미국판 요 3 : 6 첨가) 완전히 싫증이 나고 불가능해지고 선에 반대하게 되며 또는 모든 악을(창 6 : 5, 8 : 21, 롬 3 : 10-12)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원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약 1 : 14-15, 엡 2 : 2-3, 마 15 : 19) 나오게 된다.

5. 본성의 이 부패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요일 1 : 8, 10, 롬 7 : 14, 17-18, 23, 약 3 : 2, 잠 20 : 9, 전 7 : 20)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으나 그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은 틀림없이 죄다(롬 7 : 5, 7-8, 25, 갈 5 : 17).

6. 원죄와 실죄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요일 3 : 4)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롬 2 : 15, 3 : 9, 19) 죄 값을 가져온다. 그 죄 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엡 2 : 3) 그 율법의(갈 3 : 10) 저주에 매여 있다. 그 결과 그 죄인은 죽음이나(롬 6 : 23) 모든 정신적(엡 4 : 18), 시간적(롬 8 : 20, 애 3 : 39), 영원한(마 25 : 41 이하, 살후 1 : 9)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다.

##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던 간격이 너무나 컸으므로 이성을 가진 피조물조차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이나 보상으로서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양으로써만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사 40 : 13-17, 욥 9 : 32-33, 삼상 2 : 25, 시 100 : 2-3, 113 : 5-6, 욥 22 : 2-3, 35 : 7-8, 눅 17 : 10, 행 17 : 24-25).

2. 인간과 처음에 맺은 계약은 행위의 계약이었다(갈 3 : 12, 미국판 호 6 : 7, 창 2 : 16-17 첨가). 거기에서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롬 5 : 12-20, 10 : 5)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창 2 : 17, 갈 3 : 10)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

3.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계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둘째 계약을(갈 3 : 21, 롬 3 : 20-21, 8 : 3, 창 3 : 15, 사 42 : 6)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을 보통 은총의 계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예수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단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막 16 : 15-16, 요 3 : 16, 롬 10 : 6, 9, 갈 3 : 11)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생명을 얻도록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믿을 것을(겔 36 : 26-27, 요 6 : 44-45, 미국판 5 : 37 첨가) 요구하고 또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4. 이 은총의 계약은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받을 영원한 상속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기록되어 있다. 만물은 그에게 소속될 뿐만 아니라 증여되어 있다(히 9 : 15-17, 7 : 22, 눅 22 : 20, 고전 11 : 25).

5. 이 계약이 실시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시대와 복음시대가 동일치 않다(고후 3 : 6-9). 율법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의식에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와 같은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히 8-10장, 롬 4 : 11, 골 2 : 11-12, 고전 5 : 7, 미국판 골 2 : 17 첨가). 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약속된 메시아(고전 10 : 1-4, 히 11 : 13, 요 8 : 56)에 대한 신앙을 얻고 군세게 하기 위하여 이것으로도 충분하고도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불렀다(갈 3 : 7-9, 14).



6. 복음시대에 있어서 그 복음의 본체이신(갈 2 : 17, 미국판 골 2 : 17)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자 이 계약을 시행하는 의식은 말씀의 선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으로(마 28 : 19-20, 고전 11 : 23-25, 미국판 고후 3 : 7-11) 대치되었다. 이 의식은 수적으로는 적고 그 형식이 훨씬 더 간단하고 외부적으로 화려함은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마 28 : 19, 엡 2 : 15-19) 그리스도를 더 충분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며 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히 12 : 22-28, 렘 31 : 33-34). 이것을 신약이라(눅 22 : 20, 미국판 히 8 : 7-9)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체가 같지 않은 두 종류의 은총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계약, 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집행이 되기는 하나 같은 계약이 있을 뿐이다(갈 3 : 14, 16, 행 15 : 11, 롬 3 : 21-23, 30, 시 32 : 1, 롬 4 : 3, 6, 16-17, 23-24, 히 13 : 8).

##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사 42 : 1, 벰전 1 : 19-20, 요 3 : 16, 딤후 2 : 5)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예언자와(행 3 : 22, 미국판 신 18 : 15) 제사장과(히 5 : 5-6) 왕이(시 2 : 6, 눅 1 : 33)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는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며(엡 5 : 23) 만물의 후사와(히 1 : 2) 세상의 심판자(행 17 : 31)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사 그의 씨가(요 17 : 6, 시 2 : 30, 사 53 : 10)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딤후 2 : 6, 사 55 : 4-5, 고전 1 : 30).

2. 삼위 중의 둘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하나님인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그는 때가 이르매 사람의 본체를 (요 1:1-14, 요일 5:20, 빌 2:6, 갈 4:4) 입으셨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 요소와 거기서 나오는 일반적 결점을 가졌으나 죄만은 가지지 않으셨다(히 2:14, 16-17, 4:15). 그는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여인의 몸에서(눅 1:27, 31, 35, 갈 4:4) 탄생하셨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독특한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꿀을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경되거나 혼성이 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눅 1:35, 골 2:9, 롬 9:5, 벰전 3:18, 딤편 3:16). 이분은 참하나님인 동시에 참사람이며, 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증보자가 되신다(롬 1:3-4, 딤편 2:5).

3. 주 예수는 그의 사람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시 45:7, 요 3:34) 성화되고, 기쁨부음을 받으셨다.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골 2:3) 모든 보화가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충만이(골 1:19)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 또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더럽힘을 당치 않으시고, 은사와 진리에(히 7:26, 요 1:14) 차고 넘쳐서 증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기뻐하셨다(행 10:38, 히 12:24, 7:22). 이 직책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히 5:4-5) 이 직책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는 모든 권능과 판단을 예수의 손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요 5:22, 27, 마 28:18, 행 2:36).

4. 주 예수는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시 40:7-8, 히 10:5-10, 요 10:18, 빌 2:8). 그는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히려 율법 아래(갈 4:4) 나셨으나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마 3:15,

5 : 17). 그는 또한 가장 무거운 영적 고통과(마 26 : 37-38, 눅 22 : 44, 마 27 : 46) 가장 괴로운 육적 상처를 입으시고(마 26-27장)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빌 2 : 8). 그는 매장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썩지 않았다(행 2 : 23-24, 27, 13 : 37, 롬 6 : 9). 사흘 만에 죽을 때와 같은 몸(요 20 : 25, 27)을 가지시고 죽은 자(고전 15 : 3-4)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막 16 : 19)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재하고(롬 8 : 34, 히 9 : 24, 7 : 25)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에(롬 14 : 9-10, 행 1 : 11, 10 : 42, 마 13 : 40-42, 유 1 : 6, 벨후 2 : 4)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5. 주 예수는 완전한 복종과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의 아버지의(롬 5 : 19, 히 9 : 14, 16, 10 : 14, 엡 5 : 2, 롬 3 : 25-26) 의를 충분히 만족케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단 9 : 24, 26, 골 1 : 19-20, 엡 1 : 11, 14, 요 17 : 2, 히 9 : 12, 15)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연을 영원한 상속권을 획득하셨다.

6.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사업을 성육하시기까지는 실지로 성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속의 힘과 효력과 덕분은 세상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약속과 모형과 재물 안에서 또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항상(갈 3 : 4-5, 창 3 : 15, 계 13 : 8, 히 13 : 8)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씨로서 또한 세상 처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서 계시되고 알려졌다.

7.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에 따라서 중보사업을 하셨다. 각각 그 본성에(히 9 : 14, 벨전 3 : 18) 고유한 것만 하셨다. 그러나 두 인격이

한 인격 안에 통일되어 있었으므로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라도 성경에 의하면 때로는 다른 본성에(행 20 : 28, 요 3 : 13, 요일 3 : 16)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그리스도가 구속을 주시기로 계획한 그 사람들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틀림없이 적용하고 전달하셨다(요 6 : 37, 39, 10 : 15-16).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시고(요일 2 : 1-2, 롬 8 : 34) 구원의 비의를 말씀 안에서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믿고 복종하도록 그들을 설복시키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써(요 14 : 16, 히 12 : 2, 고후 4 : 13, 롬 8 : 9, 14, 15 : 18-19, 요 17 : 17)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지배(시 110 : 1, 고전 15 : 25-26, 말 4 : 2-3, 골 2 : 15)에 가장 합치되는 방법으로 그의 전능과 지혜로써 그들의 적을 물리친다.

##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1. 하나님은 본성적 자유와 함께 인간의 의지를 부여하셨다. 즉, 누구에게 강요를 당하거나 또는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sup>6)</sup>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마 17 : 12, 약 1 : 14, 신 30 : 19, 미국판 요 5 : 40).

2. 무죄한 상태에 있던 사람은 선과 하나님을 잘 기쁘게(전 7 : 29, 창 1 : 26) 하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타락(창 2 : 16-17, 3 : 6)해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

6. [ ] 안의 것은 1967년 판에는 없으나 1647년 판에는 있는 것을 의미함.

3. 사람은 죄의 상태에 타락함으로써 구원에(롬 5 : 6, 8 : 7, 요 15 : 5) 따르는 어떤 영적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롬 3 : 10, 12) 죄 안에 죽어 있어서(엡 2 : 1, 5, 골 2 : 13) 자기의 힘으로서는 회개하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요 6 : 44, 65, 고전 2 : 14, 딤후 3 : 3-5, 엡 2 : 2-5).

4.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케 하고 은총의 상태에 옮기실 때 그 죄인을 죄 아래(골 1 : 13, 요 8 : 34, 36)에 있던 자연의 멍에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적 선(빌 2 : 13, 롬 6 : 18, 22)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일부가 남아 있어서 선한 것을 완전히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원치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원한다(갈 5 : 17, 롬 7 : 15, 18-19, 21, 23).

5.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만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변함없이 선만을 원하는 자유를 가진다(엡 4 : 13, 히 12 : 23, 요일 3 : 2, 유 1 : 24).

## 제10장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1.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살후 2 : 13-14, 고후 3 : 3, 6)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실제로 불리서(롬 8 : 30, 11 : 7, 엡 1 : 10-11) 예수 그리스도로(롬 8 : 2, 엡 2 : 1-5, 딤후 1 : 9-10) 말미암아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행 26 : 18, 고전 2 : 10, 12, 엡 1 : 17-18). 돌과 같

이 굳은 마음을 없게 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겔 36 : 27, 엡 1 : 19, 요 6 : 44-45). 선을 원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능으로써 그들의 뜻을 새롭게 하고(겔 11 : 19, 빌 2 : 13, 신 30 : 6, 겔 36 : 27)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엡 1 : 19, 요 6 : 44-45). 이때에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며 은총으로써(사 1 : 4, 시 110 : 3, 요 6 : 37, 롬 6 : 16-18) 그것을 원하도록 변화를 받는다.

2. 이와 같은 실제적 부르심은 사람 안에서 일어날 예견된 무엇에서 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다(딤후 1 : 9, 딤후 3 : 4-5, 엡 2 : 4-5, 8-9, 롬 9 : 11).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되기까지는(고전 2 : 14, 롬 8 : 7, 엡 2 : 5) 피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요 6 : 37, 겔 36 : 27, 요 5 : 25)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3. <sup>7)</sup> 택함을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눅 18 : 15-16, 행 2 : 38-39, 요 3 : 3, 5, 요일 5 : 12, 롬 8 : 9을 비교할 것)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성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3 : 8)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든 역사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의 전도(요일 5 : 12, 행 4 : 12)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4.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마 22 : 14)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마 7 : 22, 13 : 20-21, 히

---

7. 이 신앙고백서의 끝에 있는 선언서를 참조할 것, 이 선언서는 제10장 3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다.

6 : 4-5)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미국판은 “to”로 되어 있음.) 바로 오지 못한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요 6 : 64-66, 8 : 24). 하물며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는)<sup>8)</sup>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가령 그들이 종교의 본질과 법의 견지에 따라서 그들의 생을 꾸며 맞추는데 매우 열심이 있고(행 4 : 12, 요 14 : 6, 엡 2 : 12, 요 4 : 22, 17 : 13)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명적이요 미움받을 행동이다(요이 9-11, 고전 16 : 22, 갈 1 : 6-8).

## 제11장 의인(義認)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실제로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리낌 없이 의롭게 하셨다(롬 8 : 30, 3 : 24).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보아서 의롭게 하셨다. 또는 신앙 자체나 믿는 행동이나 그 밖에 무슨 신앙적인 복종을 의로운 것으로 그들에게(롬 4 : 5-8, 고후 5 : 19, 21, 롬 3 : 22, 24-25, 27-28, 딤후 3 : 5, 7, 엡 1 : 7, 롬 23 : 6, 고전 1 : 30-31, 롬 5 : 17-19) 돌림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십을 얻고 그의 의를 얻게 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행 10 : 44, 갈 2 : 16, 빌 3 : 9, 행 13 : 36, 38, 엡 2 : 7-8).

2.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게 되는

---

8. ( ) 안의 것은 1947년 판에는 없으나 1967년 판에는 첨가된 것을 말함.

유일의 도구이다(요 1 : 12, 롬 3 : 28, 5 : 1). 이 믿음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와 함께 있다. 이 믿음은 또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약 2 : 17, 22, 26, 갈 5 : 6).

3.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빛을 전부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롬 5 : 8-10, 19, 딤후 2 : 5-6, 히 10 : 10, 14, 단 9 : 24, 26, 사 53 : 4-6, 10-12) 아버지의 의를 정식으로 실제로 또한 충분히 만족케 하셨다. 그러나 피들을 위해서(롬 8 : 32)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 대신에(고후 5 : 21, 마 3 : 17, 엡 5 : 2)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이 그들의 복종과 만족을 대신해서 용납되었다. 이것은 그들 안에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용납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인(義認)은 온전히 자유로우신 은총에서(롬 3 : 24, 엡 1 : 7) 온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엄밀한 의와 풍성한 은총은 죄인을 의롭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롬 3 : 26, 엡 2 : 7).

4.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갈 3 : 8, 벰전 1 : 2, 19-20, 롬 8 : 30) 의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인을 위하여(갈 4 : 4, 딤후 2 : 6, 롬 4 : 25) 부활하셨다. 그러나 성령이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들에게(골 1 : 21-22, 갈 2 : 16, 딤후 3 : 4-7) 적용하기 전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

5. 하나님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마 6 : 12, 요일 1 : 7, 9, 2 : 1-2). 그들은 의인의 자리에서(눅 22 : 32, 요 10 : 28, 히 10 : 24) 절대로 떨어질 수는 없으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



아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노(怒)를 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시 89 : 31-33, 51 : 7-12, 32 : 5, 마 26 : 75, 고전 11 : 30, 32, 눅 1 : 20) 그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수가 없다.

6.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의인(義認)은 이와 같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의인과 하나이며 동일하다(갈 3 : 9, 13-14, 롬 4 : 22-24, 히 13 : 8).

## 제12장 양자(養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엡 1 : 15, 갈 4 : 4-5).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즐기게 되었다(롬 8 : 17, 요 1 : 12).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자신에게 기록하며(렘 14 : 9, 고후 6 : 18, 계 3 : 12), 양자의 성령을 받고(롬 8 : 15),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며(엡 3 : 12, 롬 5 : 2),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갈 4 : 6), 불쌍히 여김과(시 103 : 13) 보호를 받으며(잠 14 : 26),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베풀어 주시고(마 6 : 30, 32, 벰전 5 : 7), 자기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애 3 : 31) 오히려 구속의 날에 인 치심을 받았으며(엡 4 : 30), 한 구원의 계승자로서(벰전 1 : 3-4) 약속을 받는다(히 6 : 12).

##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1.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므로 중생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고전 6 : 31, 행 20 : 32, 빌 3 : 10, 롬 6 : 5-6) 그들 안에 있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17 : 17, 엡 5 : 26, 살후 2 : 13) 실제로 또한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롬 6 : 6, 14),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갈 5 : 24, 롬 8 : 13)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골 1 : 11, 엡 3 : 16-19)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후 7 : 1, 히 12 : 14).

2. 이 성화는 온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살전 5 : 23). 그러나 이생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 육체의 모든 부분에는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요일 1 : 10, 롬 7 : 18, 23, 빌 3 : 12).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육신은 영에 반대하고, 영은 육신에 반대한다(갈 5 : 17, 벧전 2 : 11).

3.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 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하나(롬 7 : 23),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으므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롬 6 : 14, 요일 5 : 4, 엡 4 : 15-16).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벧후 3 : 18, 고후 3 : 18)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고후 7 : 1).

## 제14장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1. 믿음의 은사는 그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고후 4 : 13, 엡 1 : 17-19, 2 : 8), 그것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게 된다(히 10 : 39). 그것은 보통 말씀을 전파함으로써(롬 10 : 14, 17) 역사한다. 또한 성례전을 집행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증가되고 강화된다(벧전 2 : 2, 행 20 : 32, 롬 4 : 11, 눅 17 : 5, 롬 1 : 16-17).

2. 이 믿음으로 신자는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요 4 : 42, 살전 2 : 13, 요일 5 : 10, 행 22 : 14). 그리고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역사한다. 때로는 계명에 복종하고(롬 16 : 26) 때로는 경고에 대하여 두려워한다(사 66 : 2). 그래서 이생이나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히 11 : 13, 딤펢전 4 : 8).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요 역할은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의 약속의 힘으로(요 1 : 12, 행 16 : 31, 갈 2 : 20, 행 15 : 11) 의인과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안에 쉬게 하는 것이다.

3. 이 신앙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히 5 : 13-14, 롬 4 : 19-20, 마 6 : 30, 8 : 10).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논란을 당하여 약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눅 22 : 31-32, 엡 6 : 16, 요일 5 : 4-5).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을 얻는 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성한다(히 6 : 11-12, 10 : 22, 골 2 : 2).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시요 완성자시다(히 12 : 2).

##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1.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기쁨을 가져오는 은혜이다(속 12 : 10, 행 11 : 18).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교리에 관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눅 21 : 27, 막 1 : 15, 행 20 : 21).

2.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뿐 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겔 18 : 30-31, 36 : 31, 사 30 : 22, 시 51 : 4, 렘 31 : 18-19, 율 2 : 12-13, 암 5 : 15, 시 119 : 128, 고후 7 : 11).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시 119 : 6, 59, 106, 눅 1 : 6, 왕하 23 : 25).

3.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겔 36 : 31-32, 16 : 61-63).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이다(호 14 : 2, 4, 롬 3 : 24, 엡 1 : 7).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눅 13 : 3, 5, 행 17 : 30-31).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 데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롬 6 : 23, 5 : 12, 마 12 : 36)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

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사 55 : 7, 롬 8 : 1, 사 1 : 16 - 18).

5.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시 19 : 13, 눅 19 : 8, 딤펢전 1 : 13 - 15).

6.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시 51 : 4 - 5, 7, 9, 14, 32 : 5 - 6).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잠 28 : 13, 요일 1 : 9).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사과함으로써 중상을 당한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약 5 : 16, 눅 17 : 3 - 4, 수 7 : 19, 시 51 : 2). 중상을 당한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케 되고 그를 사랑으로써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후 2 : 8, 미국판 갈 6 : 1 - 2).

##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1.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뿐이다(미 6 : 8, 롬 12 : 2, 히 13 : 21).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성으로 고안해 낸 것이거나 또는 선한 의욕에서 나온 무슨 가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마 15 : 9, 사 29 : 13, 벰전 1 : 18, 롬 10 : 2, 요 16 : 2, 삼상 15 : 21 - 23).

2.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이다(약 2 : 18, 22).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며(시 116 : 12-13, 벰전 2 : 9), 확신을 견고케 하며(요일 2 : 3, 5, 벰후 1 : 5-10), 형제에게 감사하고(고후 9 : 2, 마 5 : 19),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고(딤후 2 : 5, 9-12, 딤후 6 : 1),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벰전 2 : 15),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벰전 2 : 12, 빌 1 : 11, 요 15 : 8).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므로(엡 2 : 10)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므로 결국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롬 6 : 22).

3.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요 15 : 4-6, 겔 36 : 26-27). 또한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 다 같은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게 된다(빌 2 : 13, 4 : 13, 고후 3 : 5).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의무를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같이 생각해서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기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빌 2 : 12, 히 6 : 11-12, 벰후 1 : 3, 5, 10-11, 사 64 : 7, 딤후 1 : 6, 행 26 : 6-7, 유 1 : 20-21).

4. 복종을 통해서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도 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여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도저히 다할 수는 없다(눅 17 : 10, 느 13 : 22, 욥 9 : 2-3, 갈 5 : 17).

5.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들과 장차 받을 영광 사이에 큰 불균

형이 있고,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다 해서 그것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얻는다든가 전에 범한 죄의 빛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롬 3 : 20, 4 : 2, 6, 엡 2 : 8-9, 딤후 3 : 5-7, 롬 8 : 18, 시 16 : 2, 욥 22 : 2-3, 35 : 7-8).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중에 지나지 않는다(눅 17 : 10).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갈 5 : 22-23). 그러한 행동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에 심히 더럽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견딜 수 없다(사 64 : 6, 갈 5 : 17, 롬 7 : 15, 18, 시 143 : 2, 130 : 3).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엡 1 : 6, 벰전 2 : 5, 출 28 : 38, 창 4 : 4, 히 11 : 4).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욥 9 : 20, 시 143 : 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거기에 성실함이 있으므로 그것을 용납하고 상 주기를 기뻐하셨다(히 13 : 20-21, 고후 8 : 12, 히 6 : 10, 마 25 : 21, 23).

7. <sup>9)</sup>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

---

9.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7.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일이며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왕하 10 : 30-31, 왕상 21 : 27, 29, 빌 1 : 15-16, 18) 그들이 믿음으로써 청결케 된 마음에서나(창 4 : 3-5, 히 11 : 4, 6)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르게 행했거나(고전 13 : 3, 사 1 : 1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마 6 : 2, 5, 16) 옳은 목적을 위하여

령하시는 일이며 그 자체 안에 칭찬을 받을 만하고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일을 무시하는 것이 죄적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써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옳은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지는 못한다.

## 제17장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빌 1 : 6, 벰후 1 : 10, 요 10 : 28-29, 요일 3 : 9, 벰전 1 : 5, 9, 미국판 요 17 : 9).

2.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딤후 2 : 18-19, 롬 31 : 3).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다(히 10 : 10, 14, 13 : 20-21, 9 : 12-15, 롬 8 : 33-39, 요 17 : 11, 24, 눅 22 : 32, 히 7 :

---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물든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학 2 : 14, 딤후 1 : 15, 암 5 : 21-22, 호 1 : 4, 롬 9 : 16, 딤후 3 : 5). 그러나 선행을 무시하는 것은 한층 더 죄를 범하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다(시 14 : 4, 36 : 3, 욥 21 : 14-15, 마 23 : 23, 25 : 41-45).



25). 성령의 내재와 그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요 14 : 16-17, 요일 2 : 27, 3 : 9),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나타난다(요 10 : 28, 살후 3 : 3, 요일 2 : 19, 미국관 살전 5 : 23-24).

3.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하므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마 26 : 70, 72, 74).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시 51 : 14, 미국관 삼하 12 : 9, 13).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를 사고(사 64 : 5, 7, 9, 삼하 11 : 27),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케 한다(엡 4 : 30).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의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되며(시 51 : 8, 10, 12, 계 2 : 4, 아 5 : 2-4, 6),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사 36 : 17, 막 6 : 52, 16 : 14, 미국관 시 95 : 8), 양심은 상처를 입고(시 32 : 3-4, 51 : 8), 남을 해치고 중상하여(삼하 12 : 14)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시 89 : 31-32, 고전 11 : 32).

##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관하여

1.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욥 8 : 13-14, 미 3 : 11, 신 29 : 9, 요 8 : 41) 거짓 소망과 욕적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들이 가지는 이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마 7 : 22-23, 미국관 욥 8 : 1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요일 2 : 3, 3 : 14, 18-19, 21, 24, 5 : 13)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은 그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롬 5 : 2, 5).

2. 이 확실성은 허망한 소망에 근거한(히 6 : 11, 19) 단순한 억측이거나 그럴듯한 신념은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히 6 : 17-18) 신적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틀림없는 확신이다.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요(벧후 1 : 4-5, 10-11, 요일 2 : 3, 3 : 14, 고후 1 : 1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영에게 증거해 주는 양자의 영의 증거이다(롬 8 : 15-16).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증거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엡 1 : 13-14, 4 : 30, 고후 1 : 21-22).

3.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한 그가 믿음의 진수의 참여자가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는 하나(요일 5 : 13, 사 1 : 10, 막 9 : 24, 시 77 : 1-12, 88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그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무슨 특별한 계시 없이도 정상적인 방법을 옳게 사용하므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전 2 : 12, 요일 4 : 13, 히 6 : 11-12, 엡 3 : 17, 19).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벧후 1 : 10).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평화에 넘치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 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것이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결과이다(롬 5 : 1-2, 5, 14 : 17, 15 : 13, 엡 1 : 3-4, 시 4 : 6-7, 시 119 : 32). 적어도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게 한다(요일 2 : 1-2, 롬 6 : 1-2, 딤후 2 : 11-12, 14, 고후 7 : 1, 롬 8 : 1, 12, 요 3 : 2-3, 시 130 : 4, 요일 1 : 6-7).

4. 참신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한다. 양심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특별한 죄를 범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돌이킴으로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전연 빛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므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아 5 : 2-3, 6, 시 51 : 8, 12, 14, 엡 4 : 30-31, 시 77 : 1-10, 마 26 : 69-72, 시 31 : 22, 88 : 1-18, 사 1 : 10).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다.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 이와 같은 것이 결핍한 때가 없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에 따라 소생한다(요일 3 : 9, 눅 22 : 32, 욥 13 : 15, 시 73 : 15, 51 : 8, 12, 사 1 : 10). 또한 그들은 심한 실망 속에서도 그 보증의 도움을 받는다(미 7 : 7-9, 렘 52 : 40, 시 54 : 7-10, 시 22 : 1, 88 : 1-18).

##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시었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창 1 : 26-27, 2 : 17, 롬 2 : 14-15, 10 : 5, 5 : 12, 19, 갈 3 : 10, 12, 전 7 : 29, 욥 28 : 28).

2.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

속하게 되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약 1 : 25, 2 : 5, 10-12, 롬 13 : 8-9, 신 5 : 32, 10 : 4, 출 34 : 1, 미국판 롬 3 : 19 첨가).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마 22 : 37-40, 미국판 출 20 : 3-18).

3. 이 율법은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이외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와 그 후에는 교회의 의식에 관한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의식에 관한 것이 있다. 그중 하나는 예배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 행동, 고난, 그리고 공로를 예표로 해서 보여 준다(히 9 : 1, 갈 4 : 1-3, 골 2 : 17). 또한 어떤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전 5 : 7, 고후 6 : 17, 유 1 : 23).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성경시대에 있어서는 폐기되었다(골 2 : 14, 16-17, 단 9 : 27, 엡 2 : 15-16).

4. 하나님은 한 국가로서와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해 주셨다. 그것은 그 민족과 더불어 없어졌으며 현재는 그 법률에 있는 일반적인 정당성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출 21장, 22 : 1-29, 창 49 : 10, 벧전 2 : 13-14, 마 5 : 17, 38-39, 고전 9 : 8-10).

5.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것에 대하여 영원토록 복종케 한다(롬 13 : 8-10, 엡 6 : 2, 요일 2 : 3-4, 7-8, 미국판 롬 3 : 31, 6 : 15). 또한 단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케 한다(약 2 : 10-11).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서 안에서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마 5 : 17-19, 약 2 : 8, 롬 3 : 31).

6. 참신자는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서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롬 6 : 14, 갈 2 : 16, 3 : 13, 4 : 4-5, 행 13 : 39, 롬 8 : 1). 그러나 율법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생활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알게 해 준다. 또는 그들을 지도하고 그것에 따라 걷도록 한다(롬 7 : 12, 22, 25, 시 119 : 4-6, 고전 7 : 19, 갈 5 : 14, 16, 18-23). 그들의 본질과 마음과 생활에 있는 사악한 타락성을 발견케 한다(롬 7 : 7, 3 : 20).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반성해서 그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약 1 : 23-25, 롬 7 : 9, 14, 24).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동시에, 그의 완전한 복종에 관하여도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갈 3 : 24, 롬 7 : 21, 25, 8 : 3-4). 그것은 또한 중생한 자들이 율법이 죄를 금하고 있는 데 따라서 그들의 부패성을 막는 데 사용된다(약 2 : 11, 시 119 : 101, 104, 128). 그리고 율법의 경고는 가령 그들이 율법이 발하는 경고에서는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무엇에 해당하며 이생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실을 한다(스 9 : 13-14, 시 89 : 30-34).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은 그들에게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한 그것을 완수한 데 대하여 그들이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레 26 : 1, 10, 14, 고후 6 : 16, 엡 6 : 2-3, 시 37 : 11, 마 5 : 5, 시 19 : 11).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이 지켰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갈 2 : 16, 눅 17 : 10). 마찬가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은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롬 6 : 12, 14, 벰전 3 : 8-12, 시 34 : 12-16, 히 12 : 28-29).

7. 상기한 바와 같은 율법의 사용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르는 것이다(갈 3 : 21, 미국판 딤 2 : 11-14 첨가).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서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신다(겔 39 : 27, 히 8 : 10, 렘 31 : 33).

##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가 복음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딤 2 : 14, 살전 1 : 10, 갈 3 : 13).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갈 1 : 4, 골 1 : 13, 행 26 : 18, 롬 6 : 14),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롬 8 : 28, 시 119 : 71, 고전 15 : 54-57, 롬 8 : 1).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롬 5 : 1-2)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롬 8 : 14-15, 요일 4 : 18)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 3 : 9, 14).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 : 1-3, 6-7, 5 : 1, 행 15 : 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 : 14, 16, 10 : 19-22) 대개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요 7 : 38-39, 고후 3 : 13, 17-18)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 하나님의 영광 [더]<sup>10)</sup> 충분한 고통을 가지는 데 이 자유가 있다.

---

10. [ ] 안에 있는 것은 1647년도 판에 있는 것임.

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 : 12, 롬 14 : 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신앙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셨다(행 4 : 19, 5 : 29, 고전 7 : 23, 마 23 : 8-10, 고후 1 : 24, 마 15 : 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 : 20-23, 갈 1 : 10, 5 : 1, 2 : 4-5, 시 5 : 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 : 17, 14 : 23, 사 8 : 20, 행 17 : 11, 요 4 : 22, 호 5 : 11, 계 13 : 12, 16-17, 렘 8 : 9).

3.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것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갈 5 : 13, 벧전 2 : 16, 벧후 2 : 19, 요 8 : 3-4, 눅 1 : 74-75).

4.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힘과(미국판에는 ‘힘’이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음)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 하기 때문에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법적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다(마 12 : 25, 벧전 2 : 13-14, 16, 롬 13 : 1-8, 히 13 : 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

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가 책망하여(롬 1 : 32, 고전 5 : 1, 5, 11, 13, 요이 1 : 10-11, 살후 3 : 14, 딤편 6 : 3-5, 딤편 1 : 10-11, 마 18 : 15-17, 딤편 1 : 19-20, 계 2 : 2, 14 : 15, 20, 3 : 9) 처분한 것이며[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sup>11)</sup>(신 13 : 6-12, 롬 13 : 3-4, 요 5 : 10-11, 스 7 : 23-28, 계 17 : 12, 16-17, 느 13 : 15, 17, 21-22, 25, 30, 왕하 23 : 5-6, 9, 20-21, 대하 34 : 33, 15 : 12-13, 16, 단 3 : 29, 딤편 2 : 2, 사 49 : 23, 스편 13 : 2-3).

##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롬 1 : 20, 행 17 : 22, 시 119 : 68, 렘 10 : 7, 시 31 : 28, 18 : 3, 롬 10 : 12, 시 62 : 8, 수 24 : 14, 막 12 : 33). 그러나 참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 주셨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는 어떤 가견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신 12 : 32, 마 15 : 9, 행 17 : 25, 마 4 : 9-10, 신 4 : 15-20, 출 20 : 4-6, 골 2 : 33)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단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기의 뜻에만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

11. [ ] 안에 있는 것은 1647년도 판에 있는 것임.



2.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  
계만 드려야 한다(마 4 : 10, 요 5 : 23, 고후 13 : 14, 미국판에는 계  
5 : 11-13 첨가). 천사에게나 그밖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  
려서는 안 된다(골 2 : 18, 계 19 : 10, 롬 1 : 25). 인간의 타락 이후에  
는 중보자 없이 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  
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요 14 : 6, 딤후 2 : 5, 엡 2 :  
18, 골 3 : 17).

3.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이다(빌 4 : 6).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시 65 : 2).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각자가 이해력과 존경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시 47 : 7, 전 5 : 1-2, 히 12 : 28, 창 18 :  
27, 약 5 : 16, 1 : 6-7, 막 11 : 24, 마 6 : 12, 14-15, 골 4 : 2, 엡  
6 : 18)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일 5 : 14) 성령의 도움을 얻어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요 14 : 13-14, 벰전 2 : 5). 만약 음성을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고전 14 : 14).

4. 기도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5 : 14). 그  
리고 현재 살아 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므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삼하 12 : 21-23, 눅 16 :  
25-26, 계 14 : 13).<sup>12)</sup>

5.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행 15 :  
21, 계 1 : 3).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딤후 4 : 2) 신자는 그 말씀을 정

---

12. 1647년 판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었음.

(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 확실한 사람을 위해서는 할 것이 아니다.  
요일 5 : 16).

성껏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약 1 : 22, 행 10 : 33, 마 13 : 19, 히 4 : 2, 사 66 : 2).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골 3 : 16, 엡 5 : 19, 약 5 : 13)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값있게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마 28 : 19, 고전 11 : 23-29, 행 2 : 42). 이 외에 종교적 맹세와(신 6 : 13, 느 10 : 29) [그리고]<sup>13)</sup> 서원과(사 19 : 21, 전 5 : 4-5, 미국판 행 18 : 18 첨가) 엄숙한 금식과(율 2 : 12, 예 4 : 16, 마 9 : 15, 고전 7 : 5) 특별한 절기에 따라(시 107 : 1-43, 예 9 : 22) 드리는 감사예배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절기에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히 12 : 28).

6. 기도나 그 밖에 예배의 무슨 부분이 복음의 시대에 있는 현재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은 아니다(요 4 : 21). 하나님은 어디서든지(말 1 : 11, 딤후 2 : 8) 영광 진리[안에서](요 4 : 23-24)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렘 10 : 25, 신 6 : 6-7, 욥 1 : 5, 삼하 6 : 18-20, 벧전 3 : 7, 행 10 : 2) 매일(마 6 : 11, 미국판에서는 수 24 : 15가 첨가) 드리든지, 혼자서(마 6 : 6, 엡 6 : 18) 은밀한 곳에서 드리든지, 또는 공동적으로는 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실 때에는(사 56 : 7, 히 10 : 25, 잠 1 : 20-21, 24, 8 : 32, 행 13 : 42, 눅 4 : 16, 행 2 : 42) 경솔하게 움직이거나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

7.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

---

13. [ ] 안의 것은 1647년도 판엔 없었음.

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 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레(七日) 중 특히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했다(출 20 : 8, 11, 사 56 : 2, 4, 6-7, 미국판에는 사 56 : 6이 있음). 이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 날로(창 2 : 2-3, 고전 16 : 1-2, 행 20 : 7) 변경되었다. 성경에서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계 1 : 10).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교도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출 20 : 8, 10, 마 5 : 17-18).

8. 이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날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며, 이 세상의 고용주나 오락에서도 떠나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출 20 : 8, 16 : 23, 25-26, 29-30, 31 : 15-17, 사 58 : 13, 느 13 : 15-22)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에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사 58 : 13, 마 12 : 1-13).

##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신 10 : 20). 예배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출 20 : 7, 레 19 : 12, 고후 1 : 23, 대하 6 : 22-23)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2.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송하는 마음으로(신 6 : 13)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써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중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출 20 : 7, 렘 5 : 7, 마 5 : 34, 37, 약 5 : 12).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구약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히 16장, 고후 1 : 23, 사 65 : 16).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자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왕상 8 : 31, 느 13 : 25, 스 10 : 25).

3.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확인해서는 안 된다(출 20 : 7, 렘 4 : 2).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선하고 옳은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옳다고 믿는 것이나 자기가 실제로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맹세하여도 안 된다(창 24 : 2-3, 5-6, 8-9).<sup>14)</sup>

4. 맹세를 할 때는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로 하지 말고 쉽고 평범한 말로 하여야 한다(렘 4 : 2, 시 24 : 4). 비록 한 개인에게는 해가 될지 모르나 죄악이 아닌 사실을 맹세한다면 이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다(삼상 25 : 22, 32-34, 시 15 : 4). 또한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행할지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겔 17 : 16, 18-19, 수 9 : 18-19, 삼하 21 : 1).

---

14. 1647년 판엔 다음의 것이 계속된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위자가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 그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다(민 5 : 19, 느 5 : 12, 출 22 : 7-11).

5. 서원도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주의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사 19 : 21, 전 5 : 4-6, 시 61 : 8, 66 : 13-14).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시 76 : 11, 렘 44 : 25-26). 그것이 용납되려면 자발적이며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나 또는 원하는 것이 허락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해야 한다.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무와 그 밖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서원의 뜻에 합치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더욱 열심히 충실해야 한다(신 23 : 21, 23, 시 50 : 14, 창 28 : 20-22, 삼상 1 : 11, 시 66 : 13-14, 132 : 2-5).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은 명령을 실천하는 데 방해되거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이나 힘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행 23 : 12, 14, 막 6 : 26, 민 30 : 5, 8, 12-13). 이 점에 비추어 볼 때[법왕칭의]<sup>15)</sup> 수도원 안에서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나 공언한 궁핍생활과 규칙적인 복종을 서원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고상한 의미에서 너무나 먼 것이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는 도저히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신적이고 사악한 함정이다(마 19 : 11-12, 고전 7 : 2, 9, 엡 4 : 28, 벰전 4 : 2, 고전 7 : 23).

---

15. [ ] 안의 것은 1647년 판에 있는 것임.

## 제23장 관공직에 관하여

1. 최고주가 되시고 전 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선을 위하여 관공직 제도를 두셔서 자기의 관할하에 두셨다. 이것은 대중을 다스린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힘을 주어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반면,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셨다(롬 13 : 1-4, 뱀전 2 : 13-14).

2. 신자가 이 관공직에 임명될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잠 8 : 15-16, 롬 13 : 1-2, 4).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특별히 그 나라의 좋은 법에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 2 : 10-12, 딤펢전 2 : 2, 시 82 : 3-4, 삼하 23 : 3, 뱀전 2 : 13).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있는 신자가 옳고 필요한 기회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눅 3 : 14, 롬 13 : 4, 마 8 : 9-10, 행 10 : 1-2, 계 17 : 14, 16).

3. <sup>16)</sup> 공무원은 그들 자신이 말씀과 예전을 취급할 행정권을 가지고

---

16.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3. 공무원은 주의 말씀을 주관하거나 성례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다(대하 26 : 18, 마 18 : 17, 고전 12 : 28-29, 엡 4 : 11-12, 고전 4 : 1-2, 롬 10 : 15, 히 5 : 4).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보장하고, 따라서 통일과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게 또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되며, 모든 불경건한 자와 이단을 억제하며, 모든 부패와 예배나 훈련에 있어서의 악용을 방지하거나 개혁하고, 하나님의 모든 제도가 정당하게 조직되고 집행되고 지켜져 나가도록(사 49 : 23, 시 122 : 9, 스 7 : 23-28, 레 24 : 16, 신 13 : 5-6, 12, 왕하 18 : 4, 대상 13 : 1-9, 왕하 23 : 1-26, 대하 34 : 33, 15 : 12-13)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관공리의 의무이다.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고 무엇이든지 거기서 처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대하 19 : 8-11, 29 : 30, 마 2 : 4-5).]

있지 않다. 하늘 왕국의 열쇠를 취급할 권세도 가지지 않는다. 하물며 믿음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한 교파에다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이다. 모든 신자들이 폭력이나 위협에 부딪치지 않고 그들의 성스러운 기능의 모든 부분은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정규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하셨으므로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 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할 일은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 주는 동시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든지 냉대와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 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이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이다.

4. 모든 관공리를 위하여 기도하고(딤후 2 : 1-2), 그들의 인격을 존경하며, 공세나 그 밖의 공납금을 바치고, 양심에 따라(롬 13 : 5, 딤후 1 : 3)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관공리가 가지는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복종을 거절할 수는 없다(벧전 2 : 13-14, 16). 신자는 예외가 아니다(롬 13 : 1, 왕상 2 : 35, 행 25 : 9-11, 벧후 2 : 1, 10-11, 유 1 : 8-11). 하물며 법왕도 그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력이나 사법권은 가지지 않는다. 가령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가식적인 이유를 붙이더라도(살후 2 : 4, 계 13 : 15-17) 그들의 주권

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연 없다.

##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sup>7)</sup>

17.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어느 남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부인을 두거나, 어느 여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정당치 않다(창 2 : 24, 마 19 : 5-6, 잠 2 : 17, 미국판에는 고전 7 : 2, 막 10 : 6-9 첨가됨).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창 2 : 18). 또한 합법적인 자손으로서 인류의 번식을 위하여, 또는 거룩한 종자(말 2 : 15) 통하여 교회를 증가케 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고전 7 : 2, 9) 제정된 것이다.
3. 결혼에 응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결혼할 수 있다(히 13 : 4, 딤후 4 : 3, 고전 7 : 36-38, 창 24 : 57-58). 그러나 신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전 7 : 39). 그리고 참다운 개혁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법왕 추종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가 사악한 인간이라고 평판을 받는 사람이나 계속적으로 저주에 합당한 이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없다(창 34 : 14, 출 34 : 16, 신 7 : 3-4, 왕상 11 : 4, 느 13 : 25-27, 말 2 : 11-12, 고후 6 : 14).
4.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는 혈족이나 친족끼리는 서로 결혼을 하지 못한다(레 18장, 고전 5 : 1, 암 2 : 7). 어떠한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허락으로도 인척이 되는 남녀 한 쌍이 같이 삶으로써 이루어지는 친족 간통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막 6 : 18, 레 18 : 24-28). 남자는 처형이나 처제와 결혼할 수 없다. 또한 여자는 남편의 형이나 동생과도 결혼할 수 없다.
5. 약혼 후에 범한 간통이나 사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마 1 : 18-20). 만약 결혼 후에 간통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순결한 편은 상대방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마 19 : 9, 롬 7 : 2-3)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마 5 : 31, 72).
6. 남자 편에 무슨 부정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하나 님이 짝 지어 주신 한 사람을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간음만이라도 또는 교회나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부부 동서 거절은 결혼의 약속을 취소할 충분한 원인이 된다(마 19 : 5, 9, 고전 7 : 15, 마 19 : 6).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으로 제정된 수속을 밟아서 해야 한다. 이때에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사와 자기 자신들의 경우를 잘 분별해야 한다(신 24 : 1-4, 미국판에는 스 10 : 3 첨가됨).



1.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제도다. 이것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성별된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에 들어가며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그들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성실과 부지런한 가운데서 준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은총의 계승자로서 그들의 수명대로 같이 산다.

2.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들을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며, 파혼이 된 그들이 현재 참회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계의 끊어짐은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축성 있게 기록된 이유로 허락된 이혼 후의 재혼은(당사자들의)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나타나고 기독교의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허락될 수 있다.

##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 보편적(Catholic)이고 우주적(Universal)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중의 충만이다(엡 1 : 10, 22-23, 5 : 23, 27, 32, 골 1 : 18).

2. 가견적인 교회도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이요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율법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종교를 신봉하는(고전 1 : 2, 12 : 12-13, 시 2 : 8, 계 7 : 9, 롬 15 : 9-12)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서]<sup>18)</sup> (고전 7 : 14, 행 2 : 39, 겔 16 : 20-21, 롬 11 : 16, 창 3 : 15, 17 : 7, 미국판에는 갈 3 : 7, 9, 14, 롬 4장이 첨가됨)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마 13 : 47, 사 9 : 7),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엡 2 : 19, 3 : 15, 미국판에는 잠 29 : 18 첨가됨).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행 2 : 47).]<sup>19)</sup>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은 보통 구원을 받으며 그것과의 결합은 그들의 최선의 성장과 봉사에 가장 요긴한 것이다.

3. 그리스도는 이 보편적이고 가견적인 교회에게 이들의 모임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성직과 예언과 의식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전 12 : 23, 엡 4 : 11-13, 마 28 : 19-20, 사 59 : 21).

4.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다(롬 11 : 3-4, 계 12 : 6, 14, 미국판에는 행 9 : 31이 첨가됨).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체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또한 의식이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가지고 못 가지는 데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계 2-3장, 고전 5 : 6-7).

---

18. [ ] 안의 것은 1647년 판에 있는 것임.

19. [ ] 안의 것은 1647년 판에 있는 것임.

5. 천하에 있는 가장 순결한 교회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 (고전 13 : 12, 계 2-3장, 마 13 : 24-30, 47).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사단의 공회당이라고]<sup>20)</sup> 부를 수밖에 없다(계 18 : 2, 11 : 18-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마 16 : 18, 시 72 : 17, 102 : 28, 마 28 : 19-20)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6. <sup>21)</sup>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의 머리가 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권리 침범이다.

## 제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1. 성령과 믿음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결합이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진다(요일 1 : 3, 엡 3 : 16-19, 요 1 : 16, 엡 2 : 5-6, 빌 3 : 10, 롬 6 : 5-6, 딤후 2 : 12).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눈다(엡 4 : 15-16, 고전 12 : 7, 3 : 21-23, 골 2 : 19). 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살전 5 : 11, 14, 롬 1 : 11-12, 14, 요일 3 : 16-18, 갈 6 :

20. [ ] 안의 것은 1647년 판에 있는 것임.

21.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6.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골 1 : 18, 엡 1 : 22). 로마의 법왕도 어떠한 의미에서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의 소유자요, 지옥의 아들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이다(마 23 : 8-10, 살후 2 : 3-4, 8-9, 계 13 : 6).

10),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호 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2. 공적으로 성자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성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 간의 감화에(히 10 : 24-25, 행 2 : 42, 46, 사 2 : 3, 고전 11 : 20)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교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까지 확장된다(행 2 : 44-45, 요일 3 : 17, 고후 8-9장, 행 11 : 29-30).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골 1 : 8, 19, 고전 8 : 6, 사 42 : 8, 딤편 6 : 15-16, 시 45 : 7, 히 1 : 8-9). 또는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가 소유하는 감투나 소유를 탈취하거나 깨뜨리지는 않는다(출 20 : 15, 엡 4 : 28, 행 5 : 4).

##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

1.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고전 10 : 16, 11 : 25-26, 갈 3 : 27) 하나님께서(마 28 : 19, 고전 11 : 23)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롬 4 : 11, 창 17 : 9-10)에 대한 인 치심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롬 15 : 8, 출 12 : 48, 창 34 :

14, 미국판에는 고전 10 : 21 이하가 첨가됨)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롬 6 : 3-4, 고전 10 : 16, 2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2. 모든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표지와 물질 사이에 영적 관계 또는 신성한 합일이 있다. 그러므로 한편의 이름과 그 효과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창 17 : 10, 마 26 : 27-28, 딤후 3 : 5).

3. 정당하게 집행될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전 안에 있는 무슨 힘으로써 부여되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롬 2 : 28-29, 벰전 3 : 21) 믿음이나 뜻에 따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마 3 : 11, 고전 12 : 13)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성례전에 사용되는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그 말씀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전을 가치 있게 받는 사람에게(마 26 : 27-28, 28 : 19-20) 은사를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4.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마 28 : 19, 고전 11 : 20, 23, 4 : 1, 히 5 : 4)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5. 구약에 있는 성례전이 표현하고 상징하는 영적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그것과 동일하다(고전 10 : 1-4, 미국판에는 고전 5 : 7-8이 첨가됨).

##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마 28 : 19, 미국판에는 막 16 : 16 첨가됨) 제정하신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예전이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고전 12 : 13, 미국판에는 갈 3 : 27 - 28이 첨가됨)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롬 4 : 11, 골 2 : 11 - 12)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갈 3 : 27, 롬 6 : 5) 중생과(딤후 3 : 5) 사죄와(막 1 : 4, 미국판에는 행 2 : 38, 22 : 16이 첨가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봉헌하는(롬 6 : 3 - 4)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 예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한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집행될 것이다(마 28 : 19 - 20).

2. 이 예전에서 사용되는 외부적인 요소는 물이다.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는(마 3 : 11, 요 1 : 33, 마 28 : 19 - 20, 미국판에는 행 10 : 47, 8 : 36, 38이 첨가됨) 이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3. 세례 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요치 않다. 물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히 9 : 10, 19 - 22, 행 2 : 41, 16 : 33, 막 7 : 4) 붓든지 뿌려서 베푸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4.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지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한편만 믿는 집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창 17 : 7, 9, 갈 3 : 9, 14, 골 2 : 11 - 12, 행 2 : 38 - 39, 롬 4 : 11 - 12,

고전 7 : 14, 마 28 : 19, 막 10 : 13-16, 눅 18 : 15, 미국판에는 행 16 : 14-15, 33이 첨가됨).

5. 이 예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다(눅 7 : 30, 출 4 : 24-26).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을 할 수 없다든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롬 4 : 11, 행 10 : 2, 4, 22, 31, 45, 47),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분명히 중생했다고 할 만큼(행 8 : 13, 23) 이 세례와 은혜와 구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행해진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요 3 : 5,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을 옳게 집행하므로 약속된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때에 연령의 차이가 없이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실지로 부여된다.

7. 세례 성례는 어느 사람에게든지 한 번만 베풀 것이다(딤후 3 : 5).

##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희생을 언제든지 기억케 하시고, 참신자에게 모든 은사를 인 치시고, 그의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장성케 하고, 그들이 띠고 있는 모든 의무에 관여하고 그와 더불어 가질 교제의 매는 줄이 되고 약속이 되고, 또한 이것이 그의 신비적인 몸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정해 주신 것이다(고전 11 : 23-26, 10 : 16-17, 21, 12 : 13).

2. 이 예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성부에게 바쳐진 것은 아니다. 또는 산 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드린 참희생의 제물도 아니다(히 1 : 22, 25-26, 28). 다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친 그 제물에 대한 기억이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칭송에 대한 영적 봉헌이다. 그러므로 소위 미사의 제물은 택함을 받은 자의 모든 죄를 위한 단 하나의 속죄로서의 그리스도 자신의 제물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sup>22)</sup>

3. 주 예수는 이 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사를 택하였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이 예전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한다. 또한 떡을 떼고 잔을 들어 그들 자신이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 배찬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마 26 : 26-28, 막 14 : 22-24, 눅 22 : 19-20, 고전 11 : 23-27).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못한다(행 20 : 7, 고전 11 : 20).

4. 사적인 미사나 이 예전을 신부에게나 그 밖의 사람에게만 받거나(고전 10 : 9), 또는 일반 신자에게 잔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막 4 : 23, 고전 11 : 25-29),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거나 높이 들어 올리거나 동경하는 마음으로 들고 다니거나 또는 무슨 정상적이 아닌 종교적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예전의

---

22.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다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자신을 봉헌한 그 제물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칭송의 영적 봉헌이다(고전 11 : 24-26, 마 26 : 26-27, 미국판에는 눅 22 : 19-20이 첨가됨). 그러므로 법왕의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드리신 화목 제물임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다(히 7 : 23-24, 27, 10 : 11-12, 14, 18).



본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뜻에도 모순되는 것이다(마 15 : 9).

5. 이 예전의 외적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이 요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때로는 물질 그대로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나 때로는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도 부른다(마 26 : 26-28). 그렇게 부른다 해도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예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 있다(고전 11 : 26-28, 마 26 : 29).

6. 신부가 축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체설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또한 예전의 본질을 전도시키는 생각이며 과거나 현재나 여러 가지 미신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야말로 큰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다(행 3 : 21, 고전 11 : 24-26, 눅 22 : 6, 39).

7. 이 예전에 있어서(고전 11 : 28, 미국판에는 고전 5 : 7-8이 첨가됨)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예전을 값있게 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받는다.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 또한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인 뜻에서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예전에 있어서는 살과 피가 의미하는 그대로(고전 10 : 16, 미국판에는 고전 10 : 3, 4 : 1이 첨가됨) 신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현실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나타난다.

8. 이 예전에 있어서 가령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이 외적인 요소를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무가치하게 그것을 대했으므로 주의 살과 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심판을[저주를]<sup>23)</sup>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는 합당치 않으므로 그들은 주의 만찬에 배찬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있으면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한다든가(고전 11 : 27-29, 고후 6 : 14-16, 미국판에는 고전 10 : 21이 첨가됨) 참여가 허락된다는 것은(고전 5 : 6-8, 살후 3 : 6, 14-15, 마 7 : 6) 불가능한 일이다.

###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사 9 : 6-7, 딤후 5 : 17, 살전 5 : 12, 행 20 : 17, 28, 히 13 : 7, 17, 24, 고전 12 : 28, 마 28 : 18-20, 미국판에는 시 2 : 6-9, 요 18 : 36이 첨가됨) 교회의 제직의 손에 한 통제 기관을 정해 주셨다.

2. 이 제직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덕행에 따라서 제직들은 죄를 보유하기도 하고 감소할 수도 있으며, 말씀과 징계로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을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때에 따라(마 16 : 19, 요 20 : 21-23, 고후 2 : 6-8) 징계를 용서함으로써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문을 열어 준다.

---

23. [ ] 안의 것은 1647년 판에 있는 것임.

3.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누락을 없애 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직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훼방자로 말미암아(고전 5장, 딤후 5 : 20, 마 7 : 6, 딤후 1 : 20, 고전 11 : 27-34, 유 1 : 23) 그의 인 치심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떨어뜨리신다.

4.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직은 먼저 충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을 정지하고 범죄의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살전 5 : 12, 살후 3 : 6, 14-15, 고전 5 : 4-5, 13, 마 18 : 17, 딤후 3 : 10) 교회에서 제명도 한다.

### 제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1. 교회는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소위 대회나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행 15 : 2, 4, 6).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가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준 권리로서 그러한 모임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소집하는 것은 특수 교회의 감독자와 지배자에 속한다.]<sup>24)</sup>

2. <sup>25)</sup> 믿음에 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공적

---

24. [ ] 안에 있는 부분은 1788년에 첨가된 것.

예배에 관하여 결정할 것은 목사들이 모이는 대회와 회의에 속한다. 또한 관리에 실수가 있어서 불평을 하거나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도 이 대회에 속한다. 이 회에서 발표한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귀중하게, 또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었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행 15 : 15, 19, 24, 27-31, 16 : 4, 마 18 : 17-20) 정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로써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사도시대로부터 총회나 특별한 모임의 구별 없이 가진 모든 대회와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었으며 사실 여러 번 과오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회의를 믿음과 실생활의 법칙으로 생각치 말고 이 두 가지를 돕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엡 2 : 20, 행 17 : 11, 고전 2 : 5, 고후 1 : 24).

4. 대회와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일반 관공청으로부터(눅 12 : 13-14, 요 18 : 36)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그밖의 방법으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 제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1.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 버린다(창 3 : 19,

---

25. 1647년 판에는 다음과 같다. 1788년 판부터 2는 생략하고 1-4만 포함함.

2. 공무원들은 종교 문제에 관하여 의논도 하고 충고를 받기 위하여 목사나 그의 합당한 사람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대회를 소집해야 한다(사 48 : 23, 딤펢전 2 : 1-2, 대하 19 : 8-11, 29, 30장, 마 2 : 4-5, 잠 11 : 14). 마찬가지로 만약 공무원들이 교회에 대한 공적인 적대행동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스스로 가지는 직무에 따라 다른 적당한 사람과 같이 교회의 대표들로서 그와 같은 모임을 가질 것이다(행 15 : 2, 4, 22-23, 25).

행 13 : 36).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눅 23 : 43, 전 12 : 7).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히 12 : 23, 고후 5 : 1, 6, 8, 빌 1 : 23, 행 3 : 21, 엡 4 : 10, 미국판에는 요일 3 : 2 첨가됨).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눅 16 : 23-24, 행 1 : 25, 유 1 : 6-7, 벰전 3 : 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2.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살전 4 : 17, 고전 15 : 51-52).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를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욥 19 : 26-27, 고전 15 : 42-44).

3.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행 24 : 15, 요 5 : 28-29, 고전 15 : 42, 빌 3 : 21).

###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셨다(행 17 : 31).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심판을 부여해 주셨다(요 5 : 22, 27). 그날에는 배신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 6 : 3, 유 1 : 6, 벨후 2 : 4)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의 청산을 받으며,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후 5 : 10, 전 12 : 14, 롬 2 : 16, 14 : 10, 12, 마 12 : 36-37).

2. 하나님께서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기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롬 9 : 23, 마 25 : 21) 사악하고 불복종하는(롬 2 : 5-6, 살후 1 : 7-8, 롬 9 : 22)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을 얻을 것이다(마 25 : 31-34, 행 3 : 19, 살후 1 : 7).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 앞에서 처벌을 받아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마 25 : 41, 46, 살후 1 : 9, 미국판에는 사 66 : 24이 첨가됨).

3. 죄를 버린 모든 사람에게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대하여 큰 위로를 주기 위한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셨다(벨후 3 : 11, 14, 고후 5 : 10-11, 살후 1 : 5-7, 눅 21 : 27-28, 롬 8 : 23-25). 마찬가지로 그날을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 두어서 그들이 모든 육적 안전감을 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다(마 24 : 36, 42-44, 막 13 : 35-37, 눅 12 : 35-36, 계 22 : 20). 아멘.

## 제34장 성령에 관하여<sup>26)</sup>

1. 성령은 삼위일체 신의 제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나왔으나 동일한 실체를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드렸다.

2. 그는 주요, 생명의 부여자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모든 선한 생각과 순결한 욕구와 사람 안에 있어서의 거룩한 고문이 되신다. 그에 의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충동을 받았고 모든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복음의 경륜은 특히 그에게 위임되었다. 그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설득력으로서 동행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 위에 복음의 사신(使信)을 주어 그러한 자비로우신 은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구실이 없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3.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성령은 구속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효율적인 기관이다. 그는 사람을 그의 은혜로 중생케 하고, 그들의 죄를 시인케 하고, 참회토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고 위로자와 성화자로서 그들 안에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입양(入養)의 영과 기도를 주신다. 또한 모든 은혜로운 일을 행

---

26. 34장과 35장은 1903년에 당시 미국 북장로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첨가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미국 남장로회는 이것을 1842년에 정식으로 받아들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다.

하여 그것으로써 신자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화되고 인 치심을 받는다.

4.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그는 그의 교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른 직책을 위한 자격을 준다. 또한 그의 회원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총을 부여해 준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존되고 증가되고 성결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 제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마련하셨다. 그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 사람의 모든 잃어버린 족속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제공되었다.

2.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그의 뜻이 선언되었으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참으로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주어진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하시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그의 영에 의하여 그의 은혜로우신 초청을 받도록 사람에게 역설한다.

3.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저 없이 그의 자비로우신 준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의무요, 특권이다. 반면에 참회도 하지 않고 불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악화된 죄책을 초래하게 되며 그들 자신의 잘못으



로 망하게 된다.

4.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으며 신적 확립과 보통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위탁하기를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기독교의 질서를 지지할 의무와 그들의 기도와 기부와 개개적인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데 공헌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선언문<sup>27)</sup>

교회 정치에 규정된 대로 교역자와 치리장로와 집사들의 안수 시에 하는 서약은 신앙고백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포함한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 안에 있는 표현에서 얻은 어떤 추론에 대하여 교회가 부인할 뜻을 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계시된 진리의 어떤 부분이 현재에는 더 명백하게 표현하는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정식으로 원하고 있으므로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첫째, 신앙고백서의 제3장에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칙령(勅令)에 관한 교리는 전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의 교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의 아

---

27. 이 선언문은 1903년에 채택된 것이다.

196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2회 총회는 본 신앙고백을 총회 헌법에 첨가키로 하였다.

들의 은사는 전 세계의 죄를 위한 화해로 이해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라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멸망한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칙령(勅令)은, 하나님은 어느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구원을 준비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제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범한 죄 이외의 죄값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신앙고백의 제10장 3절에 관련하여, 유아 시절에 죽은 아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아 시절에 죽는 모든 아이는 구원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성령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제2편

# 정 치

FORM OF GOVERNMENT





# 정 치

## FORM OF GOVERNMENT

### 제1장 원리

#### CHAPTER 1 PRIMARY PRINCIPLES

해외한인장로회의 정치원리는 다음과 같다. 본 정치 원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다.

The Government principles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are as follows : The foundation of government principles is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and its code of guidance in all its affairs, the Word of the Lord.

#### 제1조 양심의 자유 Freedom of the Conscience

양심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이 양심의 자유를 주시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and has left it free from the doctrines and commandments of men, which are in any way contrary to his Word, no further than may be necessary for protection and security, in matters of faith or worship. Therefore we consider the rights of private judgment in all matters, and one person has the right to discern for himself the different works of faith in accordance with his own conscience without restriction. The freedom of the conscience shall not be infringed upon.

## 제2조 교회의 자유 Freedom of the Church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에 의해서 만들 자유가 있다.

That in perfect consistency with the above principle of common right, every church or denomination is entitled to declare the terms of admission into its communion, and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their baptism and confirmation, as well as the whole system of its internal government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 of Jesus Christ.

## 제3조 진리와 행위 Truth and Practice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믿음의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That truth is the touchstone of the faith and its practice. The evidence of truth is to be holy. Therefore, truth and practice must be in harmony with each other.

## 제4조 교회의 직분자 Church Officers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진리에 순종하고 신도로 하여금 본분을 다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자로 할 것이다.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has appointed officers for His holy work and establishment of virtue in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y preach the gospel and administer the Sacraments, and nurture believers to observe both truth and fulfill one's duty. Therefore,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from individuals who believe and confess the church is the body of Jesus Christ in whose name they act.

## **제5조 치리권 Authority of Governance**

치리권은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행사케 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성경의 권위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The authority of governance shall be exercised by the representatives that the church has set forth for the sole purpose of observing and making known the commandment of Jesus Christ. The exercise of government and all their decision should be based upon the delivery of God's commandments and upon the authority of Holy Scripture and observance of the Will of God.

## **제6조 권고와 징계 Church Discipline**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와 징계를 행한다. 권고와 징계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으로 국법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목사와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써 각 차리회의 정당한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The disciplinary actions are taken for the purpose of keeping the order and peace in the Church. Governing Bodies of the church are distinct from the government of the state in that the ecclesiastical discipline must be purely moral or spiritual in its object. Pastors and members are responsible for obeying the proper decisions of the Governing Body in the manner of serving and obeying Jesus Christ's authority.

# **제2장 교회**

## **CHAPTER 2 THE CHURCH**

## **제7조 교회의 정의 Definition of the Church**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만민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딤후전 3 : 15), 그리스도의 몸(엡 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 :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God reveals His infinite grace and wisdom through His people chosen from all of mankind. This chosen group is the church of God(I Timothy 3 : 15), the body of Christ(Ephesians 1 : 23), and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I Corinthians 3 : 16). It consists of all those persons of all ages,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past as well as in the future. It is called the Holy Church.

### 제8조 교회의 구별 Distinction of the Church

교회는 두 가지로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The distinction is made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church. The visible Church refers to the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while the invisible church refers to church that is known only by God.

### 제9조 지교회 Local Church

1. 지교회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갈 1 : 22, 계 1 : 4, 20),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훈련하며(마 28 : 20, 행 1 : 8), 정의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Local church refers to the church established in a particular place to worship God and to shar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upon the teachings of the Bible(Galatians 1 : 12, Revelation 1 : 4, 20), to proclaim the Gospel and to nurture disciples(Matthew 28 : 20, Acts 1 : 8), and to further the God's Kingdom in the world by



serving with righteousness and love(Acts 2 : 47).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Organized church refers to a particular church with its Session and a group without a Session is called an unorganized church (Acts 20 : 17).

###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Organization of a Local Church**

공동 예배로 모이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3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When a House Church has a group of fifteen or more baptized Christians and makes a petition to organize a church, a local church can be organized with its approval by the Presbytery. When the local church lasts for 3 years with less than 15 baptized Christians, the Presbytery will transfer it to a House Church.

## **제3장 교인**

### **CHAPTER 3 THE CHURCH AND ITS MEMBERS**

#### **제11조 교인의 정의 Definition of Members**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The members of the church are called Christians who believe in the holy Tri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 **제12조 교인의 구분 Categories of Membership**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Membership includes affiliate members, baptized members, and

children baptized as infants.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Affiliate members : persons who have made a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and participate in the church's work and worship.
2. **유아세례교인** : 입교인의 자녀로서 5세 미만의 유아세례를 받은 자  
Baptized as infants : children(under five) of affiliate members of the church and baptized as infants.
3. **세례교인(입교인)** : 14세 이상 된 자로서 입교 서약한 유아세례 교인이거나 세례를 받은 자  
Baptized members(over 14) : baptized as an infant with affirmation (use confirmation instead of affirmation?)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life of the church or baptized persons who have made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 **제13조 교인의 의무 Duties of Members**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 봉사와 친교, 구제, 교육과 선교에 힘쓰며,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Duties of members include : taking part in worship services, offering of money, time, and talents in service, sharing fellowship with others, supporting and helping, education and evangelical mission, and obeying the Governing Bodies of the church.

### **제14조 교인의 권리 Privileges of Members**

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예식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Affiliate members hav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Holy Communion and be a member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 **제15조 교인의 이명의무 Transfer of Membership**

1. 교인이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를 떠날 때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알리고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When a member must leave the local church due to moving or other circumstances, he or she must request the Sess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his or her membership within six months.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한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The Session will grant a transfer of certificate under rational reasons. The Session may not issue a transfer of certificate if one is joining any heretical church, one doesn't provide a sensible reason for leaving, or one is in the procedure of a disciplinary case.

3. 책벌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명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The reprimand needs to be stated for the person if under a disciplinary case.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Members from other denominations that our religious body acknowledges will be granted a transfer of membership to the church under our denomination(This doesn't make sense).

## 제16조 교인의 출타 신고 의무 Report of a Member's Absence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질병 등의 사유로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When a member must be absent for six months or longer due to his studies, military service, business, illness, or any other reasons, he or she must report to the Session whereas he or she is a member.

### **제17조 교인의 자격정지 Disqualification of Membership**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2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When a member leaves the church for over one year without report and does not participate in the church's work and worship, his or her membership will become inactive. After two years has elapsed, his or her membership will be suspended.

### **제18조 교인의 복권 Restoration of Membership**

교인이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3개월을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교인 된 자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When an inactive member returns to the local church, their membership may be restored after three months by the agreement of the Session and a suspended member may be restored after six months by the agreement of the Session.

## **제4장 교회의 직분자**

### **CHAPTER 4 THE CHURCH AND ITS OFFICERS**

### **제19조 교회의 직분자의 구분 Classification of the Officers of the Church**

교회의 직분자는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한다.

The officers are in one of two categories : permanent and temporary.

### **제20조 항존직 Permanent Officers**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행 20 : 17, 28, 딤후 3 : 1-13), 그 시무 정년은 70세가 된 해 연말까지로 하되, 개 교회나 기관이 70세 범위 내에서 정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Permanent officers are Pastors, Elders, Deacons, and GwonSas (Acts 20 : 17, 28 and I Timothy 3 : 1-13). The permanent officer's retirement shall be until the end of the year when one becomes 70 years old. However, each church or institution may set its own retirement age within the limit of 70 years of age. A permanent officer wishing to retire prior the retirement age may do so with an approval of the governing body where the officer belongs.

\* Elder : Also referred as JangRo in Korean

\* Deacon : Also referred as (AnSoo) JipSa in Korean

\* GwonSa : (Exhorting) Deaconess

## **제21조 임시직 Temporary Officers**

임시직은 전도사(풀타임, 파트타임)와 서리집사로 그 시무 기간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Temporary officers include JunDoSa(full or part time) and Temporary Deacon. The ordinary officers serve a particular church for one year and may be reappointed. When a reappointed ordinary officer reaches 70, his or her service will end by the end of the year.

\* JunDoSa : Evangelical Minister

\* Temporary Deacon : Also referred as SeoRi JipSa in Korean

## **제5장 목사**

### **CHAPTER 5 PASTORS**

## **제22조 목사의 의의 Definition of a Pastor**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Pastor is defined as follows :

1.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 3 : 15, 벧전 5 : 2-4),  
A shepherd who oversees to nurture the flock of Christ(Jeremiah 3 : 15, I Peter 5 : 2-4),
2.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 : 1-3),  
An elder who administers and models to the members of the church(I Peter 5 : 1-3),
3.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과 사자이며(벧후 1 : 1, 고후 5 : 20, 엡 6 : 20),  
A servant who serves Christ(II Peter 1 : 1, II Corinthians 5 : 20, Ephesians 6 : 20),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딤후 1 : 9, 딤후 1 : 11),  
A teacher who enlightens the members of the church with the words of Christ(Titus 1 : 9, II Timothy 1 : 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며(딤후 4 : 5),  
An evangelist who proclaims the gospel of salvation(II Timothy 4 : 5),
6.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는 자이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 : 42, 고전 4 : 1-2).  
A practitioner who follows the teachings of Christ and is a steward of God's covenant(Luke 12 : 42, I Corinthians 4 : 1-2).

### 제23조 목사의 자격 Qualifications of a Pastor

목사의 자격은

The qualifications of a Pastor are as follows : He or she

1.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혹은 본 총회가 인정하는 정

## 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Must be a graduate of a theological seminary(M. Div) of this General Assembly of KPCA or a graduate of a seminary school that is accepted by the General Assembly

## 2.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Must pass the ordination examin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 교단 1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포함한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Must have two years or more of ministry experience after completing M. Div program at seminary school however, one year of the ministry experience must be from the church within our denomination.

## 4. 입교인으로서 무흠 7년을 경과한 자, 단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고와 징계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분자는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Must be a blameless affiliate member of the church over a period of 7 years. Blameless refers to the limitations of disciplinary case ; that is, a member who has not been reprimanded from partaking in the Sacrament, an officer who has not been reprimanded because of a violation of practice or imprisoned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o are imprisoned for matters of conscience.

## 5. 25세 이상 된 자

Must be 25 years of age or older.

## 6. 신앙이 진실한 자

Must have a sincere faith.

## 7.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Must be able to teach.

8.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Must be of good behavior in accordance with the Gospel.

9.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Must rule his own house well.

10.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

Must be respected and have a good report with others.

11.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

Must have the Biblical view of marriage.

12. 총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Must take an oath to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제24조 목사의 직무 Duties of Pastors**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행정과 치리권을 행사한다.

A pastor proclaims and teaches the Words of God, administers the sacraments, blesses his congregation, practices administration and leads the Governing Body of the church in a full collaborative manner with Elders.

**제25조 목사의 칭호 Titles of Pastors**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Titles of pastors are as follows :

1. 담임목사는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이다.

Senior Pastor serves church after an approval from the Presbytery with an invitation of the local church.

2.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행정, 교육, 음악, 상담, 2세 목회 등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담당하는 임시목사로 임기



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Associate Pastor assists the Senior Pastor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dministration, education, music, counseling, or pastoring of the second generation(EM). It is one year term which may be extended with the Session's resolution.

3.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조직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목사이다.

Evangelism Pastor is sent by the Presbytery to plant a local church. The duties includ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administration of communion under the guidelines of the Presbytery.

4. 특수 전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 기관 등 기타 특수한 전도사업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Special Evangelism Pastor works in a special ministry such as military services, hospitals, prisons, or industrial companies under the consent of the Presbytery.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의 기관과 인정받은 관계기관에서 교육, 구제, 행정, 사업 등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Institutional Pastor works in the field of education, relief works, administration, or ministry work at the General Assembly or other recognized or related agencies.

6. 선교목사는 상회의 파송을 받아 타민족을 대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성례를 행하는 목사이다.

Mission Pastor is sent by the higher Governing Body to different ethnic group for purposes of planting a church and administration of communion.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정년이 되어 시무를 끝마칠 때 혹은 시무를 사임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이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가표를 얻어 의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Pastor Emeritus is either retired or resigned pastor with minimum of 20 years of serving as a pastor to a particular church and has been offered such title by the church to honor the pastor's service. A resolution from the Session, a majority vote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a confirmation by the Presbytery are required to offer such title. The honorarium shall be determined by the circumstances of the local church.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이다.

Honorary Pastor is one who has served a Presbytery for 10 years or more and requests the release from the exercise of pastoral care, that Governing Body is moved by an affection and gratitude to continue an association in an honorary relationship, it may elect him as Honorary Pastor with or without honorarium.

9. 무임목사는 노회가 인정하는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 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Undesignated Pastor is a pastor recognized by the Presbytery but not designated by any local church. When this condition continues for 5 years or more without any valid reason, the membership to the Presbytery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이다. 단,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은퇴를 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Retired Pastor is the one who has retired upon reaching the age of retirement. When a pastor wishes to retire before the retirement age, it will be granted.

## 제26조 목사의 청빙 Calling of a Pastor

1. 담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n calling a Senior Pastor, it is required to have a resolution with two-third or more votes of the Session and an approval of two-third or more of the members present at a Congregational Meeting. The calling petition, copies of meeting minutes of the Session and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the resume of the candidates must be submitted to the Presbytery.

2.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n calling an Associate Pastor, a resolution of the Session and an approval of the Officer's Meeting are required. The calling peti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Presbytery with copies of meeting minutes of the Session and the Officer's Meeting along with the resume of the candidates.

3. 기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When calling an Institutional Pastor, the representatives of the institution must file a petition upon the decision of the institution(the Board of Directors). The term of practice and pastoral care is determined by that institution.

4.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미자립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When calling a Senior Pastor, anyone who falls un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hall not be called, except for a dependent church.

- 1)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Spouse of the resigning or retiring Senior Pastor, or direct descendants or spouses of direct descendants of the retiring or resigning Senior Pastor of the local church.

- 2)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Spouse of the active elder of local church, or direct descendants or spouse of direct descendants of the active elder of local church.

5. 청빙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Calling may be immediately withdrawn upon the discovery of false information after the calling.

### **제27조 목사의 청빙 승인 Approval of the Call of Pastors**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The Presbytery receives the petition and decides its grant of approval.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When the Presbytery approves the petition of calling,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will grant the letter of call to the pastor who is called.

### **제28조 다른 노회의 목사 청빙 Calling of a Pastor of other Presbyteries**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The procedure of the calling of a pastor of other presbyteries is as follows :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The church or the institution must present the petition to the

Presbytery.

2.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보낸다.

Upon the decision of the Presbytery, the petition is sent to the Presbytery of the called pastor.

3. 청빙서를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 이명증서와 함께 그 서류를 청빙한 노회로 환송한다.

The Presbytery of the called pastor approves the call, the letter of transfer is sent to the calling Presbytery with the documentations.

4. 이명증서를 접수한 노회는 즉시 발송한 노회에 이명 접수 회신을 해야 한다.

The Presbytery should send the notice of receipt of transfer to the Presbytery that sent the transfer.

## **제29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Calling of a Pastor from Different Denominations**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제5장 제23조 1, 4-12항에 해당하고 본 총회 신조와 정치고시에 합격한 자

The applicant must belong to the denominations acknowledged by the General Assembly, must meet the qualifications listed in Chapter 5, Article 23, Section 1, 4-12 and must have passed the General Assembly's credendum and the government section examination.

2.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와 신학교는 별도로 정한다.

The denominations and the seminaries that are recog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designated separately.

3. 총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One who pledged to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4. 자매교단은 그 교단의 시행규정과 대등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Acknowledgement of denomination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rules and ordinances by which denominations are acknowledged.

5. 가입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When there is any false or misrepresentation found, the admission is to be dismissed at once.

### **제30조 목사의 임직 Installation of Pastors**

목사 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임직한다.

When his or her requirements of qualifications for a Pastor have been met, the pastor who is called will be installed by the Presbytery.

### **제31조 목사의 임직식 Installation Ceremony of Pastors**

목사의 임직식은 노회가 주관하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The pastor's installation service shall be organized by the Presbytery and the service details shall be made separately. However, the military chaplain's and the mission pastor's installation service may be organized by the Presbytery's Officers with an approval of the Presbytery.

### **제32조 목사의 임지 이전 Transferring of Pastors**

목사가 임지를 이전코자 하면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When a pastor seeks to transfer, the permiss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Presbytery to which he belongs.

### **제33조 목사의 사임과 사직 Resignation of the Pastor**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노회에 시무사임 청원을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한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임사부(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Voluntary Resignation : When a pastor must resign due to any unavoidable reasons, he must request his resignation from his service to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will give permission after the review of the request and find it reasonable. When the Presbytery is out of session, the permission can be obtained from the boards through the(temporary office of) Politics Department.

2. 권고사임 : 지교회가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목사의 시무 사임을 청원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처리한다.

Advised Resignation : Upon a written request for an advised resignation is made to the Presbytery with the 2/3 or more of the affirmative votes of the Session and 2/3 or more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the Presbytery shall proceed with the resignation process after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3. 자의사직 : 목사가 지교회를 시무 중 교회 발전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Personal Resignation : When a pastor finds his service no longer benefiting the church and seeks to resign from the calling of pastorship, he may make a request of personal resignation to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will review and processes the request.

### **제34조 목사의 휴무 Temporary Release from the Exercise of Ordained Office**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6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When a current pastor wishes to take a temporary leave of absence for six months or more, it may be granted with the Session's resolution and the Presbytery's permiss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Studying Abroad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Training at any educational or research institution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과 안식을 요할 때

Physical or Mental health concerns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Or other reasons in accordance with the reasons above

2.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The term for the release is less than one year. If necessary, the extension beyond a year may be granted.

## 제6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 CHAPTER 6 ELDERS, DEACONS AND GWONSAS

\* Elder : Also referred as JangRo in Korean

\* Deacon : Also referred as (AnSoo) JipSa in Korean

\* GwonSa : (Exhorting) Deaconess

#### 제35조 장로의 직무 Duties of Elders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



정과 권고와 징계를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Elders are chosen by the particular church and become the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church. In collaboration with the pastor, Elders exercise administration, leadership, counseling, and discipline. They have responsibilities for the life of a particular church. Elders encourage church members and equip them not to misunderstand the doctrine, and keep them away from moral anarchy, and inform the Session of those who don't repent.

### **제36조 장로의 자격 Qualification of the Elders**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신임을 받는 진실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Elders should be persons of faith, in the confidence of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have good knowledge, judgment, leadership, and a record of being a blameless baptized member for over 7 years in the church and 30 years of age or older.

### **제37조 장로의 시무 연한 Service Term for Elders**

장로의 시무 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 휴무 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 기간 1년을 포함한 13년을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

Elder's term shall be total of 13 years which include one year sabbatical within the retirement age. However, if needed, a church may vote to extend another 13 year term, inclusive of one year of sabbatical.

### **제38조 안수집사의 직무 Duties of Deacons**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Deacons are chosen by the church, and become members of the Officers Meeting. Deacons are called to serve the church, to care those who are in need, and to collect offerings.

### **제39조 안수집사의 자격 Qualifications of Deacons**

안수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Deacons must be baptized persons of faith and spiritual character, honest repute, and good judgment, and have a record of being a blameless member for over 5 years in the church and must be 30 years of age or older.

### **제40조 권사의 직무 Duties of GwonSas**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GwonSas are chosen by the church and becomes a member of the Officers Meeting. Assisting Ministers in the leadership, GwonSas visit and comfort and care for the people in need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poor and the sick and give their service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 **제41조 권사의 자격 Qualifications of GwonSas**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GwonSas must be a female baptized person of faith, 30 years of age or older, and has a record of being a blameless member for over 5 years in the church. Their manner of life should be a demonstration of the Christian gospel and be good examples of other members of the church.

## 제42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Elec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Elder shall be elected with a resolution of the Session,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and approval of 2/3 or more of the member's vote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In the event the election is difficult with the Section 1 above, the elder may be elected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Session and the approval 2/3 or more of the member's vote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최고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The voting for selecting Elders cannot exceed three rounds of voting.

4.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For Deacons and GwonSas election, the Session may select the candidates and can be elected with the resolution of the Session along with the majority votes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 제43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하며 임직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장로는 선거 후 5개월 또는 그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아야 하며, 총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Elders, Deacons and GwonSas are installed by the local church, and the installation service guidelines shall be made separately. Elders must receive five months or longer training under the guidance of the Session after the election and must pass the Presbytery's ordination examination. Deacons and GwonSas must receive three months or longer training after the election under the guidance of the Session and must take an oath to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 **제44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과 사직 Resign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1. 자의사임과 권고사임 :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직무 수행에 어려운 사정으로 시무가 어려울 때에는 시무를 사임할 수 있고,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혀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시무를 원치 않으면 시무사임을 처리한다.

Voluntary and Advised Resignation : Elders, Deacons, and Gwonsas may resign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at hinder performing the duties. However in the event that one creates disruption within the church, regardless of evil acts or heresy, and if the church no longer does not want that individual from serving, the church may proceed with an advised resignation process with 2/3 of the Session's resolution, and with 2/3 or more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2.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Voluntary Leaving : When an elder submits a request to the Session to withdraw from the position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Session may review the request and approve such request.

**제45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서 처리 Procedure of Resign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적법한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사임 여부를 사임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When the resignation is received from an Elder, Deacon, or GwonSa, the decision must be processed with lawful procedure and must be informed to the one who resigns within three months.

**제46조 원로장로 Elder Emeritus**

한 교회에서 휴무 포함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정년이 될 때 혹은 시무를 사임하여 은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원하면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가표를 얻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When an Elder who had served for 20 years or more reaches the retirement age or resigns from active service, the local church may award the Elder Emeritus status to honor the Elder's service with a resolution from the Session and majority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제47조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 Retired Elders, Deacons, and GwonSas**

은퇴장로, 은퇴집사 및 은퇴권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The retired Elders, Deacons and GwonSas may become an oratory member of the Officers Meeting.

**제48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Temporary Release and Restoration**

1.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기한을 정하여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When Elders, Deacons, and GwonSas seek to have a temporary release from his or her duties with unavoidable reasons, it may

be grant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for a certain period.

2. 자의사임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When Elders, Deacons, and GwonSas who have voluntarily resigned desire to be restored to the position, the person shall be restored to the position with a two-thirds vote of affirmation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embers.

3. 권고사임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장로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When Elders, Deacons, and GwonSas who have had advised to leave, desire to be restored to the position, the reason of leaving must be resolved and then the two-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Session must be obtained. For Elders, the two-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obtained for their restoration to the position. For Deacons and GwonSas, one half or more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obtained for their restoration to the position. The person must make a reaffirmation at the installation ceremony.

4. 자의사직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장로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When Elders, Deacons, and GwonSas who have resigned due to personal reasons desire to be restored to their position, two-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Session must be preceded. Then for Elders, two-third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obtained for their restoration to the position. For Deacons and GwonSas, one half or more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obtained for their restoration to the position. The person must make a reaffirmation at the installation ceremony.

#### **제49조 협동 항존직분자 Permanent Officers from other Church**

다른 교회에서 이명을 한 항존직분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당회가 결의하여 임무를 맡길 수 있다. 임무를 맡은 협동 항존직분자는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Permanent Officers from other churches who have transferred may be assigned to serve the church with a decision from the Session after a certain period. During their active service, the cooperative permanent officer may become a member of the Officers Meeting.

## **제7장 전도사, 서리집사**

### **CHAPTER 7 JUNDOSA AND TEMPORARY DEACON**

\* JunDoSa : Evangelical Minister

\* Temporary Deacon : Also referred as SeoRi JipSa in Korean

#### **제50조 전도사의 직무 Duties of the JunDoSa**

전도사는 전도사고시를 합격한 후 당회 또는 목사가 시무하는 지교회를 도와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목사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JunDoSa is a paid officer who passed the JunDoSa exam and provides an assistant to the Session or the local church. JunDoSa may serve as a temporary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with the approval of the temporary Session's moderator at a dependent church.

### **제51조 전도사의 자격 Qualifications of JunDoSa**

전도사의 자격은 입교인으로 무흠 3년 이상 된 자로서, 총회신학교 또는 총회가 인정한 신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단, 시무장로 및 배우자는 전도사를 겸할 수 없다.

JunDoSas must be a baptized and blameless member of the church for three years or more who currently attends or graduated from Denomination's seminary school or school recog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must have passed the JunDoSa examination. However, active Elder or the Elder's spouse may not hold JunDoSa position concurrently.

### **제52조 서리집사의 임명 Installation of Temporary Deacon**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매년 임명할 수 있다.

Temporary Deacon must be baptized persons who have record of blameless affiliate members for one year or more in the church, and appointed yearly by the Session.

## **제8장 치리회**

### **CHAPTER 8 GOVERNING BODIES**

### **제53조 치리회의 구분 Governing Bodies**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Governing Bodies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shall be called : the Session,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 **제54조 치리회의 구성 Formation of Governing Bodies**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며 서로 연결된다.

All governing bodies must be consisted of Pastors and Elders and



they are interconnected.

### **제55조 치리회의 관할 Jurisdiction of Governing Bodies**

1. 각급 치리회는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When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egulations of the Church occur, each Governing Body may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the next higher Governing Body and may govern in the spirit of peace and for the purity of the church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of the Bible.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The Jurisdiction of each Governing Body is limited by the extent of its own jurisdiction district.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Each Governing Body has its own jurisdiction with its own authority and is subject to be reviewed by the next higher Governing Body.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Each Governing Body practice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organized rules of the Governing Body.

### **제56조 치리회의 권한 Authorities of the Governing Bodies**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The Governing Bodies are organized to lead church members to obey the law of Christ in their ethical and spiritual lives.

2. 치리회는 교회와 교회 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단, 악행, 분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과 권고와 징계의 일을 처리한다.

The Governing Bodies maintain peace and order throughout the church, exercise government, counsel, discipline and other necessary work in order to preserve and protect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from heresy, evil deeds, or complications.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ach Governing Body may establish their own regul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The Governing Bodies may install a Settlement Committee established with the members from the Session and the board members from the Presbytery or a Plenipotentiary Committee established with the members from the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or the board members when the General Assembly is not in session) in order to process any complication in the church.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분자 임명을 할 수 없다.

The Alternative Moderator sent by the Plenipotentiary Committee may exercise the authority in the process of the settlement and does not hold any authority to implement personnel management or governance.

## 제9장 당회

### CHAPTER 9 THE SESSION

#### 제57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Organization and Dismissal of the Session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의 첫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장로증원은 입교인 25명 비례로 1인씩 증선할 수 있다.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The Session of a church shall be consisted of the Senior Pastor and two or more Elders. To form the Session, the church must have 30 or more affiliated members and may elect two Elders simultaneously at this same time. Each Elder may be increased per new 25 affiliated baptized members. After the formation of the Session, if no active Elders is present, the Session will be closed. If church has less than 2 Elders and less than 30 affiliate baptized members, the Session will be dismissed.

#### 제58조 당회의 개회 성수 Quorum of the Session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The quorum of the Session shall be the majority of the members including the moderator. The Alternative Moderator shall not be counted in counting quorum.

#### 제59조 당회장 Moderator of the Session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bytery according to the followings :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The Senior Pastor in active pastoralship of the church shall b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2. 대리당회장은 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노회에 있는 목사 중에서 청할 수 있고, 은퇴목사도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다. 단, 대리당회장은 인사권과 치리권이 없다.

In the event of absence of the moderator with illness or other reasons, with the one half of affirmative votes of the Session members, a Pastor from the same Presbytery may be invited to be an alternate moderator. A Retired Pastor may become an alternate moderator. An alternate moderator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engage in personnel matters and to govern the church.

3. 임시당회장은 시무 목사가 없거나 목사가 재판에 계류 중일 때에 노회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노회가 파송하지 않을 때는 그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속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로 청할 수 있다. 단, 은퇴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

When a church is without a Senior Pastor or the Pastor is under a disciplinary procedure, the Presbytery shall send a Temporary Moderator of the Session. If the Presbytery does not send one, a Temporary moderator may be invited among pastor within the Presbytery with majority vote of the Session members. However, a Retired Pastor may not be a Temporary Moderator of the Session.

4.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The Temporary Moderator will exercise the role of the Session in unorganized church.

5. 지교회 부목사를 당회장의 사임 후 해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다.

The Associate Pastors cannot be sent as a temporary moderator succeeding the previous moderator directly after his resignation in the particular church.

6. 지교회 부목사가 재임 중에 해교회 당회장으로 청빙될 수 없다. 이를 청빙하고자 하면 해교회를 사임한 후 1년 이상 된 후에 청빙이 가능하다. 단, 현 당회장이 은퇴를 준비하며 후임 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당회가 결의하고 부목사로 청빙한 경우는 당회장의 은퇴 후 청빙절차를 거쳐 청빙한다.

The Associate Pastors cannot b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during his service as an Associate Pastor unless one year or more has elapsed after his resignation from the particular church. When the current moderator is preparing his retirement and the Session agreed to invite the Associate Pastor to be the next moderator, such pastor shall be nominated after a nomination and calling process upon resignation of the current moderator.

7. 목사가 임의로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1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장권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Pastor's rights as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be automatically suspended one month after willfully leaving the church without performing the duties.

## **제60조 당회의 직무 Duties of the Session**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the Session are as follows :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To oversee the faith and acts of its members, receive members into the church upon confession of faith and baptism with adequate study and confirmation, and to minister the sacraments, the baptism and the communion,

2.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하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To receive and issue certificate of transfer of church membership (of the baptized, the active, the baptized as enfant, and inactive members). When receiving a certificate of transfer, the Session must notify the receipt of membership to the other Session that issued the certificate immediately.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To minister the worship of God, to oversee affiliated agencies and auxiliaries, and promote spiritual growth of its members.

4.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To install Elders, Deacons and GwonSas.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한다.

To develop and exercise effective ways of collecting the offerings.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 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To elect Elder Representatives to the Presbytery, make report of the status of the church including petitions if any.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여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고와 징계한다.

To summon the accused of wrongdoing for examination and to advise and discipline those who are found to be guilty after hearing of testimonies from witnesses.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To take care of the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

## 제61조 당회의 회집 Meetings of the Session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The Session shall be called by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twice or more in each year upon following cases :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The moderator determines such a meeting is necessary

2. 당회원의 반수 또는 그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At one half or more of the Session member's request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The higher governing body such as Presbytery calls for the meeting

## 제62조 당회록 Minutes of the Sessions

당회록은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The Minutes of the Sessions must keep an accurate record of the date, place, present members, agenda and decisions and other matters. The Minutes must have signatures of the moderator and the clerk and must be submitted to the Presbytery once a year for its review.

## 제63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Rolls of the Session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The rolls that a Session must maintain are as follows :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Rolls of the baptized members

2. 유아세례교인 명부

Rolls of the infant baptized members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Rolls of the members who had censure and restoration
4. 실종교인 명부  
Rolls of the missing members
5. 이명교인 명부  
Rolls of the transferred members
6. 혼인 명부  
Rolls of the married members
7. 별세 명부  
Rolls of the deceased members
8. 비품 대장  
Rolls of the inventories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Rolls of the immovable properties of the church

## 제10장 노회

### CHAPTER 10 THE PRESBYTERY

#### 제64조 노회의 조직 Organization of the Presbytery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5인 이상과 당회 5회 이상과 입교인 30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The Presbytery shall be organized with 5 or more acting Pastors, 5 or more Sessions and 300 or more active baptized members in a certain area.
2. 노회는 문화적 차이와 세대적 차이가 있을 때 1항과 같은 조건으로 조직할 수 있다.



When there is a difference in cultures and generations, another Presbytery shall be organized under the same condition as above.

3.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The Presbytery is organized with the Pastors that are members of the Presbytery and the Elder Representatives who are commissioned by the Session.

4. 당회에서 총대 장로의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regulations for Elder Representatives are as follows :

① 세례교인(입교인) 50명까지 1인

1 Elder~per 50 baptized members or less.

② 51~100명까지 2인

2 Elders~per 51 to 100 or less.

③ 101~200명까지 3인

3 Elders~per 101 to 200 or less.

④ 201~500명까지 4인

4 Elders~per 201 to 500 or less.

⑤ 501명부터는 매 600명까지 1인씩 증원

From 501, one Elder may be added for every 600.

**제65조 노회원 자격 Qualifications for members of the Presbytery**

1.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특수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목사는 회원이 된다.

Senior Pastors, Associate Pastors, Evangelism Pastors, Special Evangelism Pastors, Institutional Pastors, Mission Pastors and Missionary Work Pastors shall be the members of the Presbytery.

2. 공로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은퇴선교목사는 언권 회원이 된다.

Honorary Pastors, Pastor Emeritus, Undesignated Pastors, Retired Pastors and Retired Mission Pastors shall be the oratory members.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고 출석을 확인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The memberships of Elder Representatives in the Presbytery are effective as the stated clerk receives the rolls of Elder Representatives and identifies the names from the roll.

### **제66조 노회의 성수 Quorum of the Presbytery**

노회의 개회 성수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The quorum of the Presbytery is held when majority members of Pastors and majority of Elder Representatives are present.

### **제67조 노회의 직무 Duties of the Presbytery**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the Presbytery are as follows :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괄한다.

To oversee the local churches and affiliated agencies and auxiliaries under the Presbytery district.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To receive and process legitimate documents of inquiries, resolutions, and requests submitted by each Session.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편 5 : 19).

To process all petitions,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appeals submitted by each Session and exercises Judicial Judgments on matters in its district(I Corinthians 6 : 1-8, I Timothy 5 :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고와 징계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To review the minutes of each Session and to answer the inquiries sent by the local churches related to discipline and advice.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지도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후전 4 : 14, 행 13 : 2-3).

To supervise the Seminary students and its graduates, installations, retirements, change of positions, and transfers of the Pastors(I Timothy 4 : 14, Acts 13 : 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To grant permission to the local churches for the elections and installations of Elders and administers the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for Elders and JunDoSas.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To establish local churches, to divide or merge them, or to dissolve them if necessary, to organize the Session, to approve the calls of the Pastors, and to supervise evangelical and educational work and financial management.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To present the requests, resolutions, inquiries, petitions, appeals, and judicial judgment made by the Presbytery to the General Assembly, to make reports of the status of the Presbytery, and to elect the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to carry on

the business of the General Assembly.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한다.

To take care of the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e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Presbytery and to conduct the settlement when any problem arises concerning these properties.

### **제68조 노회의 회집 Meetings of the Presbytery**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The Presbytery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for the following reasons :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30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The Presbytery Meeting shall be held on the set date and place, and the notice must be given 30 days prior to the Meeting.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과 장로 각 3인, 총 6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The Special Presbytery Meeting shall be held when it is requested by no less than 6 members including 3 Pastors and 3 Elders, each representing different church.

3. 임시 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하되 개회 성수는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The Special Presbytery Meeting must be notified in writing to each member 10 days prior to the meeting, and the meeting must process the notified agenda only. The quorum for the meeting is one third or more of the active Pastors and one third or more of the Elder Representatives present.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노회장 또는 직전 노회

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When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is absent, the Vice Moderator or the former Moderato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Presbytery may call the meeting and moderates the order of the day.

#### **제69조 노회록 Minutes of the Presbytery Meetings**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The Presbytery shall keep a full and accurate record of its proceedings which shall be submitted annually to the General Assembly for its review.

#### **제7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Rolls of the Presbytery**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The Rolls of the Presbytery must maintain are as follows :

1. 담임목사 명부

Rolls of the Senior Pastors

2. 부목사 명부

Rolls of the Associate Pastors

3. 기관목사 및 선교목사 명부

Rolls of the Institutional Pastors and Mission Pastors

4. 전도목사 및 특수전도목사 명부

Rolls of the Evangelism Pastors and Special Evangelism Pastors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Rolls of the Pastor Emeritus and Honorary Pastor

6. 무임목사 명부

Rolls of the Undesignated Pastors

7. 은퇴목사 명부

Rolls of the Retired Pastors

8. 전도사, 신학생, 신학 졸업생 및 목사고시 합격자 명부

Rolls of the JunDoSas, seminary students and graduates and those who passed the Pastoral Examination

9. 장로 명부

Rolls of the Elders

10. 노회록과 각 부서와 각 위원회 회의록(명부)

The Minutes of the Presbytery Meetings and Minutes and Rolls from each department and committee.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기록할 것)

Rolls of the local churches(record of the dates of establishment, divisions, merger, and dismissal).

**제71조 시찰위원회 Inspection Committee**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The Presbytery will set up an Inspection Committee in place for the purpose of aid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bytery over the local church. The Inspection Committee exercises inspection of the local church, consults and guides important matters and reports to the Presbytery. The inspecting district and membership limitat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decided by the Presbytery.

**제7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Division, Merger, and Dismissal of a Presbytery**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When a Presbytery desires its division, the peti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ent members of Pastors and Elders. The names of each Presbytery, the roll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mmissioners, rolls of the properties and affiliated agencies and auxiliaries, divided district areas, and the rolls of the church in each district must be accompanied.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To merge Presbyteries, the petition must be made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of Pastors and the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of Elders.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Since its establishment, when th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a Presbytery are not met and two years have elapsed, the Presbytery will be dismissed.

4. 노회가 분립, 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After the division or merger of a Presbytery with other special reason, when the rearrangement of district of Presbytery is necessary, the General Assembly makes the decis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opinions from the related Presbytery.

## 제11장 총회

### CHAPTER 11 GENERAL ASSEMBLY

#### 제73조 총회의 의의 Definition of the General Assembly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는 해외한인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다.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is the highest Governing Body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 **제74조 총회의 조직 Organiz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의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그 수는 총회가 별도로 정한다.

The General Assembly consists of equal numbers of Pastor Representatives and Elder Representatives from each Presbytery. The total numbers are set by the General Assembly.

#### **제75조 총회의 성수 Quorum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의 개회 성수는 노회 과반의 참석과 총대 목사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The Quorum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the presence of one half or more of the Presbyteries, half or more of Pastor Representatives and one half or more of Elder Representatives.

#### **제76조 총회의 범위 Sphere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는 복음이 필요한 세계에서 문화차이가 있는 세대들을 인정하고, 지역구분과 문화구분을 한 노회들로 구성할 수 있다.

The General Assembly acknowledges the generation with cultural diversity that needs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 Presbyteries may be formed by geography and culture.

#### **제77조 총회의 직무 Duties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the General Assembly are held as follows :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괄한다.

To oversee all governing bodies, local churches, all affiliated agencies and auxiliaries under the umbrella of the General



Assembly.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소원, 상고,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To receive and process legitimate documents of inquiries, resolutions, requests, petitions, appeals and other Judicial Judgments that are submitted by the lower Governing Bodies.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To review the records of each Presbytery.
4. 총회는 미주한인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To exercise the final judicial author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To organize, divide, unite, and dismiss any Presbytery, and to determine the district of each Presbytery.
6. 총회는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To correspond with other denominational churche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to settle disputes that cause the disunion of the church, and to promote the virtue of holiness and purity.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To establish, administer, and manage theological seminaries and to train future ministers.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To plan and develop overall objectives of missio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9. 총회는 노회나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To settle the complication of the properties that arise in the

Presbytery.

### **제78조 총회의 회집 Meeting of General Assembly**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 순으로 개최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The General Assembly shall hold an annual meeting on a prearranged date and place. The Moderator shall send out the notice of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at least two months prior to the meeting. In case of the Moderator's absence, the General Assembly may be called in the order of the vice Moderator or the immediate preceding Moderator and serves until a new moderator is elected. The Commissioners are recognized as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fter the stated clerk confirms the roll calls.

### **제79조 개회 및 폐회 Opening and Closing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 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년 모월 모일에 회집됨을 요한다.”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opened and closed with a prayer. At the time of adjournment, the Moderator takes the following oaths, then shall close the meeting. “By the power invested in me by the church, I deem it appropriate for the General Assembly to be adjourned and request that the General Assembly, such as this to be organized and meet again on \_\_\_\_\_ year, \_\_\_\_\_ month, and \_\_\_\_\_ day.”

## 제12장 회의 및 기관, 단체

### CHAPTER 12 MEETINGS

#### 제80조 공동의회 Congregational Meetings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다.

The Congregational Meetings are held as follows :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e the blameless baptized members of the church who are at least 18 years of age.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The Congregational Meeting is called by the moderator, with concurrence of the Session. The date, place and the agenda must be announced and notified one week prior to the meeting.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The Congregational Meetings shall be called with concurrence of the Session in the following cases :

-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The Session determines such a meeting is necessary

-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The Officers Meeting request a meeting

- ③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One third or more of the blameless active members request a meeting

-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The higher Governing Body such as the Presbytery

determines such a meeting is necessary

4. 공동의회 개최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The quorum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is present members.

5.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Business to be transacted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s is as follows :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Agenda presented by the Session

② 예산 및 결산

Matters related to the budget and balancing of account

③ 직분자 선거

Matters related to the election of Officers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Agenda presented by the higher Governing Body such as the Presbytery

⑤ 지교회 통폐합에 대한 공동의회 성수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The merger and dismissal of a particular church requires the two third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The decision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shall be made with the decision by majority unless specified otherwise.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The Moderator and the clerk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s are assumed by the Moderator and the clerk of the Sessions.

**제81조 제직회 Officers Meeting**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The Officers Meetings are held as follows :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 협동향존직분자로 한다.

The Officers Meeting consists of the Senior Pastor(s), Elders, Deacons, GwonSas, JunDoSas, Temporary Deacons and other cooperating permanent ordained officers.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The Officers Meetings shall be called by the Senior Pastor who is the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in following cases :

- ① 제직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The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determines such a meeting is necessary

- ② 교회 제직 반수 또는 그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One half or more of the Officers request a meeting

3. 제직회 개최 성수는 1주일 전에 광고하고 회집 출석수로 한다.

The quorum of the Officers Meeting is the number of present officers. The date, place and the agenda must be announced and notified one week prior to the meeting.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 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The Session moderator is also the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The Officers Meeting may elect a clerk, treasurer, and other committees as necessary.

5. 시무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승인으로 전도사가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When there is no ordained Senior Pastor in the church, the JunDoSa may become a temporary moderator with the approval of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6.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matters to be decided by the Officers Meetings are as follows :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The exercise of the budget decid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②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Matters related to the financial earnings and expenses, making budget, and balancing the account,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현금 취급

Matters related to the incomings and outgoings of the relief fund and managing of the special offerings,

④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Other important financial matters,

⑤ 당회가 요청한 사항

Matters requested by the Session,

**제8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Affiliated Agencies or Auxiliaries, United Sessions and United Officers Meetings**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To organize any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under each Governing Body,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To organize any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the permission must be granted by the Governing Body which the organization belongs to,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The regulation and ordinance of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must receive the permission by the Governing Body which the organization belongs to. The business and operation of the agency should promote the business of the church with its evangelical work,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All affiliated agency and auxiliary must receive the supervision and audit from the Governing Body. When the audit from the higher Governing Body is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Session commands the audit of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and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is responsible for the expense.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When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does not exercise the decision and the orders from the Governing Body,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is accountable for the responsibility and disciplinary action will be taken.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The United Session or the United Officers Meetings can be organized upon the regulations of the Presbytery.

## 제13장 재산

### CHAPTER 13 ASSETS

#### 제83조 총회의 재산 General Assembly's Assets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The General Assembly's assets shall be consisted of the assets : accumulated by the General Assembly, gifted by local church or Presbytery, held by entity directly under the General Assembly, donated by individuals or groups.

#### 제84조 노회의 재산 Presbytery's Assets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이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The Presbytery's assets shall be consisted of : the assets accumulated by the Presbytery, real property gifted by local church, and assets donated by individuals and groups. However, the liquidable assets or real property are donated by an individual to the Presbytery or the church, the assets shall immediately be owned by the Presbytery or the church. At the same time the assets donated to the Presbytery by local church shall lose its ownership rights when the church leaves the Presbytery.

#### 제85조 재산의 보존 Preserving the Properties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is as follows :



1. 총회의 재산은 총회나 재단법인에 편입 보존한다.

The property of the General Assembly is preserved by incorporating the properties into the General Assembly's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해외한인장로회 해당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The property of the Presbytery that are the estates of the local church is incorporated and preserved by the particular Presbytery Founda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 **제86조 재산관리 및 용도 Management of Assets and the Use**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The Revenues of the General Assembly are manag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General Assembly Foundational Incorporation and will be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목사 개인이나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The immovable properties of a local church under the Presbytery are managed by the Session of the church and the movable properties are managed by the Officers Meeting and will be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church. The pastor or any individual member must not hold any authority to disburse any part of the properties of the church.

3. 해외한인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The individuals who do not observe the doctrine and the ordinances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or the

individuals who have left the organizations do not have any authority of using the properties,

4.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노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In the event of any disputes or unethical actions occur when disposing real properties, the Presbytery may take necessary actions to make the correction

#### **제8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Properties Not Incorporated Into the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교단의 재산 관리 규정에 준한다.

The properties of a local church that have not incorporated into the General Assembly's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must follow the regul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f KPCA.

## **제14장 선교 동역자**

### **CHAPTER 14 MISSIONARIES**

#### **제8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Missionaries**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The General Assembly accepts Missionaries sent to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efficiently. In particular, those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medical, education, and other specialties may be accepted as missionaries regardless of their ordination.

### **제8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Missionaries Accredited by the General Assembly**

해외한인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Missionaries accred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are the ones sent by those fellowship churches which made an agreement with our denomination and were confirmed by the General Assembly throughout the world.

### **제9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Duties of Missionaries**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Duties of Missionaries are as follows :

1. 해외한인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 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The Missionaries sent by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submit the certificate of dispatch via the General Assembly to the Presbytery which he or she belongs to.

2. 선교 동역자의 파견 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The Presbytery that received the certificate of dispatch immediately issues the membership to the Missionary.

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Those Missionaries who are not ordained cannot be members of a Governing Body.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총회산하 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The Missionary keep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and all his or her operation and business must be consulted with

the church under the General Assembly.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가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When the Missionary serves under the General Assembly commits any wrongdoing, either morally or ethically, or against the governing bodies of the church or the Bible, the Presbytery conducts a review and releases him or her from membership.

### **제91조 기타 선교 관계 Relationship with Other Missionaries**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When other Missionaries desire to make relationship with the General Assembly, they will be acce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fter careful review.

## **제15장 헌법 개정**

### **CHAPTER 15 AMENDMENT**

### **제92조 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모범의 개정 Amendment of the Government,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of Worship**

교회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To revise the government,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of worship, the procedures are as below :

1. 총회는 출석회원 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The amendment established and receives one half or more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ent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forwarded to each Presbytery for its approval.

2. 각 노회에서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반수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The amendment receives half or more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bytery and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total votes from each Presbytery.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Each Presbytery must gather up the total number of both the affirmative and negative votes and report to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임원회로 하여금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assigns the committee to put together the result of votes and announces the amendment to be effective immediately.

5.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The Constitution that is amended should not be amended again within three years. The amendment is limited to the article.

### **제93조 교리의 개정 Amendment of the Doctrine**

교리(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The amendment of the doctrine(the Creed, the Catechism,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will follow the procedures as below :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The amendment receives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ent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forwarded to

each Presbytery for its approval.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The amendment receives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bytery and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out of the total votes from each Presbytery.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Each Presbytery must gather up the total number of both the affirmative and negative votes and report to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totals the numbers of votes from each Presbytery and reports the result at the next General Assembly and the Amendment becomes effective.

#### **제94조 헌법 개정위원 Amendment Committee**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When the General Assembly seeks to amend or modify the Constitution,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

1. 총회는 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The General Assembly must establish an Amendment Committee of seven or more members. One half or more members must be pastors.

2.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반드시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To amend the doctrine, the committee with expertise must be

established and study it for one year or more and report to the following General Assembly.





제 3 편

# 권고와 징계

DISCIPLINE





# 권고와 징계

DISCIPLINE

## 제1장 총칙

CHAPTER 1 GENERAL

### 제1조 권고와 징계의 뜻 Definition of Discipline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분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Ecclesiastical discipline is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that Jesus Christ has bestowed upon the church, implementation of the judicial laws, and disciplinary action as well as admonishment by governing bodies to the members, officers, and each level of governing bodies that committed an offense through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rules and regulation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 제2조 권고와 징계의 목적 Purpose of Discipline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discipline is, for the glory and authority of God, to prevent offenses ; to maintain the sacredness and order of the church ; to promote repentance of offender and facilitate his/her proper life in faith.

### 제3조 권고와 징계의 사유가 되는 죄과 Offenses That May Be Subjected to Discipline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

에는 재판에 의한 권고와 징계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When a member, officer or a governing body commi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fenses, the offender shall be disciplined through a trial.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Serious violation of the commandments in the Scripture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Material violation of duties set forth in the General Assembly Constitution and/or its rules and regulations(Constitution or Rules, hereinafter)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Disruption of worship services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Heretical acts or giving active support to such acts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Damaging the reputation of a member or an officer by means of spreading false rumors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Abusing authority or neglecting duties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Committing shameless acts resulting in final judgment of imprisonment or more by the nation's court system(except in case of being a prisoner of conscience)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Failing to submit to the judgment by the Judicatory Office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Causing another to commit an offense

10.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Displaying an act of profanity, violence or destruction of property at governing body's proceedings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는 행위

Officer handling the case(members of Judicatory Office or members of Prosecution Committee) accepting bribes or receiving entertainment in relation to the case

**제4조 책벌의 원칙 Principles of Disciplinary Action**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Disciplinary action or censure against those who have committed an offense shall go through a trial process.

1. 모든 교인(직분자)은 재판을 받아 자기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All church members(officers) have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through a trial.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No disciplinary action may take place without a trial. However, a person committing an offense specified in the Article 3, Section 10 may be disciplined immediately and additionally.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 재판국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A trial shall proceed at three levels : The first trial at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Session ; the second trial at the permanent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 and the third trial at the permanent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90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A trial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statement of accusation(statement of charge) was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Types and Degree of Disciplinary Action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The types and degrees of disciplinary action are as follows :

-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Admonition : The offender is admonished and made to repent.

- ② 근신 :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Probation : For a period of 6 months or less, the offender spends time repenting his/her deeds(with submitting a letter of apology) while refrain him/herself in acts.

- ③ 수찬정지 :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 : For a period of 1 year or less, the offender is not allowed to partake in Holy Communion.

- ④ 시무정지 :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Administrative Suspension : For a period of 1 year or less, the offender is suspended from all administrative duties except for the right to preach.

- ⑤ 시무해임 :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Suspension from Office : For a period of 1 year or less, the offender is suspended from all of administrative duties

pertaining to his/her office.

- ⑥ 정직 : 2년 이내의 기간 직분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Administrative Leave : For a period of 2 years or less, the offender is suspended from the duties of his/her office although the offender's position may be retained. During such period, the censure of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 shall be added.

- ⑦ 면직 : 직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Dismissal : The offender is removed from his/her office.

-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Excommunication : The offender's name is removed from the church member list, and the offender is forbidden from attending the church.

##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embers

-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① Admonition ② Probation ③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

④ Excommunication

## 3. 직분자(항존 및 임시직분자)에게 과하는 벌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fficers(Both Temporary and Permanent Officers)

-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① Admonition ② Probation ③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

④ Administrative Suspension ⑤ Suspension from Office

⑥ Administrative Leave      ⑦ Dismissal

단, 직분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For officers, excommunication may be added(or excommunication may be ordered).

####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Disciplinary Action Against Governing Bodies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② 벌금상납

① Suspension of the right to send a representative to a higher governing body meetings

② Payment of fine

### 제6조 재판의 원칙 Principles of Trial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각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출 18 : 18-22, 레 19 : 15, 35-36)

A trial shall be proceeded justl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 Constitution and Rules(Exodus 18 : 18-22, Leviticus 19 : 15, 35-36).

## 제2장 재판국

### CHAPTER 2 JUDICATORY OFFICE

#### 제1절 통칙

##### Section 1 General

###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Establishment of Judicatory Office and Jurisdiction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established at the General Assembly level. The Judicatory Office of each Presbytery shall be established at each Presbytery level. The



Judicatory Office of each Session shall be established at each Session level.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 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The jurisdiction of cases involving a pastor or cases involving acts of an elder in his function as a representative to Presbytery or to the General Assembly belongs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The jurisdiction of trials involving general church member, elder, active ordained deacon, deaconess, temporary deacon and/or intern pastor belongs to the Judicatory Office each relevant Session.

####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the Member of Judicatory Office**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 재판에서 제척된다.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be excluded from a hearing and/or trial for the following reasons :

-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When the member is a victim in the case

-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When the member is or was a family member of the defendant or victim in the case

-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When the member becomes a witness or an expert witness for the case

2.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재판국은 기피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접수여부를 통보하고, 재판 개정 30일 이전에 기피신청인에게 기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In case of a risk of an unfair trial because of a member's conflict of interest, or in case one of the subsections stated above applies to a Judiciary Office member, the party involved in the trial(Prosecution Committee Chair or defendant) may request the Judicatory Office to remove that member. The Judicatory Office shall notify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avoidance within 10 days from the receipt of request and also notify the decis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30 days before the trial date.

3.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해당 국원을 해당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In case of such request for avoidance, the Judicatory Office may dismiss the request and proceed with the trial when causes for such request are not founded. In case causes for such request are deemed acceptable, the Office shall exclude the member from the trial and proceed with the trial.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차상급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해당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If the person who requested avoidance wishes to appeal the decision to dismiss the request, he/she shall submit a statement

of objection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next level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dismissal. The Judicatory Office that received such statement of objection shall determine whether or not it will approve the stateme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uch statement of objection. The decision then shall be notified to both petitioner and the lower Judicatory Office.

5.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When the above Sections 1 or 2 applies to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the member may recuse him/herself from the trial voluntarily.

###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Binding Authority of the Higher Level Trial**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지속하므로 하급 재판국원은 판결한 결과로 인해 상급심에서 원고나 피고가 되지 않는다.

A decision made by a higher level Judicatory Office binds the lower level Judicatory Office, and a member of the lower Judicatory Office shall not be a plaintiff or defendant in a higher level trial as a result of the member's own decision during the trial.

## **제2절 총회 재판국**

### **Section 2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 **제10조 구성 Composition**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The Judicatory Office at the General Assembly level shall consist

of 15 members(8 pastors and 7 elders) elected from the General Assembly. Only one representative from the same Presbytery may be elected as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2. 재판국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must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The members are nominated by the Nominating Committee.

###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Terms and By-Election**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타한다.

The terms of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be 3 years, and 1/3 of the members are elected anew every year at the General Assembly.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타한다. 다만, 보선타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In case of vacancy,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 new member through by-election. The term of the by-elected member shall be the remaining period of the predecessor.

###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Secretary and Treasurer.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Office.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facilitates and moderates the trial and supervise operations of trials, The Secretary records proceedings of trials and maintains such as minutes. The Secretary also carries out administrative duties of the Office, The Treasurer oversees financial and accounting duties of the Office,

### **제13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The Judicatory Office meeting shall convene with at least 2/3 of the members attending. A decision is reached with a simple majority vote by the attendees.

### **제14조 심판사항 Cases to be Handled**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The General Assembly's Judicatory Office shall handle the following cases and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사건  
Appeals cases regarding decisions by Presbytery's Judicatory Office and objection requests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Administrative trials a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3.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Appeals/reconsideration cases regarding non-prosecution decision by a Presbytery's Prosecution Committee
4.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Other cas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eneral Assembly's Judicatory Office

### **제15조 전문위원 Expert Advisors**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a resolution within the office, may appoint no more than 3 Expert Advisors who are pastors and/or elders.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The expert advisor shall provide the advice on related issues including the trial procedures.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The term for the advisors shall be 1 year, and they may be appointed to serve consecutive terms.

4. 전문위원 또는 재판국원 양성을 위해 연수원을 별도로 두어 매년 연수케 한다.

A training academy shall be instituted in order to train Expert Advisors and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every year.

### 제3절 노회 재판국

#### Section 3 Judicatory Office of Presbytery

#### 제16조 구성 Composition

1.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5인 이상 9인 이하(목사 5인, 장로 4인 비율)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시무목사와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The Judicatory Office of a Presbytery shall be formed with 5 or more but no more than 9 members(in 5 pastors : 4 elders ratio) who are appointed by the Presbytery. However, only one person from the same church, either pastor or elder may be appointed as a member.

2. 재판국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총회 임원 및 직원, 총회신학교 직원, 기관목사, 선교(전도)목사는 재판국원을 할 수 없다.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must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However, officer and staff of the General Assembly, staff of the seminary of the General Assembly, institution pastor and mission(evangelism) pastor may not be a member.

###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Terms and By-Election**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1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2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9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3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20조 심판사항 Cases to be Handled**

노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The Presbytery's Judicatory Office shall handle the following cases.

1.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Appeals cases regarding decisions by Session's Judicatory Office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Cases involving pastor(s) or cases involving acts of an elder in his function as a representative to the Presbytery or to the General Assembly

3.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Administrative trials as set forth by the Constitution

4.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

Cases referred by the Moderator of Session

5.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Appeals/reconsideration cases regarding non-prosecution decision by a Session's Prosecution Committee

**제21조 전문위원 Expert Advisors**

1. 노회 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When needed, the Judicatory Office of a Presbytery may appoint no more than 2 Expert Advisors who are pastors and/or elders.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The advisors consult and advise on issues including trial procedures.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The term for the advisors shall be 1 year, and they may serve consecutive terms.

**제22조 겸임금지 Prohibition Against Dual Offices**

노회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A member of a Presbytery's Judicatory Office and member of a Prosecution Committee shall not become a member of the Presbytery's Resolution Committee or the Full Authority Resolution Committee at the same time.



## 제4절 당회 재판국

### Section 4 Judicatory Office of Session

#### 제23조 구성 Composition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The Judicatory Office of a Session shall consist of 2 to 5 members(including Moderator of the Session) elected by the Session. When needed, the Session may resolve to have all its members become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except for the member(s) of Prosecution Committee.

####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cretary.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Office. The Secretary shall be an elder and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office.

2. 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2, Section 2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for the duties of the officers.

#### 제25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3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26조 심판사항 Cases to be Handled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The Judicatory Office of a Session shall handle trials involving general church members, elders, active ordained deacons, deaconesses, temporary deacons and/or JunDoSas.

## 제3장 일반소송절차

### CHAPTER 3 GENERAL TRIAL PROCEDURE

#### 제27조 당사자 능력 Capability of Parties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Capacity and capability of parties refer to general qualifications of becoming the parties in a case and of becoming a plaintiff or defendant.

2. 권고와 징계 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In trials for disciplinary actions, the one has the right to bring up charges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hereinafter), elected by each governing body. The committee investigates the offense of the defendan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prosecution should proceed.

3. 권고와 징계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In trials for disciplinary actions, the defendant is the one who is indicted at the Judicatory Office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upon being accused(charged) by a accuser(charger) for an offense.

##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Advance Payment of Trial Cost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Charger(accuser), appellant, appellant to the highest Judicatory Office, petitioner for reconsideration(objection), petitioner for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or petitioner or governing body for administrative trial shall pay the trial cost in advance.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별도로 정한다.

The procedure and the cost of such payment shall be determined as a case by case matter.

## 제29조 변론 Defense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The parties shall give defense at the Judicatory Office.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The defendant or the accused may appoint an attorney for defense.

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In case of appointing an attorney, a letter of appoint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handling Judicatory Office at each level involved.

##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및 보호 Qualification and Protection of Attorney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An attorney shall be one of the blameless and baptized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with knowledge in the laws in general as well as the church laws.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Client shall pay for attorney's actual expenses in travel and lodging, etc.
3. 변호업무로 인한 불이익이나 고소고발을 받지 않는다.  
No attorney shall be at disadvantage or charged for his/her defense.

###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Absence of a Party**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In case the defendant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is absent for 2 or more times during the period of defense or fails to provide defense although in attendanc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defense has been made through the contents in the bill of indictment, letter of response and/or other documents prepared for the trial. Accordingly, the other party in attendance will be allowed to argue.

###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Period of Decision Making**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3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nouncement of the decision for the case shall take pla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the indictment for the Session's Judicatory Office and 60 days for the Presbytery's Judicatory Office. For appeals, the decision shall be announced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levant files, with an option of 30 day extension when needed.

###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Content of the Court Record**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In the Court Record, the name, age, occupation, title at church and address of the one in trial shall be stated.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In the Court Record, the name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or name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members as well as the name of the defense attorney shall be stated.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The Court Record shall be signed by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 **제34조 판결의 확정 Finalization of Judgment**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Judgment at the level of a Session or a Presbytery is made final after the appeals period(20 days since filing of the judgment).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Judgment at the level of the General Assembly is made final on the day of announcement.

####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Method of Judgment and Notification**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Trial judgment and notific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Court Record in the court. In other circumstances, a copy of the Court Record shall be delivered.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Trial judgment or notification shall be made by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For announcing judgment, the statement is read and a summary of the basis for such judgment shall be explained.

### **제36조 재판 송달의 기일 Sending the Judgment**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A copy of the Court Record shall be delivered to the partie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trial judgment announcement or notification.

### **제37조 판결의 정정 Correction of Judgment**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In case of clear error in calculation, error in entry or other errors in the judgment, a correction may be made by the authority of the Judicatory Office or upon a request by the party involved.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The request above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include the reasons for such request.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The Judicatory Office shall dismiss the request immediately when it determines that the requested correction is not necessary.

### **제38조 재판서의 등본 · 초본의 청구 Requesting a Copy or Abstract of the Court Record**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 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The defendant and others involved in the trial may request, for a fee, a copy or abstract of the Court Record or a trial report.

###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Trial Record**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The Judiciary Office prepares the trial record.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The following trial proceedings shall be included in the trial record.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The date of the trial and the name of the Judiciary Office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Names of the members of the Judiciary Office,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attorney

**③ 기소사실의 진술**

Statement of indictment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Evidence documents and other evidentiary materials, in case of examination of evidence

**⑤ 변론의 요지**

Summary of defense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Verification of allowing the defendant or the defense attorney an opportunity for final statement and verification of giving such final statement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Verification of announcing or notifying judgment or other trials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 날인한다.

The trial record shall be signed by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and the Secretary of the Judicatory Office or the member handling the case.

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The trial record shall be prepare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rial.

####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 · 녹취 Stenography or Audio Recording in Courtroom**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 전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 장치를 사용하여 녹취 녹화할 수 있다.

Whe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recognizes such need, he/she may, within his/her authority or upon request from the defendant, defense attorney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order stenography or audio/video recording of a part or the entirety of the testimonies by the defendant and witnesses.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In case a fee is required for stenography service or audio recording due to the request per Section 1 above, the defendant, the defense attorney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shall pay in advance the fee in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Judicatory Office.

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 녹화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 녹화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In case a stenograph record or audio/video recording is conducted per Section 1 above, a person requesting such services may request, with a fee, a copy or abstract of the transcript of such recording.

#### **제41조 송달의 원칙 Principle of Delivery**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Delivery of documents shall be implemented by the person with proper authority, and registered mail shall be used as a method of delivery.

#### **제42조 기간의 계산 Calculating Period**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In terms of calculating period, matters that need to be calculated in hours shall include the first hour in calculation. Matters that need to be calculated in days, months or years, the first day shall not be included.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In case the final date of the period falls on a holiday, such day shall not be counted.

####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Summoning Defendant**

1.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ummons the defendant, such summoning shall be notified 10 days in advance.

2.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In summoning the defendant, the name, age, gender, title in church, address and charges of the defendant shall be stated along with the date and location for appearanc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sign.

#### **제44조 증인의 의무 Duties of Witness**

1.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examine anyone as a witness.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 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Anyone summoned as a witness by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ust appear and participate in the examination.

#### **제45조 증인의 선서 Witness Oath**

1. 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have witness take an oath before examination. Under special circumstances, the oath may be taken after examination.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The oath must be taken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Oath, which shall state : “In accordance with my conscience in faith and with ful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I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in case I tell a lie, I vow to speak factually without omission or addition.”

3.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have the witness read the Statement of Oath and sign the statement.

4.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In case a witness is younger than 16 years old or does not understand the purpose of taking the oath, the witness may be examined without having him/her take the oath.

5.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In case a witness refuses to take the oath or refuses to testify with no valid cause, the witness may be disciplined through a relevant procedure.

####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Process of Witness Examination**

1. 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defense attorney who requested the witness shall examine first.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The Chairman and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examine after the examination in the Subsection 1 above is completed.

3.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the Subsection 2 abov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when deemed necessary, may examine in any order and may change the order of examination in Subsection 1.

4.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Each witness shall be examined. However, when needed,

confronting between witnesses or between a witness and the defendant may be allowed.

#### **제47조 화해의 중용 Encouragement of Reconciliation**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중용할 수 있다.

They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encourage re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before judgment.

###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 **CHAPTER 4 TRIAL PROCEDURE-1<sup>ST</sup> LEVEL TRIAL**

#### **제1절 고소 및 고발**

##### **Section 1 Accusation and Charge**

#### **제48조 고소권자 Accuser**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One who has become a victim of an offense has the right to bring accusations.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In case the victim has deceased, the spouse, immediate family or the sibilings of the deceased may bring accusations.

#### **제49조 고소기간 Period for Accusation**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A person may not accuse after 2 years from the date that the person has come to know who committed the offense. In certain

circumstances under which such accusing was not possible, the period for accusation may start from the date when such circumstance is removed,

### **제50조 고소의 취하 Withdrawal of Accusation**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An accusation may be withdrawn until the announcement of judgment from the 1st level trial.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An individual who withdrew his/her accusation may not make the same accusation again.

### **제51조 고발 Charges**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Anyone who is recognized as having committed an offense may be charged.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The head of a governing body or its officers, in their function of fulfilling their duties, may bring charges against those who are recognized to have committed an offense.

### **제52조 고발기간 Period of Bringing Charges**

- 제49조 고소기간의 규정은 고발기간에도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49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The Method of Accusation and Charge**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Accusation or charge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chairman of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accuser belongs.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The Statement of Accusation or Charg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with signature.

-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Name, age, gender, title in church and address of the accuser(charger) and the accused(charged)

- ② 죄과명 및 죄과 내용(때, 곳, 상황 등)

The number of offense(s) and content of the offense(s)(time, place, situation etc.)

-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Evidence(documents, objects and witnesses)

####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Response to Accusation/Charge**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In case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receives a Statement of Accusation or Charge, the statement shall be forwarded to the Prosecution Committee within 10 days.

#### **제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Organizing Prosecution Committee in a Presbytery**

1.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in a Presbytery shall be organized with 4 members(2 pastors and 2 elders) elected by the Presbytery.

2. 노회 기소위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members shall be elected among those who possess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3.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cretary.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4. 기소위원의 임기 및 보선

Terms and Special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 1)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Rules for the terms and consecutive serving of the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utonomously by each Presbytery. If the Presbytery has no such provision, the term shall be one year, and the Presbytery may approve consecutive service.

- 2) 헌법 권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노회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Pursuant to Discipline part of the Constitution, Section 1, Article 55, the Presbytery(or Officers of the Presbytery when not in session) shall elect a new member to fill the vacancy through a special election. The term shall be until the remaining period of the predecessor.

#### **제56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Organizing Prosecution Committee in a Session**

1.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in a Session shall be organized with 1 or 2 members elected by the Session.

2. 제55조 제3항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은 당회 기소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다.

The Section 3 of the Article 55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57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A decision is reached during the Prosecution Committee meeting with at least 2/3 of the members attending and a simple majority vote by the attendees. In case of a tie, then it is deemed that indictment will proceed.

### **제58조 피의자 신문 Examining Defendant**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or summoning and examining the defendant,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shall give a 10 day notice to the defendant.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 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shall examine the defendant about the facts of the offense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ordinary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defendant shall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testify facts that can be used to his/her advantage.



## 제2절 기소

### Section 2 Prosecution

#### 제59조 기소의 제기 Indictment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Indictment is to be brought up and carried out by Prosecution Committee.

####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Method of Indictment and Bill of Indictment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In order to bring up indictment, a bill of indictment shall be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with proper jurisdiction.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e following shall be included in a bill of indictment.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Name, age, gender, title in church and address of the defendant

② 죄과명(罪過名)

Name of offense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Facts of indictment(facts of offense)

④ 적용 규정

Applicable provisions

3.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A head of a governing body, within its proper authority and with

a resolution from the Session or Officers Meeting, may request Prosecution Committee to indict an individual who has been deemed to have committed an offense.

### **제61조 기소의 취하 Withdrawing Indictment**

1. 기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An indictment may be withdrawn until the announcement of judgment from the 1st level trial.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Withdrawal of indictment shall be done in writing that states reason(s) for such withdrawal.

###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Processing a Case from Accusations or Charges**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investigates offenses based on accusations or charges, such investigation shall be completed and a decision to proceed with an indictmen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statement of accusation(charges) from the head of governing body. If necessary, a 30 day extension may be allowed.

###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Notification of Decision to the Accuser or Charger**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할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shall notify, in writing, the accuser or the person who brought up charges about its decision to proceed with indictment,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or to withdraw indictmen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making such decision.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decides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such decision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accused.

####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Notifying Accuser or Charger Reasons for Not Proceeding with Indictment**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decides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as it finds the accusation or charges to be not an offense or unfounded,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accuser or the one who brought up the charges the reasons for such decision within 10 days from a request from the accuser or the one who brought up the charges.

####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Appeal and Re-appeal**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Any accuser or charger who object to the decision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a Session may file an appeal in writing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through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Session within 20 days from receiving the noti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3.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Session recognizes that the appeal is valid, it may change its decision.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fails to notify the accuser or charg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3, the accuser or charger may interpret that the committee has decided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and the accuser or charger may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section above.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The appellant who does not wish to submit to dismissal of the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Sections 1 and 2 above may re-appeal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dismissing the appeal.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recognizes that the re-appeal is valid, it may change its decision.

4.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준용한다.

A re-appeal to the decision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may be requested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and in such case, the Section 1 or 3 above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Decision of the Judicatory Office**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은 60일 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or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at received the appeal or re-appeal request shall make a decision in either of the following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eals or re-appeals request along with relevant records. When necessary, the Judicatory Office may examine the evidences.

-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When there is no valid reason for the request, the request shall be dismissed.

-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Where there is a valid reason for the request, indictment shall be ordered.

2. 전항 제2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 신청할 수 없다.

An appeal(objection) to the indictment order per Subsection 2 above is not allowed.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With the decision per Subsection 1 above, the Judicatory Office shall send an official copy of the decision to the appellant or re-appellant, the accused and the Prosecution Committee with the relevant jurisdiction.

## 제3절 재판

### Section 3 Trial

#### 제67조 기소장부분의 송달 Delivery of a Copy of Bill of Indictment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분을 제 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In case of indictment, the Judicatory Office, without delay, shall deliver a copy of the bill of indictment to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attorney by 10 days before the first trial date.

####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Scheduling or Re-scheduling Trial Date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determine the trial date.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The defendant shall be summoned for the trial date.

3.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The trial date shall be notified to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se attorney.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reschedule the trial date based on his/her own decision, or a request from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defense attorney.

####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Submitting Reasons for Absence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When a party who has received a summons or a notice for the trial date is absent due to illness or other reasons, a document such as

doctor's note shall be submitted.

###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Absence of Defendant or Prosecution Committee Member**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 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Upon receiving a notice of trial date, if the defendant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or a delegated member of the committee) fails to appear for more than 2 times without submitting documented reason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9, the trial may proceed at once without the party's attendance.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For announcement or notification of judgment only, the trial may be convened without the party's presence.

###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Submitting Evidence Before the Trial**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defense attorney shall submit documents or objects as evidences to the Judiciary Office before the date of trial.

###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Presumption of Innocence**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The defendant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the offense is proven.

### **제73조 인정신문 Identity Questions**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

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asks the defendant his/her name, age, gender, title in church and address to verify the defendant's identity.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Opening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call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to state a summary of the indictment based on the bill of indictment.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Defendant's Right to Testify**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provide the defendant with opportunities to testify facts that may be to his/her advantage.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Method of Examining Defendant**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its members and the defense attorney may examine the defendant directly on facts of the charges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ordinary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and its members may examine after the examinations per the section above is complete.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Victim's Right to Testify**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iary Office may examine a victim as a witness when the victim requests to testify regarding the offenses.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If the victim, although summon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per section above, fails to appear without any valid reason, the Chairman of Judiciary Office determines that such request has been withdrawn.

####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Changes in the Bill of Indictment**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With permission from the Judiciary Office,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may add, delete or modify facts of indictment or applicable rules in the bill of indictment. In such case, the Judiciary Office may approve such change, given that the change does not affect the consistency of the facts of indictment.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In case of addition, deletion or modification of the facts of the indictment or applicable rules, the Judiciary Office shall notify the defendant or the defense attorney of such change promptly.

####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Restricting Unnecessary Arguments**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restrict argument when testimony or examination by the involved parties is repetitive or unrelated to the case at hand as long as such restriction does not viol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rties involved.

### **제80조 증거 재판주의 Trial by Evidence**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Any admission of facts shall be based on evidence.

### **제81조 자유 심증주의 Free Evaluation of Evidence**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The power of evidence shall be based on the free evaluation by the members of Judicatory Office.

###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Documents Admissible as Evidence**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documents may be admitted as evidence.

#### 1. 국가(연방, 주, 시)가 발행한 증명서

Verification or certificate issued by a government(federal, state, city)

####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A copy of a judgment by a court

####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Other documents prepared under credible circumstances

###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Methods of Examining Evidences**

####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 준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provide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the defense attorney with evidences. In case such evidence is a document,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inform the summary of the document.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the defense attorney may request to examine witnesses or appraisers who can submit documents or objects as evidences.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The Judicatory Office shall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s requested in the sections above and may exercise its own authority to examine the evidences.

#### **제84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Testimony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dant After Examination of the Evidences**

1.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Upon completion of examining defendant and examining evidences,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shall testify its opinion on the facts and applicability of relevant rules.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fails to appear on the date of trial, it shall be deemed that the opinio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is included in the Bill of Indictment.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Upon hearing the testimony from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provide the defendant and defense attorney an opportunity to give the final statement.

#### **제85조 책벌의 선고 Annou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The Judicatory Office shall announce as its judgment a disciplinary action(found guilty) when the offense is proven for the case at hand.

####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Reasons to be Stated in the Judgment for Disciplinary Action**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When announcing a disciplinary action, the facts of offense, summary of evidence and applied Constitution and/or Rules shall be included in the reasons for judgment.

####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Informing an Appeal**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In case of announcing a disciplinary actio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inform the defendant a tim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made and the Judicatory Office to which the appeal shall be submitted.

#### **제88조 무죄의 판결 Finding Not Guilty**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A judgment of Not Guilty shall be announced when there is no offense with the case or the offense are not proven.

###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Judgment to Dismiss Indictment**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In case of the following, a judgment to dismiss the indictment may be announced,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When there is no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When an indictment is already in place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When the accusation was withdrawn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When the victim expresses his/her wish not to prosecute or withdraws his/her wish to prosecute

###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Decision to Dismiss Indictment**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In case of the following, a decision to dismiss the indictment shall be made.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When the indictment is withdrawn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퇴를 취소하였을 때

When the request to indict is withdrawn by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with the decision to do so by the Session or officers

3. 피고인이 사망한 때

When the defendant is deceased

## 제5장 상소

### CHAPTER 5 APPEAL

#### 제1절 통칙

##### Section 1 General

#### 제91조 상소권자 Right to Appeal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dant have the right to appeal.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Spouse, immediate family, siblings and attorney of the defendant have the right to appeal on behalf of the defendant.

#### 제92조 일부상소 Partial Appeal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An appeal may be made for a part of the trial.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The partial appeal may affect other parts of the trial that are undetachable from the appealed part.

####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Waiver or Withdrawal of Appeal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dant may waive or withdraw the appeal. However, the defendant or the spouse of the

defendant may not waive when an appeal is already made against a judgment of dismissal from one's position or excommunication,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A waiver or withdrawal of the appeal shall be done in writing.

3. 상소의 포기는 원심 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 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 할 수 있다.

Waiver of the appeal shall be filed with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Withdrawal of the appeal shall be filed with appellate Judicatory Office. However, withdrawal of the appeal may be filed with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when the trial record has not been delivered to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When a request to waive or withdraw the appeal is mad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notify such to the other party without delay.

## 제2절 항소

### Section 2 Appeal to the Higher Judicatory Office

####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Judgments that can be Appealed

제1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In case of objection to the judgment by the 1st level Judicatory Office, an appeal may be made to the next level Judicatory Office.

####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Method of Appeal and Time Limitation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For an appeal to the next level, a petition of appeal shall be filed with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may be made is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judgment.

###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Delivery of Trial Record and Evidence**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shall deliver the trial record and evidences to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petition of appeal.

###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Receiving Trial Record and Notifying**

항소 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receives the records, the appellant, the other party or the attorney shall be notified of receiving such trial record immediately.

###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Appellate Brief and Response**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appellant or the attorney shall submit an appellate brief to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notice in the previous article.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upon receiving the appellate brief, shall deliver a duplicate copy of the brief to the other party



without delay.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other party shall submit a response to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brief in the previous section.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upon receiving the response, shall deliver a duplicate copy of the response to the appellant or attorney.

####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Decision to Dismiss Appeal**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Any appeal shall be dismissed if the appellant or attorney fails to submit an appellate brief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Section 1 of the previous Article. However, an exception exists if the reasons for such appeal are included in the petition of appeal.

#### **제100조 항소이유 Causes for Appeal**

다음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may be considered proper causes for appeal to the original judgment.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and such violation affected the judgment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When composition of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Rules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who should not have participated in the trial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r Rules participated in the trial.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Where there is no reason attached to the judgment or when the reason(s) is contradictory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When there is a valid reason for requesting a retrial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When there is an error in the facts, and such error affected the judgment

7.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When there is a cause to recognize that the level of disciplinary action was unjust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When a person who had not participated in the trial participated in the judgment of the case

**제101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Trial at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1. 항소 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shall review and make judgment on the causes included in the appellate brief.

2. 항소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In case of the Section 1 or Section 6 of the previous article,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may, in its own authority, review and make judgment on causes not included in the appellate brief,

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Evidences admitted to and allowed by the first level Judicatory Office may be admitted to and allowed by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A judgment to dismiss the appeal shall be made if the appeal lacks the requirement for proper appeal process(such as appealing past the required period).

5.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A judgment to dismiss the appeal shall be made if no ground for the appeal is found,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When it becomes clear and evident that no ground for the appeal is found, the appeal may be dismissed based on the petition of appeal, appellate brief or other trial records alone, without any argument,

7.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In case a cause for the appeal is recognized,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vacated, and a new judgment shall be rendered,

## 제102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Returning the Case to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기고기가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When the original judgment is vacated due to the fact that previous dismissal or finding no proper jurisdiction w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a ruling shall be made to send the case back to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 **제103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Transferring the Case to Proper Jurisdiction**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When the original judgment is vacated due to a violation of jurisdiction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judgment to transfer the case to the proper jurisdiction shall be made.

###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For the case the defendant appealed, any judgment with more serious disciplinary action than the original judgment shall not be made.

###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Method of Recording the Judgment**

항소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The recording from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shall include the ruling in relation to the cause for the appeal, and the facts as well as evidence in the original judgment may be cited.

### **제106조 준용규정 Applicable Rules**

1.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is section,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Chapter 4, Part 3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2. 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is section,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Chapter 5, Part 2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3절 상고

#### Section 3 Appeal to the Highest Judicatory Office

####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Judgment that can be Appealed to the Highest Judicatory Office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An appeal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can be made in case there is an objection to the judgment made by the second level Judicatory Office.

####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Method of Appeal and Time Limitation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를 준용한다.

Article 95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Delivery of Trial Record and Evidence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Article 96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Receiving Trial Record and Notifying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Article 97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Appellate Brief and Response**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Article 98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Decision to Dismiss Appeal**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Article 99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13조 상고각하의 판결 Decision for Automatic Dismissal Without Review**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A judgment to dismiss the appeal shall be made if the appeal lacks the requirement for proper appeal process(such as appealing past the required period).

### **제114조 상고이유 Causes for Appeal**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Article 100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15조 심판범위 Scope of Judgment**

1. 상고 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view and make judgment on the causes included in the appellate brief and responses to the brief.

2. 상고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In case of the Section 1 or Section 6 of the previous article,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may, in its

own authority, review and make judgment on causes not included in the appellate brief.

3.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A judgment to dismiss the appeal shall be made if no ground for the appeal is found.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When deemed necessary, the Judicatory Office may summon and examine the parties involved, witnesses and other testifiers.

#### **제116조 원심판결의 파기 Vacating the Original Judgment**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In case a cause for the appeal is recognized as just and valid, the decision to vacate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ndered.

#### **제117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Dismissal of Indictment and Reversal Judgment**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In case that the original judgment or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was vacated on the grounds that a legitimate indictment was dismissed, a judgment to reverse the case to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or the 1st trial Judicatory Office shall be rendered.

#### **제118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Recognition of Jurisdiction and Judgment to Transfer**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When the original judgment or the 1st level judgment is vacated on a ground of violation of jurisdiction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the judgment to transfer the case to the proper jurisdiction shall be made.

### **제119조 파기자판 Reversal and Rendering a New Judgment**

상고 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vacating the original judgment and recognizing that a new judgment by such appellate Judicatory Office is sufficient, may render a new judgment directly for the case.

###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Enforcing and Entering Judgment**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Enforcing of the judgment shall take place based on the judgment entered.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uch enforcing shall be conducted by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Judicatory Office that conducted the trial belongs, and it shall be conduc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entering the judgment.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nforcing of the judgment shall be conducted in writing to which an official copy of the statement of judgment is attached.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In cas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fails to exercise his/her duty to enforce the judgment,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shall



enforce the judgment. In case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fails to exercise his/her duty to enforce the judgment,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enforce the judgment.

##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 CHAPTER 6 SPECIAL TRIAL PROCEDURE, ETC.

#### 제1절 위탁재판

##### Section 1 Entrusted Trial

####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Requesting an Entrusted Trial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 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

In case conducting a trial by a Judicatory Office of a governing body becomes difficul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the head of such governing body may request, in writing(attaching case files), the head of the next higher governing body to have its Judicatory Office to conduct an entrusted trial.

####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A trial become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there is no precedence.

####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Forming a Judicatory Office is impossible due to a dispute within the governing body.

####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Conducting a trial by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overning body becomes extremely difficult due to certain circumstances of the governing body.

###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Handling a Request for an Entrusted Trial**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처리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that received the request for an entrusted trial shall forward the files of the entrusted trial to its Prosecution Committe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uch request.

2. 처리회장으로 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that received the files of the entrusted trial from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shall complete its investigation of the case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an indictment is in ord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case files.

### **제123조 준용규정 Applicable Regulations**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The Part 2 of the Chapter 4, Articles 59 and 64 as well as the Part 3 of the Chapter 4 may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 **제2절 재심**

### **Section 2 Retrial**

### **제124조 재심사유 Grounds for Retrial**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In cas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retrial of the decided disciplinary action may be requested for the benefit of the one who had been judged with such disciplinary action.

1. 원심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When it is proven that the documents or other objects admitted as evidence with which the original judgment had been made were falsified or doctored.

2. 원심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When it is proven that witness testimonies and appraisals served as evidence with which the original judgment had been made were false.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When a judgment for disciplinary action had been rendered based on a false accusation, and such accusation was proven to be false through the final judgment.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When it is proven that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involved in the trial committed illegal acts including abuse of authority or taking bribe for the case.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When it is proven that a member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involved in the indictment or the investigation leading up to the

indictment committed illegal acts including abuse of authority or taking bribe.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When the Constitution Committee renders an interpretation that may affect the judgment,

7.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Upon the discovery of error in trial procedure,

**제125조 재심의 관할 Jurisdiction of Retrial**

재심은 원심 재판국이 관할한다.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has the jurisdiction for the retrial.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Procedure for Retrial Request**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For retrial request procedures, provisions for trial procedures in each level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Period for Retrial Request**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The party shall request a retria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party gains knowledge of the ground for retrial after the final judgment or from the date when the Constitution Committee render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 exception can be allowed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in which it was not possible to request a retrial within the set period.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Persons Qualified to Request a Retrial**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individuals may request a retrial

1. 기소위원장

Prosecution Committee Chair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The person who received the disciplinary action judgment or the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In case the person who had received the disciplinary action judgment has died, the person's spouse, immediate family member or siblings.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Determining Retrial and Opinions of Parties Involved**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n determining the requested retrial, the opinions of the one who requests the retrial and the other party shall be heard.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The request shall be denied when it is clear that such request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or the required period for such request has expired.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The request shall be denied when it is recognized that such request lacks any valid ground.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In case of a denial per the previous section, no one may request

a retrial for the same reason.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When a valid ground for requesting a retrial is recognized, then a decision to have a retrial shall be rendered.

### **제130조 재심의 심판 Judgment from Retrial**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When a decision to have a retrial is rendered, the Judiciary Office shall rule again based on its trial level.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In case a not-guilty judgment is rendered at the retrial, it shall be announced publicly by publishing such judgment in the General Assembly's official publication.

### **제131조 준용규정 Applicable Regulations**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The General Trial Procedure in Chapter 3 applies hereto for retrial mutatis mutandis.

## **제3절 총회특별재심**

### **Section 3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Persons Qualified to Request a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Any one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may request a retrial at the General Assembly.

1. 기소위원장

Prosecution Committee Chair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The person who received the disciplinary action judgment or the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In case the person who had received the disciplinary action judgment has died, the person's spouse, immediate family member or siblings.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Requesting a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특별재심청원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In case a petitioner recognizes that the final judgment of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is a material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implementation acts of the Constitution, the petitioner may request a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in writing through the head of governing body to which the petitioner belongs.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Processing Request for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을 의결한다.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who received the request for special retrial shall forward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response from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request shall be approved when 2/3 of the General Assembly members in attendance approves.

2. 총회에서 특별재심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In case the request for special retrial is approved at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then shall organize Special Retrial Committee and conduct the retrial.

###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Composition of the General Assembly Special Retrial Committee**

1. 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한다.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shall consist of 9 members(5 pastors and 4 elders) elected from the General Assembly. Only one representative from the same Presbytery may be elected as a member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2. 특별재심위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Member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ust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Term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embers**

1.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The term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embers shall be 1 year.

2. 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In case of vacancy,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 new member through by-election. The term of the by-elected member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shall be the remaining period of the predecessor.

###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1. 특별재심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cretary.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한다.

In terms of the duties of the officers in Section 2 of the Article 12 applies hereto duties of the officer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 **제138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eeting shall convene with at least 2/3 of the members attending. A decision is reached with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attendees.

###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Determining Special Retrial**

-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shall render the following determination in regards to a request for special retrial.

1. 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

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The request for a special retrial shall be dismissed when it is clear that such request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or the required period for such request has expired.

2. 특별 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The request for a special retrial shall be dismissed when it is recognized that such request lacks any valid ground.

3.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In case of a dismissal per the previous section, no one may request a special retrial for the same reason.

4.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When a valid ground for requesting a special retrial is recognized, then a decision to have a retrial shall be rendered.

#### **제140조 준용규정 Applicable Provisions**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The Retrial Procedures in Part 2 of Chapter 6 applies hereto mutatis mutandis.

## **제7장 시벌 및 해벌**

### **CHAPTER 7 ENFORCING DISCIPLINARY ACTION AND RESTORATION**

#### **제141조 시벌 처리회 Governing Body that Enforces the Disciplinary Action**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Once the judgment becomes final,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shall enforce the disciplinary action.

#### **제142조 시벌방법 Method of Enforcement**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announced and made public by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2. 시벌을 기피하고 타 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If the person avoids the disciplinary action and moves to another place, the person's disciplinary action status shall be put on public notice.

3.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If the disciplinary action is not enforced by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within 15 days, the governing body of the next level shall enforce the disciplinary action.

#### **제143조 가중시벌 Additional Disciplinary Action**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할 수 있다.

If the person who receives the disciplinary action displays no sign of repentance and commits another offense, an additional disciplinary action may be imposed through a trial.

#### **제144조 해벌과 청빙 Restoration and Offer to Serve as Pastor**

1.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47조를 준용한다.

When it becomes evident that the person who is under a

disciplinary action displays signs of repentance, the governing body may resolve to restore the person upon having the person publicly confess him/herself. In case the governing body that enforces the disciplinary action and the governing body of membership are different, the Article 147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Once the period of enforced disciplinary action expires, it shall be deemed that a restoration is in effect automatically without a process of restoration.

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The person under disciplinary action still may receive an offer to serve as a pastor in another church, but restoration shall not be in effect until the enfor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is complete, even after accepting the offer.

#### **제145조 출교의 해벌 Restoring the Excommunicated**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Even when the excommunicated person receives restoration, the person shall not partake in Holy Communion for another 2 years, and the person may be restored to partake the Holy Communion through a decision by the governing body.

#### **제146조 면직의 해벌 Restoring the Dismissed**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Even when the person dismissed from his/her office receives restoration, he/she may begin serving at least 1 year after such restoration.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In order to begin serving again based on the previous section, the person shall receive an offer to serve or earn confidence.

#### **제147조 해벌 치리회 Governing Body for Restoration**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된다.

Restoration shall be implemented by the governing body of membership, with an approval from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Judicatory Office that rendered the final judgment belongs(During when the governing body is not in session, the Judicatory Office shall approve.).

## **제8장 행정쟁송**

### **CHAPTER 8 ADMINISTRATIVE TRIAL**

#### **제1절 통칙**

##### **Section 1 General**

####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Types of Administrative Trial**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There are following types of administrative trial.

1. 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Administrative Proceeding : A trial when an administrative action committed by a head of governing body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Rules.

2. 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Trial to Revoke a Resolution : A trial when the method of convening a governing body or method of reaching a decision/resolution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Also, when the content of such decision/resolution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3. 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Trial Between Governing Bodies : A trial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governing bodies on possession of valid authority or on exercise of such authority.

4.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Trial for Nullifying Election or Nullifying the Result of Election : A trial when the validity of election or the validity of the election result is in dispute in terms of electing a representative to the General Assembly, Moderator and vice Moderator of a Presbytery or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the Member of Judicatory Office**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한다.

The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provisions in Volume 3, Chapter 2, Part 1, Article 8 applies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50조 준용규정 Applicable Provisions**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The General Trial provisions in Volume 3, Chapter 3 applies hereto, mutatis mutandis.

## 제2절 행정소송

### Section 2 Administrative Proceeding

####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Scope of Administrative Proceeding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pertains to administrative actions committed by a head of a governing body.

####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as follows :

1. 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Proceeding for Revocation : A proceeding to revoke or modify administrative action committed by a head of a governing body and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2. 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Proceeding for declaratory action such as nullification : A proceeding to verify and declare the status of effectiveness and binding power of an administrative action committed by a head of a governing body.

#### 제153조 재판관할 Jurisdiction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lies with the Judiciary

Office of the governing body higher than the governing body to which a defendant belongs.

2. 노회 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A trial at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may be appealed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Any administrative proceeding regarding an action involving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reviewed and adjudged by the Special Review Board composed of chair of each committees in the General Assembly.

4.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ny decision rendered by the Special Review Board shall be implemented immediately, and no objection is allowed to such decision.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다음과 같다.

The Special Review Board shall be organized as following :

① 구성 : 총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Composition : Shall be consist of the chairs of each committee in the General Assembly.

② 총회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위원회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Administrative proceedings against the Moderator and certain chair of committee for their actions, the subject chair of the committee cannot be the member of the Special Review Board mentioned in previous section.

③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



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organize the Board in the Section 1 abov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at the General Assembly received the request for proceeding and shall forward the case to the Board.

- ④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cretary.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Board.

- ⑤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선임 위원회 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In case of vacancy, the incoming committee chair shall automatically fill the vacancy.

- ⑥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The Special Review Board meeting shall convene with at least 2/3 of the members attending. A decision is reached with a simple majority of the attendees.

- ⑦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Once the review is completed, the Board shall be dissolved automatically.

- ⑧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위원회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

행시킨다.

Once the General Assembly is adjourned for the period, the Board shall be dissolved automatically.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organize a new Special Review Board with newly elected chairs of committees and have the new Board proceed with the case by resuming the argument.

- ⑨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고와 징계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 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 신청하지 못한다.

Once the Special Review Board decides to review a case, the plaintiff or defendant may request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to reconsider the decis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Statement of Decision in Disciplinary Action Form No. 8-4. In such case,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organize a new 9-member(5 pastors, 4 elders) Special Review Board and have the new Board make a determination for review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when it received the request for reconsideration. No other objection shall be accepted except for a request from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 ⑩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Sections 4 and 6 shall be applied to the new Special Review Board mutatis mutandis. In case of vacancy, such vacancy shall be filled from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This

Board is a temporary board only to handle the case with reconsideration request.

- ⑪ 제9항의 경우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Section 9 is not bound by the grounds for retrial set forth in the Article 124. The retrial procedures set forth in the Articles 129, 130 and 131 shall apply hereto mutatis mutandis.

### 제154조 원고적격 Standing of Plaintiff

1.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A request for a revocation proceeding may be filed by a person who has the right or interest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to ask for such revocation. In addition, the request may be filed by a person whose interest will be restored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by revoking the administrative action even if such administrative action is no longer in effect due to expiration of its effective period.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A request for nullification or declaratory action may be filed by a person who has the right or interest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to ask for validity of an administrative action or existenc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Standing of Defendant and Renaming of Defendant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는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 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The defendant for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shall be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that implemented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case the authority related to such administrative action was succeeded by another head after the administrative action had been implemented, then the defendant shall be the head who succeeded the action.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In case the plaintiff wrongly named a defendant, the Judiciary Office may rename the defendant based on the request from the plaintiff or by exercising its own authority.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보를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In case of renaming the defendant in accordance with the section above, the official copy of such renaming shall be delivered to the new defendant.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In case of the section 2 above, the proceeding against the new defendant shall be deemed to have started when the original proceeding request was filed.

##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3rd Party Involvement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In case there will be a 3rd party whose right or interest will be affected depending of the result of the proceeding, the 3rd party may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 through a request from the original parties to the case, the 3rd party or by exercising the Judicatory Office's own authority.

###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Filing for the Proceeding and Period for Filing**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The request for proceeding shall be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2. 소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한다.

The request for proceeding cannot be made if 60 days have passed since the knowledg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However, the required deadline shall begin at the conclusion of special circumstances if valid reasons exist, i.e., force majeure(natural disaster, war, revolution) and other unforeseen circumstance such as trip abroad or long-term hospitalization that prevented the filing of petition on time.

3. 제2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provision in the section 2 shall not be applied to proceedings for declaratory action such as nullification.

###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Contents of the Request for Proceeding**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e reques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Name, title in church and address of the plaintiff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Name, title in church and address of the defendant who is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④ 행정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

The date that the plaintiff has come to know the administrative action.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Intent and cause for the request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The request for proceeding in the section 1 above shall be signed by the plaintiff, appointed representative or agent.

**제159조 청구의 변경 Modifying the Request for Proceeding**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s long as the basics of the request remain unchanged, the plaintiff may modify the intent and cause for the request until the completion of argument for the case. However, such modification shall not be allowed when it becomes evident that the purpose of modification is to delay the proceeding.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Modification of the cause for the request shall be in writing.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The writing in section 2 above shall be delivered to the other party.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When the Judicatory Office determines that the request for modification has no ground, such request shall be denied under the Judicatory Office's own authority or through the request for denial by the other party.

**제160조 소의 취하 Withdrawal of Request for Proceeding**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할 수 있다.

Until the final decision is rendered, the request for proceeding as a whole or in part may be withdrawn in writing.

**제161조 직권심리 Examination by Direct Authority**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When deemed necessary, the Judicatory Office may examine the evidence by exercising its own direct authority and may even rule regarding facts that the parties did not claim.

**제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Binding Power of Judgment for Revocation**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The final judgment that revokes the administrative action binds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who is a party to the proceeding as well as the Judicatory Office involved in the action.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In case the administrative action being revoked is a rejection of the plaintiff's request,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who implemented the administrative action shall implement another administrative action in response to the plaintiff's original request. In doing so, the new administrative action shall reflect the intent of the judgment in this proceeding.

### 제3절 결의 취소 등의 소송

#### Section 3 Trial to Revoke a Resolution

####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Request to Revoke a Resolution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3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cedure for convening a governing body, method of reaching a resolution or content of the resolution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the member of the governing body may file a request to revoke such resolution within the 30 days from the date of resolution. In such case, the defendant shall be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and the request shall go through the governing body and be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next higher governing level.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Articles 153, 160 and 161 shall apply to the request to revoke a resolution in the section 1 mutatis mutandis.

####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인 소 Request to Affirm Invalidity of Resolution**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cedure for convening a governing body, method of reaching a resolution or content of the resolution are in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egulation, the member of the governing body may fil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solution, a request to affirm invalidity of such resolution to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as the defendant. In such case, the request shall go through the governing body and be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next higher governing level.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s 153, 160 and 161 applies to the request in the section 1 hereto for mutatis mutandis.

### **제4절 치리회 간의 소송**

#### **Section 4 Trial Between Governing Bodies**

####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 Trial Between Governing Bodies**

1.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n case of a dispute between governing bodies on possession of

valid authority or on exercise of such authority, heads of the governing bodies may file a request for a trial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next higher level governing body.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Articles 153, 160 and 161 shall apply to the plea in the section 1 mutatis mutandis.

### **제166조 소송위원 선정 Selection of Trial Committee Members**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Each governing body in dispute shall select 3 members to the Trial Committee.

## **제5절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Section 5 Trial for Nullifying Election or Nullifying the Result of Election**

###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Trial for Nullifying Election**

노회에서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 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n case it is recognized that an election for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a Presbytery or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is in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a voter or a candidate may file a request for nullifying the election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Chair of the Election Committee(person in charge) as the defendant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election.

###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Trial for Nullifying the Result of Election**

노회에서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판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When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t the Presbytery are in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egulations during the elections of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a Presbytery or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a voter or a candidate may file a petition contesting the result of the election to the Judicia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against the Chair of the Election Committee(person in charge) as Defendant within 20 days of the election decision.

###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Ruling on Nullifying Election or Result of Election**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The Judicia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receiving the plea to nullifying an election or a result of an election, may nullify the election or the result of the election when there is a solid evidence to prove that the result of the election was affected by a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 **제170조 소송의 처리 Handling Trial**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Trial for nullifying the election or the result of the election shall be proceeded more expeditiously than other administrative trials.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make the deci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quest was filed. When necessary, the period may be extended for another 30 days.

### **제171조 증거조사 Examining Evidence**

1. 소제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

The petitioner, in order to preserve the evidence for pleading to nullify an election or a result of the election after completion of vote counting, may request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o preserve the ballot box, ballots and voting minutes.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The Judicatory Office, upon receiving the request in section 1, shall visit the election site, prepare a report and take measures for proper preservation.

## **제9장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 **CHAPTER 9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TRIAL**

### **제172조 목사의 규례 Regulations Concerning Pastors**

1.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립을 하는 행

동을 할 때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로 발생되고 교회에 해가 되지 아니하였나를 확인한 후 목사를 면직한다.

In case of teaching heresy, causing disputes illegally in the church or acting to cause a split of the church, dismiss the pastor after first reviewing whether the pastor lacks proper knowledge and has caused such damage to the church by accident.

2. 악의를 가지고 상회나 교단에 폭언을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획책하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In case of verbal profanity at the higher level governing body or the General Assembly and planning to state or act in ways to defame the higher level governing body or the General Assembly with malicious intent, a commensurate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rendered.

3. 상습적으로 공금을 개인적인 유용, 또는 횡령하였을 때 금액 정도와 회개의 정도를 따라 책벌하되 최고 면직까지 한다.

In case of habitual personal misuse or embezzlement of official fund, a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in place depending on the amount of money and degree of repentance. In such case, the maximum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dismissal from the position.

4. 이성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회개의 정도를 따라 책벌한다.

In case an affair with opposite gender is publicly confirmed, a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in place, reflecting the degree of repentance.

5. 목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악행 또는 고의적으로 판결불복을 하거나 거짓말이나 이간하는 언행의 증거가 있다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In case there is evidence for malicious acts, intentional disobeying of judgment, lying or causing divisiveness which all cause

questioning the pastor's qualification, a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in pla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such act.

6.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로 책벌을 받은 목사가 해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을 탈퇴할 때는 노회가 즉시 목사를 면직한다.

In case a pastor, who has been judged with a disciplinary action from a trial, leaves KPCA before restoration, the Presbytery shall dismiss the pastor from the title immediately.

7. 목사의 고소 고발은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되 개인적인 면과 직무적인 면을 구별하여 살핀 후 공정하게 접수·처리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ccusations or charges against a pastor may cause a significant impact to the honor and furtherance of the Gospel. Therefore, handling of such shall be cautious. Both private and official aspects shall be reviewed separately and justly so that trials for insignificant matters may be avoided.

8. 목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회개하면 가능한 한 판결을 하지 않거나 가볍게 한다.

In case the pastor admits the guilt and repents properly, the judgment may be waived or lessened, if possible.

9. 목사가 천재, 지변의 이유 없이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판결 전이라도 수찬정지의 처벌을 한다.

In case the pastor does not submit to the repeated summoning with no valid reason such as natural disasters, a suspension from the Holy Communion shall be sentenced even before judgment is rendered.

10. 타인을 무고하게 고소, 고발하였을 때 무고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시작하여 만 2년간은 교단과 교단산하의 모든 교회와 단체에서 모든 자격과 권리가 정지되고 어떠한 이명도 할 수 없다.

In case a pastor brings up charges or accusations against others, and it was judged to be false, the pastor shall be suspended of all qualifications and rights in the General Assembly as well as in all the churche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General Assembly immediately from the date of such final judgment. The pastor shall not be transferred whatsoever.

### **제173조 교인의 규례 Regulations Concerning Church Members**

1. 교회와 사회 법정에서 같은 안건으로 같은 기간 안에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교회는 재판을 중지하고 가중처벌로 책벌한다.

If a trial is in progress in both church and in a secular court system for the same charges within the same period, the church shall suspend its trial and place an additional disciplinary action.

2. 불법적인 언행으로 당회에 불복하고 예배를 훼방하며, 소문으로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킬 때 순종할 때까지 계속 책벌한다.

In case of disobeying to the Session, disrupting the worship service with unlawful speech and acts or in case of causing unrest in the church and defaming the church with rumors, disciplinary actions shall continue until the member obeys.

3. 교회로부터 책벌을 받은 후 계속 불순종하며 회개치 않은 상태로 교회를 떠날 때는 직분을 허락한 그 당회는 직분을 회수하는 결의를 하여 평신도가 되게 한다.

In case a member continues to disobey after a disciplinary action has been rendered and leaves the church without repenting, the Session that originally permitted a position in the church shall resolve to withdraw his/her title in church and make him/her a church member with no title or position.

4.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로 책벌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교회를 떠날 때는 제3항과 같이 직분을 회수하고 공고한다.

In case a member, who has been judged with a disciplinary

action from a trial, leaves the church before repentance, his/her title/position in church shall be withdrawn per Section 3 above, and such action shall be made public.

5. 교인이 죄를 깨닫고 합당한 회개를 할 때 목사가 시무에 지장이 없으면 재판을 유예하고 2년간 재범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취한다.

In case the member realizes his/her offense and repents properly, the trial shall be suspended if there is no issue with the pastor serving the church. If the member does not commit another offense within 2 years, the trial shall be dismissed.

6. 재판이 유예되었을 때 교인과 직분자의 모든 회원권을 2년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

In case of suspending the trial, the member or the church officer shall retain all his/her membership right temporarily for 2 years.

7. 소송 안건의 죄과에 대한 증인이 한 사람이며, 다른 증거물이 없을 때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때 고소장 한 장에 다른 죄과에 대하여 고소·고발한 증언을 한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증언들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한다.

In case there is only one witness to the charge with no other eviden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dict. In such case, if there is another witness to other offense on the statement of accusation or charge, and if such testimonies are determined to be credible, then an indictment shall be made and proceed to a trial.

8. 교인이 재판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자가 소환자체 또는 증언하기를 불응할 때에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If the member does not respond to the summons to a trial, or if a person summoned as a witness refuses to the summons or refuses to testify, each shall be subject to a disciplinary act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offense.



9. 목사의 규례(제172조)를 교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Regulations Concerning Pastors(Article 172) may be applied to the members.

**제174조 판결에 대한 책임과 재판난무 방지 Duties to Judgment and Avoiding Unnecessary Trials**

원고나 피고는 판결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누구든지 심사숙고하여 공정한 재판에 순복하는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The plaintiff and defendant shall accept the condition which requires both to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y in obeying the judgment and submitting to the just and fair trial earnestly and diligently.

**제175조 수습, 화해(전권)위원회 Resolution/Reconciliation(Full Authority) Committee**

각 치리회는 재판 전에 화해와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Before a trial, each governing body may enact a special committee for reconciliation and resolution.

1. 수습과 화해를 위해 약간의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50일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

The committee may be active for up to 50 days with some minor administrative actions for resolution and reconciliation.

2. 본 위원회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사법권이 침해받을 만한 활동을 할 수 없다.

The committee does not have a judicial power, so it shall not act in ways that will infringe upon the judicial power.

3. 재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판결될 때까지 어떤 위원회도 활동을 할 수 없다.

The committee shall not be active from the beginning of the trial to judgment.

## 제176조 정치와 법의 위치 Governance and Laws

법과 정치는 상호 연결되어 협력과 견제가 균형 있게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잠시 법을 잠재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위법이 된 사항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판단이 우선되며 정치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Governance and laws are interrelated for balanced cooperation and check. There could be incidences where governance would suppress laws temporarily, handle matters politically and amend the laws. However, if a trial started based on the matters that have been judged to be illegal, a legal determination shall take priority, and governance shall be under legal judgment also.

## 제177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Inquiry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Request for Re-interpretation

1. 총회에서 조직된 헌법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호선하며 헌법과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The Constitution Committee orga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 chairman and a secretary. The committee researches, interprets, makes decision on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s and recommends revision.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An inquiry about the Constitution shall be submitted as an official document by the head of permanent(special) department of the

General Assembly or by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If the inquiry is rejected, the Constitution Committee shall accept the inquiry when the inquiry has a certificate of contents or additional note attached. In case the trial is pending or in case the inquiry is in process, any calculation of time period shall be suspended from the date when it was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or the Constitution Committee. The calculation shall resume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judgment or the inquiry response. Therefore, an extension is in effect automatically for the time period used for trial or inquiry.

3.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The involved party, whether it be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shall implement with no delay on the matters interpreted by the General Assembly(Constitution Committee when the General Assembly is not in session) which has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The board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notify immediately the organization that filed the inquiry. In case of any objection before such notice, a re-interpretation may be requested to the Constitution Committee.



제4편

# 부 칙

ADDITIONAL PROVISION





# 부칙

## ADDITIONAL PROVISIONS

### 제1조 개정헌법 발효 Apply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본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The Amended Constitution shall be in effect from the date of official announcement.





제 5 편

# 예배 모범

THE DIRECTORY OF WORSHIP





# 예배 모범

THE DIRECTORY OF WORSHIP

## 제1장 교회와 예배

### 1.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교인의 의무(정치 13조)이기도 한 예배와 헌금, 봉사, 친교, 구제, 교육, 선교, 치리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 2)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경건한 응답으로써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 3)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4)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명은 교회공동체 구성원에게 각각 다른 분야를 섬기도록 하셨으며, 특히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당회는 모든 회중들을 대표하여 예배의 준비와 질서를 맡아 수행해야 한다.

## 2. 예배

1) 그리스도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신앙고백과 구체적인 삶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존경으로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 22 : 37)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1)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위적으로 드러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즉,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2)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러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이 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 3. 예배의 시간

1) 예배의 날(주일예배)

(1) 그리스도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날에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다.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며 창조 후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온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이상과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진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전통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 (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성별하여 이른 아침부터 육신의 생업을 중지하고,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릴 준비에 거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 (3)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한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하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 (4) 공중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 찬송,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신앙의 대화나 경건한 서적을 읽으며 성도 간에 친교를 할 것이며 병자 위문, 가난한 자 구제, 불신자를 위한 전도 등을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가 성도의 생활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교회력

- (1)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가 형식이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선한 의미가 주어지는 예배의 계획과 진행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계교회와 같이 예

수님의 생애에 맞춘 교회력과 성구집을 사용함이 합당하다.

(2) 매 주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제정한 교회력은 다음과 같다.

- 대림절 :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이다.
- 성탄절 :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절기이다.
- 주현절 :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보여 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 사순절 :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수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다.
- 고난주간 : 이 주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모진 고초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주님의 수난을 명상하는 주간이다.
- 부활절 :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이다.
- 성령강림절 :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그 외에 주님의 생애를 기리는 중요한 날로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주일, 주님의 변모주일, 주님의 승천주일, 삼위일체 주일, 왕 되신 그리스도주일 등을 지켜 의미 깊은 예배가 되도록 한다.

### 3) 명절과 국경일

세계의 교회는 신앙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은 각각 달리하고 있다. 문화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기본으로서 언어와 삶의 양태와 사고의 구조와 표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심성이 담긴 내용과 음률이 표현된 그들의 언어로 된 찬송의 개발이나 성서의 번역이 필요하다. 오직 복음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교회가 복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4. 예배의 장소

- 1)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지 아니하신다.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또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전통이 되었다.
- 2) 예수께서도 성전이나 회당을 정기적으로 출입하시면서 예배하였으며 그 제자들도 그리하였다. 초기 성도들은 환란과 핍박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가정집이나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나, 그들은 변함없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 3) 오늘도 교회가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여 성전과 같은 예배의 장소를 봉헌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배당을 갖지 못한 교회가 적절한 처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려도 좋다. 다만 어떤 형태의 예배 장소가 되었든지 그곳에는 예배하는 회중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성경봉독과 설교를 거룩하게 행할 수 있고 세례와 성찬 성례전을 정중하게 집례할 수 있는 기본 공간과 성구를 갖추어야 한다.

## 5. 예배의 교육

- 1)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타당성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개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 2)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
- 3) 예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의 의미와 역사와 드리는 각 순서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는 삶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

### 1. 말씀의 예전

#### 1) 기도

- (1) 예배준비를 위한 기도 : 예배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첫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 기도와 함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때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성령님의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실 것을 기도함이 마땅하다.
- (2) 목회기도 : 목회기도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회중들의 죄 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기도로서 목사에 의해 드려진다. 목회기도에는 경배, 감사, 자복, 간구, 중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 경배 :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영광과 완전하심을 경배해야 한다.
  - 감사 :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 자복 : 인간에게는 원죄와 그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 때문에 범하게 되는 죄가 허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순종하고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비롯하여 순간적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기도가 자복(自服)의 기도문으로 회중이 함께 드릴 때는 기도 후에 목사는 성경 말씀으로 고백한 죄가 용서 받은 확신을 갖도록 한다.
  - 간구 : 여기서의 간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영육 간에 생활이 보호받도록 간구해야 한다.
  - 중보기도 :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자신들의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 (3) 설교 전 기도 : 이 기도는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경청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설교자가 말씀 선포를 위한 순수한 도구가 되어 성령님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해 달라는 간구와 의탁이 있어야 한다.
- (4) 설교 후 기도 : 이 기도는 설교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에 의하여 말씀을 경청한 회중들에게서 귀한 결실을 맺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 (5) 공중예배 순서에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 : 목회기도가 아니며

- 로 그 내용은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으로서 묵회 기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이 좋다.
- (6) 공중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나 평신도 :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공중예배의 기도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여 마음과 몸의 자세를 경건하게 가져야 한다.
  - (7) 공중예배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 :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 인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이어야 하며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아멘으로 응답한다.
  - (8)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요 15 : 1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 2) 말씀

- (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고 계신다.
- (2)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원천적인 근원을 제공해 주신다.
- (3)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봉독되어야 한다. 성경봉독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선포되기 위하여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가 가급적 봉독되도록 한다.
- (4) 봉독할 성경의 내용은 목사가 정하되 그 봉독은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그리고 봉독자는 미리 준비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말씀을 정확히 봉독해야 한다.
- (5)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훈련을 받

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며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와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의 감격을 계속 받아야 한다.

- (6)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정하게 될 회중의 삶의 장에 대하여 깊은 관찰을 계속하여 말씀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 (7) 예배 중의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설교하되 설교자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로 일관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종이 되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8)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에서 설교자를 파송한다. 경건회나 기도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예식에서는 성경봉독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 (9) 성례전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글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연속이다.

### 3) 시와 찬미와 찬양

- (1) 시와 찬미와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본분이다.
- (2) 경배와 감사를 포함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은 회중의 감정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

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

- (3) 시편과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음악 순서는 그 예배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 (4) 당회는 시와 찬미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배의 참여자들에게는 감격스런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예배순서에 찬양과 연주를 맡을 찬양대원을 기준을 정하여 엄선해야 한다.
- (5) 주일예배에서의 찬송은 교회 전통에서 공인된 것을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신앙의 향상을 위한 공인 되지 않은 노래들은 기타 집회에서 불리어지고 활용될 수 있다.
- (6)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찬양은 예배에서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계속하여 생활화하도록 해야 한다.

## 2. 성례전

### 1) 성례전

- (1)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인데,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즙은 비록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관계를 분명히 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가지고 그와 성도들과의 구속적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 (2)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이 예전을 자주 또

정당하게 거행하여 신령한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 (3)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그 집례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하에 집례할 수 있다.

## 2) 세례 성례전

- (1)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부터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 (2)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 가운데 베풀어져야 한다. 이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 교단의 교회에서 정당하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 (3) 세례의 물은 십자가의 보혈과 천지창조, 노아홍수, 출애굽 때의 물을 상징함으로써 죄 씻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나타낸다. 세례의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자에게 물을 한 번 또는 세 번 뿌리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 잠글

수도 있다.

- (4) 구약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유아세례는 그들의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신앙이 입교인(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 (5)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이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목사는 세례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입교인(세례교인) 됨을 공포해야 한다.
- (6) 성인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자 할 때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당회는 그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과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앙고백을 포함한 적절한 문답을 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중예배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교인명부에 기록한다.
- (7) 회중들은 전 세계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 3) 성찬 성례전

- (1)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성찬 성례

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 예전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의 표로서 떡과 잔을 나누셨다.

- (2) 성찬 성례전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요, 잔은 그의 피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상처를 입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표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기념(회상, 재현)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전을 행하라고 하셨다.
- (3) 성찬 성례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증표이다. 성찬 성례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믿음과 성화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원한다. 또한 이 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운 잔치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예전이다.
- (4) 성찬 성례전의 집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마 26 : 26-29, 막 14 : 12-26, 눅 22 : 15-20)과 바울이 기록한 만찬(고전 11 : 23-29)의 유형을 따라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은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찬 성례전이 집례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5) 이 유형에 따라 먼저 성찬의 성물은 떡(빵)과 포도즙으로 해야 한다. 준비된 성찬상 앞에서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를 한 후, 집례자는 떡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너희



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한다. 떡의 분배는 집례자, 분병위원, 회중의 순으로 한다. 이어서 집례자는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전한다. 잔의 분배도 집례자, 분잔위원, 회중의 순으로 한다.

#### 4) 봉헌

- (1) 봉헌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당연히 해야 할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드리는 것은 당연하며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 (2) 성도들의 정성어린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 선한 습성이 되게 하고 예물의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한다.
- (3) 목사는 봉헌 순서 전후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복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 (4) 봉헌된 예물은 당회의 감독 하에 주님의 복음 사업과 구제(갈 2:10)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교회학교나 소속 기관에서 수납된 봉헌은 당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 행하고, 교회의 모든 봉헌물은 성서의 가르침대로 당회는 허락하고 실행케 한다.

## 제3장 예배의 배열

1. 공중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표현되는 질서의식이 내포되어야 한다. 목사는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예배는 교회 전통과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목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참여하도록 공동예배의 성격이 드러나야 한다.
2. 공중예배의 기본 배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서로 예배가 시작된다.
  - 2) 찬송과 고백과 기도이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율법서나 복음서의 성구로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 3) 말씀의 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이다. 이 순서는 성경봉독, 설교, 성례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는 소중한 부분이다.
  - 4) 감사와 응답의 순서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에 구체적인 응답으로써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보이는 부분이다.
  - 5)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일예배에는 성례전이 포함되도록 한다.
  - 6) 끝 부분은 찬송과 위탁의 말씀과 축도이다. 여기서는 신앙적 결

단을 촉구하는 찬송을 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 후 하나님 이 내리시는 복을 목사가 선언한다. 이때의 축도는 성경대로 한다(민 6 : 24-26, 고후 13 : 13, 히 13 : 20-21, 살후 2 : 16-17).

## 제4장 예배의 분류

1.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그 일차적인 존재 의의가 있으며, 어떤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일예배 : 주일예배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형성하고 지탱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를 회상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 계시된 약속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일예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야 하며,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의식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
3. 찬양예배 : 주일 오후나 저녁에 모이는 찬양예배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예배에서는 교인들의 신앙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여 신앙 성장으로 이끌며,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4. 수요기도회 : 이 기도회에 교회의 회중들은 주일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진다. 이 집회에는 회중들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경 연구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5. 새벽기도회 :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경건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모국교회가 초창기로부터 새벽기도에 힘써온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을 살려 세계의 모든 교회에 보급하기를 힘써야 한다.
6. 교회학교 예배 : 교회학교 예배는 교회학교 학생의 연령과 이해력에 맞춰 예배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기도와 찬송과 말씀봉독과 말씀선포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유아세례에서 행한 서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세례 받을 준비도 하게 하고, 장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예배와 분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에 자주 참여하도록 한다.
7. 구역기도회(소그룹) : 주중의 한 날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으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

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적은 교인들끼리 교제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일에도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심화시킨다.

8. 가정기도회와 개인 기도생활 : 성도들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9. 이상과 같은 정기집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교회는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집회는 성도들의 성경지식을 증진시키고 기도생활을 장려하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집회로서 사경회를 비롯하여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또는 교회봉사를 위한 기타 집회를 가짐이 유익하다.

## 제5장 교회 예식

교회생활과 교인들의 생활에는 변화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적절한 예식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예식이다. 출생, 생일, 결혼, 죽음, 임직, 건축 등은 교인들의 삶과 직결되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예식은 예배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래의 예식들은 교회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적 요구를 깊이 고려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예식이다.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당회와 개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예식을 예식서의 순서에 따라 거행해야 하며, 모든 예식이 경건하게 실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 1. 임직예식

- 1) 교회는 선거를 통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
- 2) 임직은 부름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 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 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 : 1-6, 13 : 1-3, 딤후전 4 : 14, 딤후 1 : 6).
- 3) 임직예식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예배 시에 거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임직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는 특별예배 시 거행할 수도 있다.

## 2. 봉헌예식

-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배, 교육, 봉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 등의 봉헌을 적절한 예식을 통하여 이행함이 타당하다.
- 2) 봉헌예식에는 기공예식, 정초예식, 입당예식, 그리고 헌당예식이 있으며, 각 예식들은 순수한 봉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봉헌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확신하며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 3)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께 봉헌된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단하여야 한다.

### 3. 결혼예식

- 1)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창 1 : 24-27),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 결혼예식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창 2 : 18)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 2) 결혼은 순결과 정조와 관계되는 일이므로 이 일에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생활해야 하며, 결혼예식을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목회자로 주례케 해야 한다. 주례자는 남녀가 각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부모나 그 후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집례해야 한다.
- 3) 교회의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결혼예식도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부와 신랑은 상호 간에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신앙 공동체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4. 장례예식

- 1)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 슬픔과 비애를 가져오나 죽음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한다.
- 2)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

- 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 3) 장례예식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장례예식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식을 갖는 장소에서 목회자의 집례 아래 거행되어야 한다.
  - 4) 장례예식은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확신케 하는 찬송 등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 제6장 예배와 목회

### 1. 예배와 선교

- 1)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포, 화해의 사역, 봉사의 삶, 그리고 청지기 직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한다.
- 2)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누도록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공동체로 인도하신다.



## 2. 예배와 화해

- 1) 교회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실천하며, 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한다.
- 2)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서 회중들은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공포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확신을 얻는다. 세례와 성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기도에서 회중들은 파괴와 불의에 빠진 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된 정의와 평화를 감사하고, 예배 전체를 통하여 성화된 몸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한다.

## 3. 예배와 목회적 돌봄

- 1)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삶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서로 간에 목회적 돌봄에 참여한다. 예배는 날마다 경건의 실천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룩하면서 피차에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신앙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얻어진다.
- 2)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서로의 필요를 깨닫게 해 주고 소망을 가져다준다.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중보와, 간구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식하게 된다. 찬송, 주기도, 시편, 송영, 축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 예배는 특별한 돌봄을 요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를 전달해 준다. 그러므로 예배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위한 가장 적절한 현장이다.

#### 4. 예배와 경건

- 1) 경건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말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이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역을 말한다.
- 2)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 예배에서 더욱 확실하게 경험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을 위한 중요한 기초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교회의 예배로부터 나오며, 회중은 신앙공동체의 삶의 중심인 예배를 통하여 더욱 깊은 경건을 이루어 간다.

### 제7장 시벌과 해벌

#### 1. 시 벌

- 1) 교회의 책벌은 범과자의 징계에 따라 합당하게 베푼다. 개인에 관한 징계이면 재판석에서 비밀하게 하거나 치리회원 2인 이상을 파송하여 시벌한다. 공개된 범죄이면 치리회 공개석상에서나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공개된 범죄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나 징계수준이 가벼울 때는 비밀하게 할 수 있다.
- 2) 교인 또는 직원이 당연히 벌 받을 일을 하였으면 치리회는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 같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3) 책벌은 신중한 태도로 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로 살아 계신 하나

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얻도록 한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책별한 것으로 인해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

- 4) 출교는 치리회장이 교회 앞에서 범과자를 공식 선언하고 교회에 들 수 없는 이유와(마 18 : 15-18, 고전 5 : 1-5) 부정한 교인을 출교시킬 권한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진실히 믿는 교인들에게 교제가 단절됨을 가르치고 출교당한 자에게는 회개를 구하고 교인들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기를 기도한다.
- 5) 출교 또는 면직 선언은 회장이 아래와 같이 엄숙히 한다. “○○노회의 ○○○ 목사(○○교회 당회의 ○○○ 장로, 집사, 권사)는 ○○죄의 충분한 증거가 들어났기로 ○○노회(○○당회)는 심사결과(재판결과)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당한 줄 알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파면(또는 ○○동안 직분을 금한다.)한다.”

## 2. 해 별

- 1) 치리회원은 시벌 받은 사람과 자주 교제를 가지며 함께 기도하고 그가 해별될 것을 위해 기도를 한다.
- 2) 치리회는 시벌한 사람에게서 회개의 증거가 만족하게 나타났을 때 자복하게 하고 권한을 복직한다.
- 3) 출교 또는 면직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오기를 원하면 교회 앞에서 통회자복을 한 후 회장은 회복을 선언한다. 그리고 1년간 회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고 권한을 순차적으로 회복시킨다. 장로, 집사, 권사는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어야 한다.
- 4) 해별은 시벌 치리회가 한다. 그러나 시벌 중인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후에 회개의 증거를 갖고 회복하기를 원할 때에

는 시별 치리회 결의로 해당 치리회에 위임하여 시별한 치리회와 같이 해별한다.

제6편

# 서 식

FORM OF DOCUMENTS





## 권고와 징계 서식목록

서식번호	서식명
제1호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제2호	변호인 선임서
제3-1호	소환장(피고인용)
제3-2호	출석요구서(피의자용)
제4-1호	고소(고발)장(권징책벌용)
제4-2호	고소(고발) 취하서(권징책벌용)
제5-1호	소장(행정소송용)
제5-2호	소장(결의취소 등 소송용)
제5-3호	소장(치리회 간의 소송용)
제5-4호	소장(선거소송용)
제5-5호	청구변경 신청서(행정쟁송용)
제5-6호	소취하서(행정쟁송용)
제6-1호	불기소처분 결정 및 통지서
제6-2호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제6-3호	항고장(당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불복용)
제6-4호	재항고장(항고 기각결정 불복용)
제6-5호	재항고장(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 불복용)
제7-1호	기소장
제7-2호	기소통지서
제7-3호	답변서(권징책벌 피고인용)
제7-4호	답변서(행정쟁송용)
제7-5호	준비서면(권징책벌 기소위원회용)
제7-6호	준비서면(행정쟁송용)
제7-7호	기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제7-8호	기소취소서

제7-9호	기소취소통지서
제8-1호	판결문(권징책벌용)
제8-2호	판결문(행정쟁송용)
제8-3호	결정문(권징책벌용·재심용·특별재심용)
제8-4호	결정문(총회특별심판위원회 행정소송용)
제8-5호	판결집행문
제9-1호	항소(상고)장
제9-2호	항소(상고) 취하(포기)서
제9-3호	항소(상고) 이유서
제9-4호	답변서(항소·상고용)
제10-1호	위탁재판 청원서
제10-2호	재심 청구서
제10-3호	총회특별재심청원서



(권고와 징계 제1호 서식)

##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신 청 인 : 피고인 ○○○(○○ 기소위원장 ○○○)  
(피고 ○○○ 또는 원고 ○○○)

피신청인 : ○○ 재판국원 ○○○  
(총회특별심판위원 ○○○  
총회특별재심위원 ○○○)

기피신청의 사유 : 1.  
2.  
3.

소명자료 : 1.  
2.

위와 같이 기피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소위원장, 피고인) ○○○ (서명)  
(원고, 피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총회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총회 특별재심위원회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3-2호 서식)

## 출석요구서

(피의자용)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기소위원회 : ○○ 기소위원회

고소인(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위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소인(피고소인)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꼭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조사일시 :    년    월    일    시

2. 조사장소 :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서명)

기소위원회서기   ○○○ (서명)

○○○ 귀하

(권고와 징계 제4-1호 서식)

## 고소(고발)장

(권징책별용)

고 소 인(고 발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과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항 ○○○○ 행위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죄과사실 : 1.

2.

3.

증거 : 1. 서증

2. 물증

3. 인증

첨부 :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고소(고발)를 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소인(고발인)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치리회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5-1호 서식)

**소 장**  
(행정소송용)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선정대표자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 치리회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행위의 내용 :

행정행위가 있는 날 :    년    월    일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 1.
- 2.
- 3.

-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분

위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선정대표자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총회 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5-2호 서식)

## 소 장

(결의취소 등 소송용)

원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 : ○○ 치리회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소송의 종류 : (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 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의의 내용 :

결의의 날 :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 1.
- 2.
- 3.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분

위와 같이 결의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치리회 경유 · (○○○○○장)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총회 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5-5호 서식)

## 청구변경 신청서

(행정쟁송용)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 치리회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 치리회 선거관리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소송)

청구 취지의 변경내용

청구 원인의 변경내용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원고와 징계 제5-6호 서식)

**소취하서**  
(행정쟁송용)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 치리회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 치리회 선거관리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소송)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또는 일부)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6-2호 서식)

##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고 소 인 (고 발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피고발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과명 : 헌법 권고와 징계 제3조 제○항 ○○○○ 행위  
불기소처분결정의 주문형태 (□에 √한다)

-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
- 죄가 안 됨
- 기소권 없음
- 각하

불기소처분결정일자 :    년    월    일

### 불기소처분 이유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소인(고발인)의 청구에 따라 헌법  
권징 제64조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서명)  
기소위원회서기   ○○○ (서명)

고소인(고발인)   ○○○ 귀하















(권고와 징계 제7-4호 서식)

**답변서**  
(행정쟁송용)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소송)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 2.
- 3.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는 답변합니다.

년      월      일

피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7-6호 서식)

**준비서면**  
(행정쟁송용)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소송)

변론준비내용

- 1.
- 2.
- 3.

입증 방법

- 1.
- 2.
- 3.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년      월      일

원고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해외한인장로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권고와 징계 제8-4호 서식)

### 결정문

(총회특별심판위원회 행정소송용)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호인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결정고지일 :    년    월    일

주 문  
청구취지  
결정이유

위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	재 판 국 장	○○○ (서명)
	재판국서기	○○○ (서명)
	재 판 국 원	○○○ (서명)
	재 판 국 원	○○○ (서명)

(권고와 징계 제8-5호 서식)

## 판결집행문

사건번호 :

사 건 명 :

성 명 : 피고인 ○○○ 피고 ○○ 치리회장 ○○○  
피고 ○○ 선거관리위원장 ○○○

소속교회 : 해외한인장로회 피고 ○○ 노회 피고 ○○ 교회

직 분 :

판결주문 :

판결확정일 :    년    월    일

판결확정재판국 : ○○ 당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

판결집행일 : 무기책벌 :    년    월    일부터

유기책벌 : 시기    년    월    일부터

                  중기    년    월    일까지

행정쟁송 :    년    월    일

미주한인장로회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0조에 의하여 판결을 집행하고 제 142조에 의하여 소속치리회장이 치리회석상에서 선포·공시하고 또는 지상공고하여 시벌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치리회장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치리회장 귀하

※ 유의사항 : 유기책벌의 경우 시기(始期)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는 판결송달수령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이 판결확정일이며 상소포기·취하한 때에는 포기·취하한 날이 판결확정일이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일이 판결확정일이다.

○○ 치리회장 ○○○ (서명)은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를 말한다.

(권고와 징계 제9-1호 서식)

## 항소(상고)장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항소인(상고인) : 권징책별용 :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행정쟁송용 : (원고 또는 피고)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항소인(피상고인) : (위의 상대방 당사자)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원심판결 송달 수령일 :    년    월    일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2. 항소(상고)장 부분

원심판결의 표시

1. 주문

2. 판결선고일

항소(상고)취지

항소(상고)이유

\* 추후 항소(상고)이유서 제출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항소(상고)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항소인(상고인) ○○○ (서명)

해외한인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 유의사항 : 항소(상고)장은 원심재판국에 제출한다.













